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1767-01

법·제도분석

법제분석 ●●●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2020. 12.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2020년도 기초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법·제도 분석 - 법제분석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Legal System Analysis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intellectual property tax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2020. 12.

제 출 문

특허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법·제도 분석 - 법제분석 -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 구 기 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연 구 책 임 자 : 조상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참 여 연 구 원 : 곽 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위원)

김범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국문 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 (연구배경)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 기술 강국들은 항구적인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국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고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의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해외자본투자와 기술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세·재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통한 기술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함
- (연구목적)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선별하고, 국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
 - 국내외 R&D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 중에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시장환경에 도입 가능 여부 검토
 - 기술사업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허박스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적용 사례와 주요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도입방안을 제시함
 -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리거나 힘들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특허조사·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이에 해외 주요국의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21년 IP-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에 참고될 수 있도록 조사
 -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로, 국내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임.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조세제도 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 해외 주요국에서의 특허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함

제2장 R&D 조세지원제도

- R&D 성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R&D 단계에서는 조세지원을 통해 실패위험을 분담함으로써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 지식재산의 창출뿐만 아니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통한 로열티 소득이나 지식재산이 내재된 제품의 판매 소득에 특허소득공제라는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R&D 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IP가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미흡하였음
- 2018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는 총 77,988.8백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4.53%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R&D 활동 자체에 집중되어 있음. R&D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금액과 비중은 '19년 실적 2조 6,370억 원(비중 5.32%) ⇨ '20년(전망) 3조 334억 원(5.63%) ⇨ '21년(전망) 3조 1,248억 원(5.50%)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이 있음

▼ 표 1 |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	특허박스
목적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국내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방법	R&D 성과물의 활용	R&D 성과물의 활용
	'IP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세액감면	'IP 제품'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을 통한 사업화 소득에 세액감면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업규모 제한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R&D 성과물의 활용’이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허박스제도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동 법이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점, ‘지식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신설 및 재설계된 조세지원제도가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추가 적용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확대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는 종전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사업장 신설 시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3월 개정을 통해서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시킴(’20. 3. 23. 개정)

▼ 표 2 |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출제도 신설 및 재설계(안)

제도	조항	내 용
재설계	조특법 §104의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종전 규정: 사업장 신설 시만 적용) * ’20. 3. 23. 개정 - 해외생산량 감축률 요건 삭제 및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20. 7월 개정안)
	조특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법 시행령 별표6)
신설	조특법 §13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8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해외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봄

-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봄

제3장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자국 내 기업의 R&D를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 기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허박스제도에 의한 법인세 인하는 소득 총액이 대상이 아니라 특허가 기여한 순소득만을 구분·적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래의 법인세율을 적용

□ (입법동향)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6월에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 2014년 7월 김희국 국회의원, 2014년 8월 우윤근 국회의원, 2017년 8월 김세연 의원, 2018년 12월 조배숙 의원, 2019년 1월 송희경 의원, 최근 2020년 7월 신정훈 의원 등이 특허박스제도 입법안 발의함

▼ 표 3 | 의안별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김세연의원 외 11인 (발의 2017. 8. 29.)	조배숙의원 외 9인 (발의 2018. 12. 11.)	송희경의원 외 10인 (발의 2019. 1. 11.)	신정훈의원 외 13인 (발의 2020. 7. 14.)	
시행일		2018. 1. 1.	2019. 1. 1.	2019. 1. 1.	공포 후 3개월	
기술 거래	이전	50% 공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1항
	취득*	5% 또는 10% 공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2항
	대여	25% 공제	25%→50%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3항
사업화	없음	중소기업 50% 공제	중소기업 25% 공제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공제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국내복귀기업 15%	제12조제4항 신설(특허박스)

주: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기술거래 취득)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됨

□ (BEPS 적용 배경)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더 유리한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이슈가 되자 G20과 OECD의 협력으로 유해조세관행 방지를 목적으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시행함

○ OECD는 두 가지 유해한 세금 관행, 즉 소위 '조세피난처' 및 일부 '유해한 특혜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낮은 세율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의 경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함

- (넥서스 접근법의 계산)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은 기업이 수행한 R&D 활동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특례제도를 적용하는데,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소득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 넥서스 접근법은, 조세혜택과 R&D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만 실질적 활용이 있는 것으로 봄. 즉 R&D 지출과 IP파생 소득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중점을 둠

특허박스제도 적용 과세특례 소득 계산식

특허박스제도 적용 과세특례 적용 소득

$$= nexus\ ratio \times IP\ 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

$$= \frac{IP\ 자산\ 의\ 개발로\ 인해\ 발생된\ 적격\ 지출\ 의\ 합계}{IP\ 자산\ 의\ 개발로\ 인해\ 발생된\ 전반적\ 지출\ 의\ 합계} \times IP\ 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

$$= \frac{D + O}{D + O + A + R} \times IP\ 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

D: 해당 국가에 직접 R&D 지출
 O: 非내부관계자에게 외부위탁된 R&D에 대한 지출
 A: IP자산 취득에 대한 지출
 R: 내부관계자에게 외부위탁된 R&D에 대한 지출

- 2020년 현재 아일랜드, 프랑스, 터키, 헝가리, 이스라엘,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중국, 스위스,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사이프러스, 몰타 등 16개 국가들이 특허박스제도 운영
 - 적격 IP자산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희귀의약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국가별로 다양함
 - IP자산 관련 적격소득 유형은 ▲IP자산이 내장된 제품의 매출 ▲IP자산 자체의 이전(처분) ▲IP자산 자체의 대여(실시허여) ▲연구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사용한 비용에 대한 내재 사용료 ▲외부 지식재산 매수 시 추가 연구활동을 통해 개선한 경우의 비용 등으로 구분되며, 적격소득 유형도 국가별로 다양함
 - 유럽 국가들은 특허박스제도 초기에 자국 내 R&D 결과로서 특허만을 법인세 감면혜택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2007년 유럽위원회가 자국특허에 대한 배타적 법인세 감면을 ‘유럽 위원회조약 226조(Freedom of Establishment and Free Movement of Services)’ 위반으로 판결하여, 이후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활동이라는 제약조건을 제거하고 대신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둠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는 본문 내용 참고

▼ 표 4 |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요약

국가	도입	적격 IP자산	대상소득	PB세율 / 법인세율
아일랜드	1973~2010, 2015	(EU)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적격 컴퓨터 프로그램 및 R&D 결과 특허권,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활동 수행 필요	IP에 관한 특정 판매수익	6.25% / 12.5%~33%
프랑스	2001, 2019	(EU)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확장된 특허인증서(특허추가보호인증서), 유틸리티인증서, 식물품종인증서, 산업조립공정(취득 IP 포함), 특허 가능한 발명품(중소기업 한정), 인수한 IP는 2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취득후 2년 이상된 IP의 양도 순소득, 라이선스 수수료	법인세의 10%감면 / 25.83%~32.02%
터키	2001	터키 내 R&D, 혁신에 의한 발명(취득 IP 포함), 허가권, 특허권, 개작권, 개발, 수정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 20%
헝가리	2003	특허권, 실용신안권, 식물다양성 보호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배타적 권리, 희귀의약품 등	소득 및 이전소득의 50%	4.5~9% / 9~18%
이스라엘	2004	해당 없음. 외국인 거주자에게 산업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고 과학자 사무실'로 승인받아 세금감면을 받음	외국인을 위한 산업 R&D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6% / 7.5% / 12%
벨기에	2007	(전 세계) 특허권, 부수적 특허인증서, 사육권, 희귀의약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활동 수행 필요	총 특허소득, 순 혁신소득	5.1%~6.8% / 33.99%
네덜란드	2007	(전 세계) 소프트웨어, 특허권, 품종특허권, 의약품 유통 라이선스, 승인된 연구용역으로 취득한 IP(추가 자체개발 IP 포함),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5% / 25%
스페인	2008	(EU) 특허권, 디자인, 노하우, 비밀공식, 공정, 계획, 모델(취득 IP 포함)	순이익 및 비관계사 이전소득	10% / 30%
룩셈부르크	2008, 2018	(전 세계)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품 또는 서비스판매로 인한 로열티, 자본이득 및 내재 IP 소득 및 이전소득 80% 면제 순자산세 면제	5.76% / 22.47%
중국	2008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집적회로설계 특허권, 식물신품종권, 바이오신약 및 과기 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 기타의 기술성과	보상소득금액 개인소득세액 50% 감면	0%~12.5% / 25%
몰타	2010~2016, 2019	특허권,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브랜드, 상표, 상호, 마케팅 관련 IP자산 제외	총 특허권 수입	0%~6.25% / 12.5%
스위스	2011	(전세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취득 IP 포함)	IP 취득원가를 제외한 총특허소득, 이전소득	8.8% / 1.5%~24.2%
키프로스	2012	특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 및 유전물질 보호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모델, 고아약품지정 및 특허 보호연장	로열티, 보험 또는 보상 금액, IP 양도소득 80% 감면, IP이용 제품판매 수익(내재이용료)의 80% 감면	2% / 12.5%
영국	2013	(EU) 특허권, 부수적 보호인증서, 데이터 보호권, 화웨이 품종보호권, 인수한 IP는 추가 IP 개발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 19%
포르투갈	2014	특허발명, 모델 및 산업디자인 등 혁신	적격 IP 총소득(관계사거래 제외)	11.5%~23%

국가	도입	적격 IP자산	대상소득	PB세율 / 법인세율
이탈리아	2015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델, 소프트웨어 저작권, 노하우, 비밀공식, 공정 등	순이익의 50% 및 이전소득 전액 (90% 이상 재투자 조건)	13.95% / 27.9%
리투아니아	2018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추가보호인증서로 보호되는 특허가능성 기술	특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5% / 15%
슬로바키아	2018	특허권, 실용신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로열티, 내재사용료(IP 이용제품 판매수입)	10.5% / 21%
폴란드	2019	특허권, 발명에 대한 추가 보호 권리,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집적회로지형등록의 권리,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제에 대한 특허에 대한 추가 보호 권리, 의약품 또는 수의학 제품 등록 권리, 식물신품종 및 동물품종 등록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라이선스 수수료, IP 양도소득, 적격 IP 제품·서비스 판매 소득, 법원등 소송에 따른 침해보상	5% / 19%

출처: PWC, 『Tax Notes』, 2012, p.1667.; 문은희, “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입법과제”, Lisa Evers, Helen Miller, and Christoph Spengel, Intellectual Property Box Regimes: Effective Tax Rates and Tax Policy Considerations, ZEW Discussion Paper, No. 13-070; NARS 현안분석 vol.17, 2018.; 박진석, “유럽지재권 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제도”, 과학기술정책, 2014.;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April 2017.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주: 1. 스위스는 최근 Nidwalden의 스위스 주뿐만 아니라 스위스 전체를 포괄하는 주 단위로 2020년에 발효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서 개발된 특허 및 유사한 권리로 인한 소득에 대해 최대 90%의 과세 기준 감면을 제공하고, 칸톤은 더 낮은 감축을 선택할 수 있음
2. 터키는 ‘**터키기술개발구역**’에서 수행된 R&D 활동으로 인한 적격 지식재산소득에 대해 완전한 세액공제(실효세율 0%)를 허용
3. 몰타는 2016년에 특허박스제도를 폐지. 그러나 몰타는 2019년 법인세에 관한 EU 행동 강령과 OECD의 수정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4. 리히텐슈타인은 OECD의 수정 넥서스 접근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허박스제도를 폐지

□ 특허박스제도 국내적용 문제

- **(R&D 세액공제와 중복지원)** 특허박스제도는 기존의 ‘R&D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에다가 추가적으로 ‘R&D 성과물의 사업화’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게 되어 중복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게 됨
- **(대기업 혜택 편중)**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의 수와 품질 및 사업화 역량이 훨씬 커서 특허박스제도는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세수감소)** 특허박스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함
- **(조세회피)** 특허박스제도로 인해 시장의 경쟁력에 의해 선정되어야 할 해외투자가 낮은 조세혜택에 영향을 받아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는 불공정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음

□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방안

-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제도 설계)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된다는 부정적 효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품 생산 및 서비스에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
 - 기존 R&D 조세특례제도가 대기업 편중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우선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전략산업 기술 역량 증진형 특허박스제도) 미래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지원·발전을 통해 자국의 핵심소재·부품·장비기술을 발전시켜 해외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기술무역의존을 해결
 -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역량 및 그 기반을 국가 혹은 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제품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 경쟁력 확보나 제품 개발 및 양산 등에 핵심적인 특허를 대상으로 적용
-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한시형 특허박스제도) 우리나라를 떠나 개도국으로 진출했던 국내기업, 즉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에게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을 적용하여 국내로 리턴할 수 있도록 유인

제4장 해외 특허조사·분석 비용 조세제도

□ (IP-R&D와 특허정보 조사·분석)

- 정부 R&D를 통한 고품질 IP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쉐주기에서 IP를 연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
- IP-R&D는 특허를 R&D의 결과물로만 보지 않고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로 삼아 R&D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R&D 수행방식
- R&D 과정에 특허정보 분석을 전략적으로 접목하여 효과적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 성과를 우수특허창출로 연계
- 특허정보 조사·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특허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R&D에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동향조사를 총괄하는 개념

□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 현황

- (대만) 생기신약(生技新藥)산업발전 조례에 의거하여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에 한해 연구개발비의 35%를 공제해주고 있음

근거법규	생기신약(生技新藥)산업발전 조례 제5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조치
주요 내용	한시 조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기술 및 신약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은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R&D 및 인재교육에 투자된 자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 • 단, 특정 연도의 R&D 비용이 과거 2년간 평균 R&D 비용을 상회할 경우, 또는 특정 연도의 인재 교육비용이 과거 2년간 평균 인력교육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 대신에 해당 초과금액의 50%를 지불법인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선택 가능 • 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①을 중복 적용할 수 없음
형식	총액형·증가형 혼합형
공제액	공제액=연구개발비×35% 단,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가 과거 2년간 평균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 공제액은 해당 초과금액의 50%
공제한도	법인세액의 50%
적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조건의 기업 대상(투자로서의 바이오기술 및 신약산업 육성에 관한 비용의 경감에 관한 규칙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이오기술 및 신약산업의 R&D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당국에서 신약의 인체실험, 현장시험 및 판매(또는 생산)에 관해서 라이선스 승인을 취득 2. 전연도의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관련된 비용이 순이익의 5%를 넘거나 또는 연구개발비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 또는 전연도의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관련된 비용이 순이익의 10%를 상회 3. 전문 자격을 가진 5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 • 대상 비용(동 규칙 제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상근직원, 임원, 어드바이저의 급여 2. 대학(혹은 기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전문연구원 고용 비용 3. 의학연구기업의 R&D 전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관한 작업의 위탁에 관련된 비용 4. 출납에 대한 기록이 있고, 연구에 사용된 비품, 소모품, 시료 5. 연구에만 사용되는 신규 설비 취득비용 6. 연구에만 사용되는 건물 월세 및 감가상각비 7. 연구에 필요한 특허기술 전문지식 또는 저작권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비용 8. 제조기술의 개량에 관한 이하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의 생산성 향상 - 장비 제조 또는 설계 - 바이오기술 및 신약 생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개량 - 바이오기술 및 신약 생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설계 9. 정부 경제부가 초빙한 대표기관 및 전문가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혹은 기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전문연구원의 고용 비용 - 의학연구기업의 R&D 전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관한 작업의 위 부탁에 소요된 비용 - R&D에 관련된 기타 비용

○ (네덜란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RDA)제도’를 근거로 산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
(예: 신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의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근거법규	소득세법 제3.52a조
공제액	<p>공제기초금액*x1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로 인정되고, 월 평균 R&D 시간이 150시간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제기초금액은 실적 금액이 아닌 고정금액(R&D 1시간당 15유로)을 이용하여 계산 - 연간 적격 비용 합계가 5만 유로를 넘을 경우에는 고정단가를 적용하여 공제기초금액을 계산하거나 실적비용을 공제기초금액으로 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공제한도	한도액 없음
대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 자신의 R&D 신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R&D 활동(이하, 적격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귀속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신청은 R&D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기업청에 제출. R&D 활동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등을 추계하고, R&D 프로젝트 종료 후에 산정되는 실적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 공제액 정산 • 적격 비용은 R&D의 성과 실현을 위한 모든 지출(회계상 ‘비용’에 한정되지 않음)이며, 납세자 자신이 행한 지출 • 적격 연구개발 활동의 4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이 이용된 제품, 제조 프로세스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산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 신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 - R&D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관한 조사 - 프로세스 대상의 기술적 연구(예: 제조공정이나 소프트웨어 개량) • R&D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관리 등의 간접업무, 프로토타입 제작, 시장조사, 특허신청·유지, 생산 준비 • RDA 대상 비용은 적격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 관련된 비용이며 이하의 비용은 RDA의 적용 대상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설비의 감가상각비, 자금조달 비용, 토지 매입·개량비용, 일반 용도의 IT기기, 중고 자산, 에너지투자 공제 또는 환경투자공제가 인정된 투자 • 일반적으로 외부에 위탁된 연구 활동에 관한 비용은 RDA의 대상이 아니나, 적격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위탁된 작업의 위탁내용이 WBSO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 가능, 예로, 프로토타입 제작·테스트를 위탁한 비용은 적격

○ (영국) Corporate tax Act, Finance Act를 근거로 구체적 R&D 활동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조사 비용을 R&D 비용에 포함하여 세제혜택

구분	중소기업 스킴	대기업 스킴
공제액	<p>소득공제액=적격연구개발비×225% (적격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125%의 추가손금산입)</p>	<p>① 특별공제 소득공제액=적격연구개발비×30%(적격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30% 추가손금 산입) ② R&D 세액공제 세액공제액=적격연구개발비×10% * 2015. 3. 31.까지 상기 선택, 2016. 4. 1.부터 R&D 세액공제로 단일화</p>
대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성 요건: 기업은 과학 또는 기술의 진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기업 자체 능력배양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술 분야 전반의 진보를 창출해내는 것 • 적격 비용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연구개발비용은 R&D 프로젝트(직·간접적 활동)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관련된 아래 ①~⑥의 비용 	

구분	중소기업 스킴	대기업 스킴
	① 인건비: 임원 및 종업원 인건비 ② 인재파견 비용 ③ 업무위탁비 ④ 소모품비 ⑤ 제약업계의 임상시험참가비 ⑥ R&D에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료 - 간접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R&D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실시된 이하로 한정 ·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 관리, 보안, 관리사무 업무, 재무인사 업무 · 연구설비 리스 등의 부수 업무 · 연수 업무 · 대학에서 수행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 의한 연구 · R&D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검사, 조사, 샘플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 · 구체적 R&D 활동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조사	

○ (개선안)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을 R&D 비용 세제혜택 대상 비용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표 5 | 특허조사·분석 비용 관련 R&D 세액공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자.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자. 중소기업이 다음의 기관을 통해 지출한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 1)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R&D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3)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4)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변리사 사무소

제5장 해외 특허출원·등록 비용 조세제도

□ 국내 특허활동 현황

▼ 표 6 |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 현황

(단위: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기업	38,090	40,478	46,074	45,104	41,156	37,551	34,016	35,114	39,079
중견기업	11,116	11,747	11,551	11,569	11,623	10,293	10,416	9,932	9,752
중소기업	32,897	35,927	39,069	42,197	45,167	46,194	45,553	47,509	50,672
그 외	62,655	67,890	69,925	72,713	74,199	74,053	73,351	75,125	74,815
합계	144,758	156,042	166,619	171,583	172,145	168,091	163,336	167,680	174,318

자료: 특허청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을 거쳐 하락을 하였으며 그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이 되어서야 그 이전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던 2015년 수준을 넘게 됨
- 기업유형별로 보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약 25.9%로 가장 높고, 대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0%로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외 특허활동 현황

▼ 표 7 |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기업 현황

(단위: 기업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194	1,681	10,194	14,536	12,443
중견기업	315	1,395	5,542	6,576	4,755
중소기업	3,533	10,417	22,164	25,672	21,028
그 외	819	6,402	26,625	35,909	31,006
합계	4,861	19,895	64,525	82,693	69,232

자료: 특허청

- 해외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평균 중소기업이 약 4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8 |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26,573	30,840	33,392	34,814	34,301
중견기업	3,283	3,513	3,557	3,781	4,211
중소기업	3,971	3,935	4,571	4,927	5,068
그 외	5,248	5,555	5,961	5,617	5,325
합계	39,075	43,843	47,481	49,139	48,905

자료: 특허청

-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건수를 보면 대기업이 약 70%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해외 특허출원 기업 수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으나, 해외 특허출원 건수만을 본다면 대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이는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에 대한 예산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예측할 수 있음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 현황>

□ 미국

- 미국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의 세액공제는 적격연구개발비용(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 R&E)과 연계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됨
- 미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R&D 활동을 보면 4가지 사항을 부합해야 함
 - ① IRC §174¹⁾에서 규정된 실험적 R&D 활동이어야 함
 - ② 물리학, 생물학, 엔지니어링 혹은 컴퓨터 과학에 해당하는 기술적 특성에 해당해 함
 - ③ 실험 과정(process of experimentation)이 있어야 함
 - ④ 새롭거나 개선된 기능, 성과, 신뢰성 혹은 품질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수행 등의 기능적 생산 요소(functional product elements)가 있어야 함

1) IRC §174에서의 R&D 비용이란, 납세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험 혹은 연구와 관련된 R&D 비용을 말한다.

- 일반적인 관점으로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한마디로 언급한다면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상품(product)의 개발 및 개선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함
 - 상품이란 견본품(pilot model), 공정과정(process), 공식(formula), 기법(technique), 발명품(invention), 특허(patent) 혹은 이와 유사한 자산(similar property) 및 납세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판매·임대·라이선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함
- 일반적인 R&D 비용의 세액공제에서 특허의 개발 및 개선에 발생하는 비용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허를 획득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특허의 신청 및 완성을 위한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법률지원 비용 등을 모두 포함
-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준금액 초과하는 적격 R&D 비용의 20%로 적용, 최근 3년 평균 R&D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초과액에 대해 15% 적용, 과거의 연구개발비가 없을 경우 연구비의 6%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세액공제를 적용

미국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특허의 개발 및 개선에 발생하는 비용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특허의 신청 및 완성을 위한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법률지원 비용 등을 모두 포함(단,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비용은 불포함)

□ 프랑스

- 프랑스는 2013년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II)를 도입하여 R&D 비용에 대한 혁신적인 조세지원정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세법 244조 quarter B에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특허활동비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크게 두 정책으로 나눌 수 있음
 - ① 새로운 상품 창출을 위한 특허 생산·유지비용, 방어비용,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②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구매된 특허와 관련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 특허 관련 비용은 특허생산비용, 특허유지비용, 특허방어비용, 보험료 등 네가지로 나뉨
 - (특허생산비용) 특허출원 신청 시 변리사 및 변호사에 지불되는 비용 이외에도 프랑스 특허청에 지불되는 출원비용, 승인비용, 서류 관련 지출비용 등도 포함
 - (특허유지비용) 특허등록 이후 발생하는 특허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발생하는 비용

- (특허방어비용) 특허권 등의 피침해 및 침해 등 소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
 - (보험료) 특허와 관련하여 지불된 보험계약에 대한 지출비용
- 프랑스의 R&D 세액공제는 연간 1억 유로 이내의 적격 R&D 비용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며,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됨

프랑스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프랑스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특허의 생산, 유지, 방어 및 보호 등의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한 것과 R&D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특허의 감가상각 및 분할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나뉨
- 특허 관련 비용은 특허생산비용, 특허유지비용, 특허방어비용, 보험료를 의미함

□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 벨기에 특허취득활동에 대한 투자공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
 - 다른 국가들과 같이 R&D 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3.99%)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공제의 비율(13.5%)이 세배 이상 더 높음
- 투자소득공제는 취득 시에 1회성으로 13.5%를 하거나 또는 감가상각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20.5%를 선택할 수 있음
 - 투자소득공제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에 사용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나 특허는 1회성만 적용할 수 있음
- 벨기에 내국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의 벨기에 지점도 R&D와 특허에 대한 투자소득공제 적용 가능
- 그 외 특허의 투자공제 실시 국가
 - (네덜란드) 일반 감가상각에 추가로 투자한 특정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28%까지 세액공제
 - (터키) 특허 원가의 40%만큼 투자 소득공제를 허용
- 특허 투자공제의 효과
 - 특허의 구매가격을 경감시켜 주어 특허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발
 - 특허거래시장 활성화 → 상업화 용이 → 특허출원 및 등록 증가

벨기에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R&D 비용의 세액공제에 비중을 두기보다 특허취득활동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공제인 투자공제 비중을 두는 정책 실시

□ 포르투갈

- 포르투갈의 세액공제제도를 보면 특허활동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한 R&D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격 비용의 32.5%가 기본 공제액으로 적용
 - 과거 2년 평균 R&D 비용을 초과하는 적격 비용(증가분)에 대해 150만 유로 한도 내에서 50%의 공제 가능
 -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
-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 2년간 평균보다 증가한 연구개발비의 50% 추가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은 기본 공제율 32.5%에서 15%를 가산한 47.5%를 적용
-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고 그 대상을 보면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 및 ‘R&D에 할당된 특허취득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음
 - 특허취득비용의 경우 관련된 R&D 비용과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함

포르투갈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중소기업 한정)
 -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특허등록 및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 R&D에 할당된 특허취득에 발생하는 비용
 - 특허취득과 R&D 비용과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함

□ 스페인

- 특허활동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
 - 이전 2년의 평균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치까지는 25%가 적용되고,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42%가 적용
- 추가로 관련된 R&D 활동을 위해 지급된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비용은 17%가 적용

- 유형 및 무형 자산에의 투자와 관련된 비용에는 8%의 세액공제가 적용
- 기존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술적 혁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8%의 세액공제 혜택
 - 특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의 형태의 기술 획득에 대한 세액공제 1백만 유로 한도

스페인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특허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기존 상품이더라도 기술적 혁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특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에 대하여 1백만 유로 세액공제 한도

□ 노르웨이

- 일반 기업의 경우 R&D 비용에 대해 18%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혜택을 주어 R&D 비용의 20%까지 세액공제
- 특허취득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
- R&D 세액공제는 새롭거나 개선된 자산, 서비스 또는 생산 공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R&D 지출에 대하여 적용
- R&D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연구위원회(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의 승인이 필요

노르웨이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특허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세액공제(일반 18%, 중소기업 20%)
 - 특허취득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만 지원
-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연구위원회 승인 필요

□ 칠레

- 기업이 등록된 연구기관과 공인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R&D 비용 또는 승인된 R&D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서 연간 1만 5천 UTM을 한도로 35%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65%는 비용(손금)으로 처리
 - 65%만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100% 비용처리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계산하면 26.25%
 - 예를 들어, 승인이 보류되어 승인되지 아니한 R&D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면 65%의 비용만 인정되고 35%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칠레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기업이 등록된 연구기관과 공인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R&D 비용 또는 승인된 R&D 프로젝트 비용에 대해 지원 	

▼ 표 9 | 해외 주요국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입법례

국 가	특허비용 세액공제 대상	공제내역 및 공제율	특허취득비용 범위
미국	대기업, 중소기업	기준금액 초과액의 20%, 최근 3년 평균 50% 초과액의 14%, 당기분의 6% 중에서 공제적용	• R&D 활동과 관련된 특허비용만 허용
프랑스	대기업, 중소기업	30%(1억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	• 특허비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 • R&D를 위해 구입한 특허의 감가상각비 공제적용
벨기에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비용은 3.99% 투자소득공제는 13.5%	• 특허투자공제에 더 비중을 둠
포르투갈	중소기업	당기분의 32.5%와 증가분 50%,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 32.5%에 15%를 추가한 47.5%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특허취득비용의 경우 R&D 비용과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함
스페인	대기업, 중소기업	당기분의 25% (평균비용 초과 이전까지 25%, 초과비용은 42%)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관련 임금비용 17% • 혁신활동 8%
노르웨이	중소기업	일반 18%, 중소기업 20%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연구위원회 승인필요
칠레	대기업, 중소기업	35%(비용처리기준으로하면 26.5%)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공인된 계약 및 승인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지원

제6장 결론

- IP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IP제품의 매출 관련 소득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동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특허박스제도가 보완·개선되고 있음
 - IP 관련 조세지원의 확대는 국가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
 - OECD 및 G20은 국제적 논의에서 실질적 R&D 활동 없이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을 받는 유해조세관행을 방지하고자 Guideline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 도입 시 국제협약의 최소 요건 검토 필요

- 특허박스제도 도입 시, 국내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우선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함
 -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품 생산 및 서비스에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됨
 - ‘시범적용-보완-재적용’이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음

- 강한 특허창출 위해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
 -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R&D 투자 견인을 위해 ‘적격 R&D’ 활동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 R&D 비용’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임
 - 특히 강한 특허창출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R&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 대만의 경우, 생기술(生技新藥) 산업발전 조례를 근거로 연구에 필요한 특허기술 전문 지식 또는 저작권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비용을 적격 R&D 비용으로 보고 35% 세액공제
 - 네덜란드는 연구개발비 추가공제(RDA)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 신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를 적격 R&D 활동으로 보고 공제기초금액의 160%에 대해 추가 공제
 - 영국은 구체적 R&D 활동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간접적인 R&D 활동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25%, 대기업은 130%를 공제
 -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조사·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불포함
 - 기존 인건비 중심의 대상 비용 범위를 R&D 관련 지식확보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R&D 비용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개정 필요

□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세제혜택 필요

- 미국의 경우는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의 세액공제는 적격 R&D 비용(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 R&E)과 연계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
 -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법률지원 비용
- 프랑스의 경우 특허 생산·유지비용, 방어비용, 보험료 등에 대한세액공제와 구매된 특허와 관련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는 특허투자공제에 더 큰 비중을 둠
 - 벨기에는 특허비용에 대하여 R&D 비용과 동일하게 3.99%의 세액공제
 - 네덜란드는 일반 감가상각에 추가로 투자한 특정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28%까지 세액공제
 - 터키는 특허 원가의 40%만큼 투자 소득공제를 허용
-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부여
 - 포르투갈은 특허활동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한 R&D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노르웨이는 특허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지원
- 스페인은 특허활동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25% 세액공제
- 해외 주요국들은 특허창출이 곧 국가혁신과 발전의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

CONTENTS

제 1 장	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제 2 장	R&D 조세지원제도	5
	제1절 개요	7
	제2절 국내 R&D 조세지원제도	9
	제3절 해외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14
	I. 미국	14
	II. 프랑스	16
	III. 영국	19
	IV. 네덜란드	20
	V. 독일	21
	VI. 중국	22
	VII. 일본	24
제 3 장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27
	제1절 개요	29
	제2절 BEPS Action 5 및 박스 접근법	36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44
	제4절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69

제 4 장 해외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조세제도 81

제1절 개요 83

 I.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의 개념 및 필요성 84

 II. 특허정보의 주요 조사·분석 항목 87

제2절 해외 주요국 및 국내 IP-R&D 정책 및 특허정보 활용 현황 93

 I. 미국 93

 II. 유럽 96

 III. 일본 98

 IV. 한국 99

 V. 소결 103

제3절 해외 주요국 및 국내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현황 104

 I. 대만 104

 II. 네덜란드 108

 III. 영국 110

 IV. 한국 113

 V. 소결 114

제4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적용방안 115

제 5 장 해외 특허출원·등록 비용 조세제도 117

제1절 개요 119

제2절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120

 I. 국내 특허 현황 120

 II. 해외 특허 현황 122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 현황 124

 I. 미국 124

 II. 프랑스 125

 III.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128

 IV. 포르투갈 129

 V. 스페인 130

 VI. 노르웨이 131

CONTENTS

Ⅶ. 칠레	132
Ⅷ. 소결	133
제4절 국내 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법률(안)	135
I. 중소기업 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도	135
II. 조세특례제도 주요 내용	137
III. 조세특례제도의 연혁 및 추진 경위	138

제 6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141
-------------------	------------

참고문헌	148
-------------	------------

표 목차

표 1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10
표 2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12
표 3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출제도 신설 및 재설계(안)	12
표 4	의안별 개정(안) 비교	32
표 5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35
표 6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35
표 7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요약	45
표 8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46
표 9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47
표 10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48
표 11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48
표 12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49
표 13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50
표 14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50
표 15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일부 적용)	51
표 16	벨기에의 특허소득공제(PID)와 혁신소득공제(IID)의 비교	58
표 17	총수익 중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 비중	61
표 18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제11조	62
표 19	중국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는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정리	63
표 20	해외 주요국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70
표 21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관련 주요사업	74
표 22	산업기술별 유럽의 리쇼어링 기업 비율	77
표 23	R&D IP와 IP-R&D 차이점	85
표 24	선행기술조사 절차	89
표 25	정부 R&D 기획 및 수행단계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관련 주요 논의 내용	101
표 26	민간 및 정부 IP-R&D 지원 현황	101
표 27	특허조사·분석 비용 관련 R&D 세액공제 개정(안)	115
표 28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 현황	120
표 29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등록 건수 현황	121
표 30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기업 현황	122
표 31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건수	123
표 32	해외 주요국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입법례	132
표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개정(안) 비교	137
표 34	조세특례제도 적용에 따른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138
표 35	우리나라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연혁	139
표 36	2017년과 2020년 조세특례제도 제안 내용 비교	140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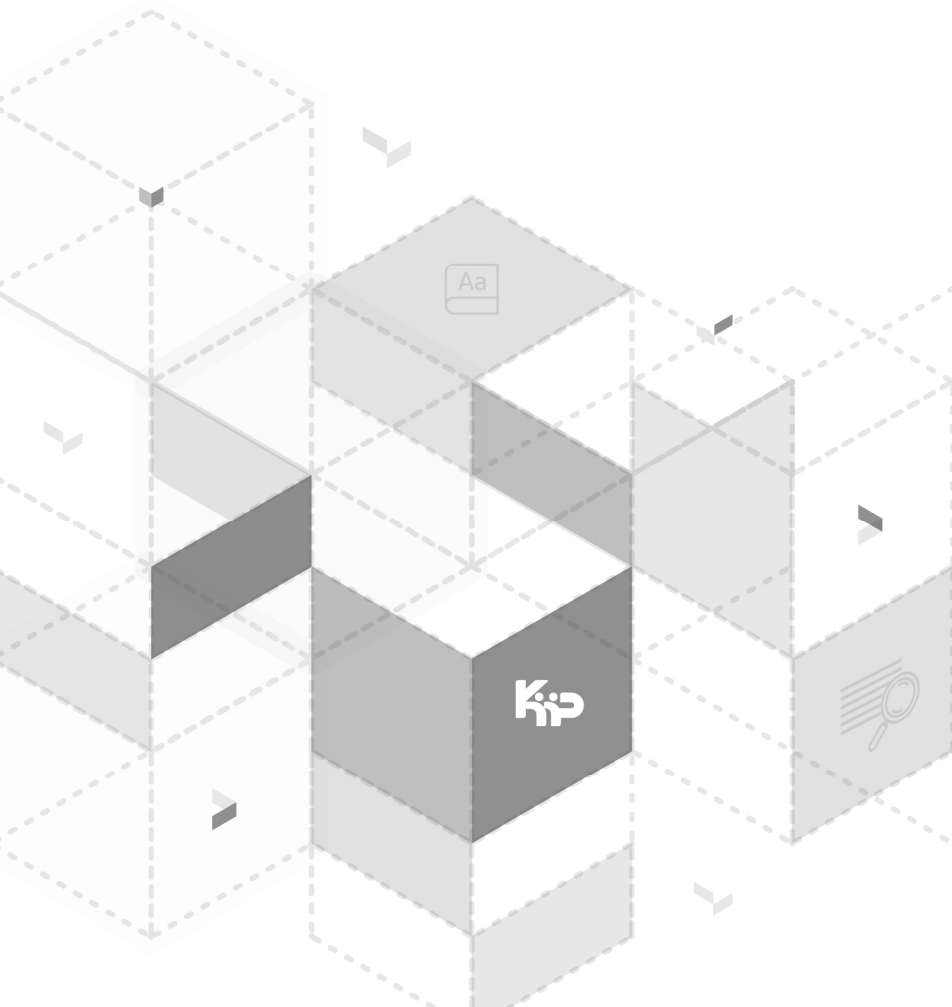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그림 1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가 유럽특허 이전 수	34
그림 2	Streaming방식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적용	56
그림 3	벨기에 기업의 혁신소득공제(IID) 산출 사례1	59
그림 4	벨기에 기업의 혁신소득공제(IID) 산출 사례2	60
그림 5	리쇼어링 이유	78
그림 6	IP-R&D의 특허 성과(2013~2017)	86
그림 7	IP-R&D의 경제 성과(2012~2016)	86
그림 8	특허정보분석 세부절차	90
그림 9	미국의 IP-DRIVEN R&D	93
그림 10	R&D 수행단계의 특허동향 추진 프로세스	102
그림 11	(주)글루칸의 특허분석 톨	103
그림 12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 현황	121
그림 13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등록 건수 현황	122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 기술 강국들은 항구적인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국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고,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 틈새를 찾아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해외자본 투자와 기술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세·재정제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조세제도는 국가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정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그중에서 연구개발(R&D) 조세지원제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조세의 기능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직무발명보상금이나 실시료 수익 등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해 R&D 활동과 지식재산 활동 관련 조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은 R&D 성과 확산과 지식재산권 및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수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으로서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과 특허출원·등록에 이용되는 각종 비용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탈취 및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야기된 미-중 무역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도 역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산업전쟁의 한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경쟁국의 산업기반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힘겹게 쌓은 우수 기술력을 탈취당하지 않게 보호하고, 해외 독점 기술에 주요 산업의 근간이 종속되지 않도록 강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지원제도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조세제도 개발의 근거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로는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해외 특허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제도, 그리고 특허박스제도 등이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필요한 조세제도 도입을 위해 해외 주요국들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세제도를 조사하여 국내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주요 이슈들을 미리 살펴본다.

제2절

●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선별하고, 국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각 제도마다 국내 적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문제점 및 주요 이슈를 검토한다.

우선 국내외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조세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환경에서 우선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주요 조세제도의 해외 주요국의 제도로서 먼저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R&D 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 성장에 비해 우수특허 확보 및 기술사업화 성장이 부족한바, 기술사업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허박스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적용 사례와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내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리거나 힘들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특허조사·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IP-R&D 비용 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조세지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21년부터 IP-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내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이다.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조세제도 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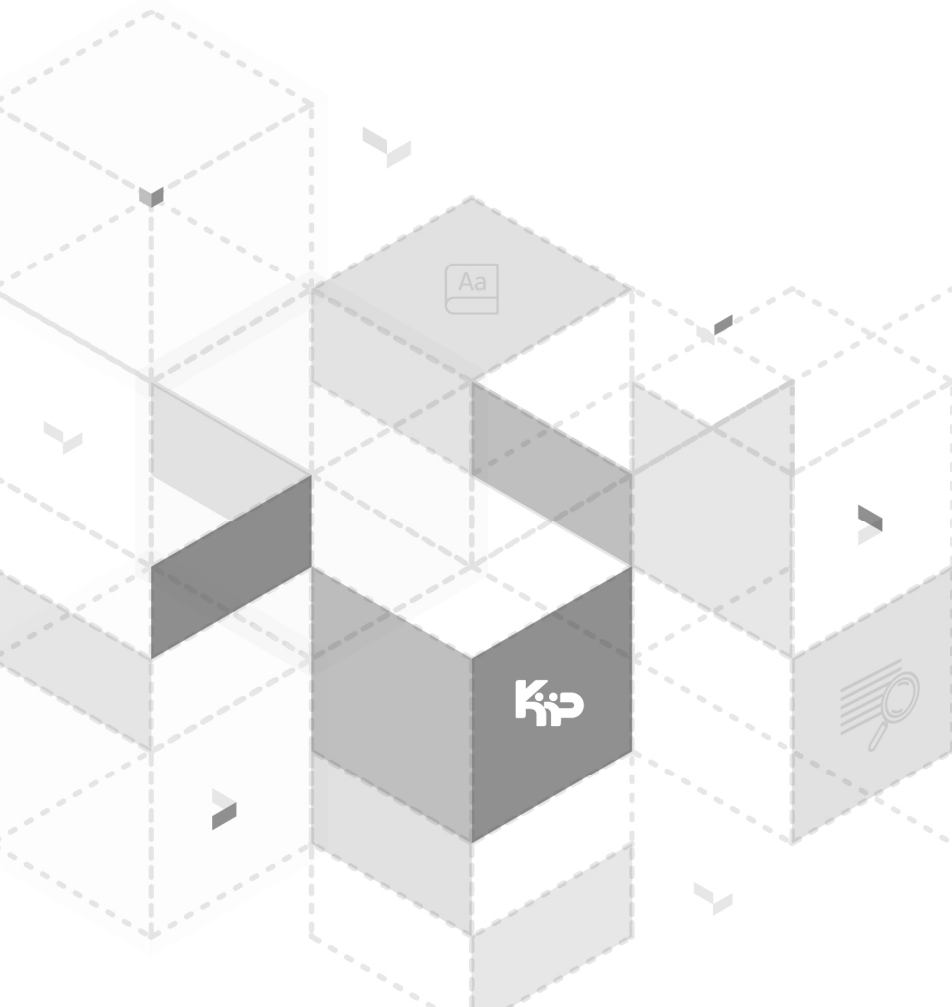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R&D 조세지원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특허박스제도에 대해서 해외 주요국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제4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의 세액공제를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개정 법률안과 비교해본다. 제5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이슈를 검토한다. 제6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한다.

R&D 조세지원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 R&D 조세지원제도

제3절 해외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제1절 ●● 개요

최근 글로벌 시장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빅데이터·가상현실 등의 신기술로 전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기술을 선점하는 자가 항구적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 조성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R&D가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기술혁신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조세감면 등의 여러 정책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R&D 성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R&D 단계에서는 조세지원을 통해 실패위험을 분담함으로써 R&D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지식재산의 창출뿐만 아니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의 실시를 통한 로열티 소득이나 지식재산이 내재된 제품의 판매 소득에 특허소득공제라는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 이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오픈이노베이션이 촉진되고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견인할 수 있다¹⁾.

우리나라는 R&D 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된 기술과 IP가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미흡하였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는 총 77,988.8백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4.53%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²⁾ 그리고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특허출원 수는 209,992건으로, 중국 1,542,002건, 미국 597,141건, 일본 313,567건에 이어 세계 4번째이다.³⁾ 우리나라의 R&D 비용이나 GDP 대비 R&D 비중, 특허출원 수 등 양적인 혁신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사업화나 특허수익 등의 질적인 혁신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R&D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조세지원제도가 R&D 투자의 확대 및 특허창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특허 등

1) 지식재산 양도소득세가 높을수록 양도자는 소득세를 지식재산권 가격에 반영하여 지식재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다.

2) www.ntis.go.kr

3) www.wipo.int

의 R&D 성과를 경제적 이익까지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R&D 세제지원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제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다양한 국가들의 R&D 세제 운용방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제도를 함께 비교해 본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지식재산 부분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구분해서 살펴본다.

제2절

●●
국내 R&D 조세지원제도

국내 R&D 조세지원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1982년 처음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R&D 활동 자체에 집중되어 있다. R&D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금액과 비중은 '19년 실적 2조 6,370억 원(비중 5.32%) ⇨ '20년(전망) 3조 334억 원(5.63%) ⇨ '21년(전망) 3조 1,248억 원(5.50%)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내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⁴⁾,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이 있다.⁵⁾

특히 매년 가장 큰 조세지출 증가를 나타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20년 증가폭이 4,178억 원 증가하였고, '21년 증가폭 예상액은 841억 원이다. 연구·인력개발비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와 일반 분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중소기업 30%(코스닥상장 중견기업 25%, 일반기업 20%)와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을 합산한 비율⁶⁾이 세액공제 되고 있다. 일반 분야의 경우 ①연구·인력개발비 전년 대비 초과분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와 ②연구·인력개발비 총발생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⁷⁾ 2%)에 해당하는 두 금액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⁸⁾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기술개발 관련 조세지원을 위해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호제1항(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투자가 완료되는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018. 12. 24. 삭제되고 제25조에 통합되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는 2019. 12. 31.부로 삭제되었다.

6) 중소기업의 경우, 30%+(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7)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1/2(단, 2%를 한도로 한다.).

8) 다만, 과거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직전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과거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총발생액 기준 공제 방식을 적용한다.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하는 R&D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법률이나 개별과학기술특별법을 근거로 구분 경리한 출연금을 익금불산입한 후, 해당 R&D 지출이나 R&D 자산 취득 시 익금산입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R&D 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개발특구육성법」에 따른 등록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의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제품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부터 세액을 감면한다. 해당 감면대상사업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⁹⁾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연도까지는 세액의 100%를 감면하고, 이후 2년 이내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는 세액의 50%를 감면한다.¹⁰⁾

우리나라의 기술이전 과세특례는 본격적으로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추진했던 1982년에 R&D 투자 조세지원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R&D 자체뿐 아니라 R&D의 결과물인 기술의 이전을 통해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의 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되고 R&D 투자세액공제에 더하여 R&D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보조금처럼 제공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¹¹⁾, 기술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은 2006년에 폐지되었다.

▼ 표 1 |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단위: 십억 원, %)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제도	조특법 규정	조세지원액			
			2010	2017	2019	2020
IP 창출 준비 (기술창업)	R&D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세액감면	제12조의2	22	4	3.1	10.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에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코넥스상장기업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 등의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제13조	1.8	1.6	6.4	2.4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제14조	-	0	1.9	7.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투자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제16조	1.2	19	59.3	91.0

9) 지정·등록일로부터 5년 후의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정·등록일로부터 5년 후의 과세연도.

10) 감면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50%)+(상시근로자수×1천만 원) 혹은(투자누계액×20%).

11) 2003년부터 기술이전 과세특례의 폐지에 대한 논리로 재정경제부가 비판을 제기하였다.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제도	조특법 규정	조세지원액			
			2010	2017	2019	2020
	-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30~100% 소득공제 (5천만 원 초과 30%, 5천만 원 이하~3천만 원 초과 70%, 3천만 원 이하 100%)					
IP 창출 수행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당기분 R&D 비용의 최대 30%*(중소기업 4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20%(중소기업 30%)+(매출액 대비 신성장 R&D 지출액 비중×3)	제10조	1,857	2,547	2,318	2,73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지급받은 R&D 출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후 연구개발비 지출 시 또는 R&D 자산 취득 시 익금 환입	제10조의2	1.3	0.9	0.7	0.6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1% 세액공제(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제25조 ①1호			32.6	31.6
사업화	기술이전 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IP자체形 특허박스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과세특례) - 이전소득의 50% 세액감면,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중소기업 1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제12조	1.2	0.3	0.6	0.9
	직무발명 처분·실시보상금 비교세	소득세법 제12조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추정 곤란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자료 발취·정리

이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여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이전 과세특례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급부상하면서 핵심 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4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수혜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하여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식재산 조세혜택이 대기업에 편중된다는 비판으로 인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되었고, 제도 도입 후 3년이 지난 2016년~2018년 기술이전·취득·대여에 대한 평균 세액감면액이 총 3억 원밖에 되지 않자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2018. 12. 31.에 일몰되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R&D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인,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특허권 등')을 이전·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시 발생한 소득의 50% 세액감면,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대여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 세액감면한다. 동 법을 'R&D 성과물의 활용'이라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특허박스제도와 비교하기도 하지만, 동 법이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점, ‘지식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¹²⁾이라는 점에서 유럽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와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R&D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R&D 활동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을 정부차원에서 공유(risk sharing)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간 R&D 활동의 양적 증가에는 기여해 왔으나 R&D의 효율성 등의 질적 성장에서는 제한적 성과를 보였다. 따라서 R&D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표 2 |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	특허박스
목적	특허거래 활성화를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국내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방법	R&D 성과물의 활용	R&D 성과물의 활용
	‘IP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세액감면	‘IP 제품’에 대한 세액감면 기술이전소득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을 통한 사업화 소득에 세액감면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업규모 제한 없음

▼ 표 3 | 지식재산 관련 조세지출제도 신설 및 재설계(안)

제도	조항	내 용
재설계	조특법 §104의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총선 규정: 사업장 신설 시만 적용, '20. 3. 23. 개정) - 해외생산량 감축률 요건 삭제 및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20. 7. 개정안)
	조특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령) 별표6)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신설	조특법 §13의3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8의3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2) 특허박스제도는 특허의 사업화된 소득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신설 및 재설계된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는 종전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사업장 신설 시만 적용되었으나 올해 3월 개정을 통해서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20. 3. 23. 개정)시켰다. 이어서 올해 7월에는 해외생산량 감축률 요건도 삭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시행령 별표6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조특령 별표6)”을 추가 적용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도 확대 적용하였다. 특히 특허조사·분석 비용은 지식재산 창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
해외 주요국의 R&D 조세지원제도

I 미국

미국의 R&D와 관련된 세제혜택은 R&D 비용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된다. R&D 비용공제의 경우 연구·실험비용을 당기에 비용공제하거나 특정한 경우 이연하여 60개월 이상 기간 동안 상각이 가능하다.¹³⁾ R&D 세액공제는 적격 R&D라는 개념으로 세액공제 대상 R&D를 정의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R&D 비용공제는 공제한도가 손금산입액의 제한이 없다. 대상 비용으로, ▲사업화 전의 R&D 활동과 향후 거래 또는 사업 간 일정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의 연구·실험비용을 적격 비용으로 한다. R&D 활동이 납세자의 기존 거래 또는 사업과 무관한 새로운 제품 라인 또는 프로세스를 위한 것이라는 입증 필요하다. ▲연구·실험비용은 제품 또는 프로세스 개발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입증 가능한 정보하에서 제품 또는 프로세스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을 때 불확실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연구·실험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포함된다. ▲납세자 대신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연구소, 기금, 엔지니어링 회사, 유사한 계약업자 등)가 실시하는 연구·실험비용(해외 위탁비용을 포함) 및 특허취득비용(신청 실시 및 완료 과정에서 사용한 변호사 보수 등 포함)도 적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토지 취득이나 토지 및 기타 자본자산의 개량비용은 비적격이며, 이들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필요에 따라 상각해야 한다. ▲연구 혹은 실험에 이용되는 자산에 관련된 감가상각액과 상환액은 제174조의 비용으로 간주하며, 연구 혹은 실험에 이용되는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상각비(IRC 제167(f)조 및 제197조 참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은 본래 제174조의 비용은 아니지만 제174조에 해당하는 연구·실험비용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제174조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서, 적격 연구는 새로운 또는 개량된 제품의 사업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과정을 수반하는 R&D 활동으로 정의한다(IRC 제41조). ▲적격 연구가 되기 위한 4가지 요건인, ①제174조하에서 공제 가능

13) Internal Revenue code(IRC) 제174조.

(비용이 실제로 공제될 필요는 없지만, 제174조의 적격 요건 필요), ②기술적 성질의 정보 발견, ③실험 프로세스로 구성, ④새로운 또는 개량된 제품의 사업 구성요소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 R&D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상기 적격 연구 실시에서 발생한 사내연구비와 위탁연구비에 대해서 이용가능하다. 사내연구비에는 임금, 소모품비가 포함되고, 위탁연구비는 65%를 적격 비용으로 인정한다.

한편, 적격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으로는, 사업 구성요소의 상업적 이용 후에 실시되는 연구, 기존사업 구성요소를 특정 고객의 수요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연구,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한 정보로부터 기존 사업의 구성요소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연구, 능률조사, 경영기능 또는 수법에 관련된 활동, 시장 조사·시험·개발(광고 또는 판매 촉진을 포함), 정례적인 데이터 수집, 또는 품질 관리에 관한 정기 시험, 특정의 내부사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연구(단 예외 있음),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자치 연방구 또는 미국 식민지 밖에서 실시되는 연구, 사회과학, 예술 또는 인문과학의 연구, 타인(또는 정부 사업체)에 의해서 부금 계약 또는 기타 방법에 따른 자금 공급되는 범위에서의 연구 등이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적격 연구비용 관련 세액공제 외에 기초연구 세액공제 및 에너지연구 컨소시엄 관련 세액공제 등이 있다. 기초연구 세액공제는 적격기관의 '특정 상업적 목적이 없는 과학적 지식의 진보를 위한 독창적인 연구'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에너지연구 세액공제는 주로 에너지연구 또는 공익적 에너지연구를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가 지출한 비용의 20%를 세액공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IRC 제174조의 연구·실험비용이 경비나 간접비 등을 포함하는 데 비해, IRC 제41조의 적격 연구비용은 직접비뿐이고, 위탁비는 지불 또는 발생한 비용의 65%만 인정한다. IRC 제174조 연구·실험비용에서 'R&D 활동'의 개념이 IRC 제41조 적격 연구비용에서 '적격 연구' 개념에 비해 포괄적인 범위를 가진다. 하나의 R&D 비용이 양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IRC 제41조의 세액공제액은 모두 신청하고, 해당 세액공제액을 IRC 제174조의 비용공제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IRC 174조의 비용공제액을 신청하고, IRC 제41조의 세액공제액은 65% 신청하는 방법이다.

II 프랑스

프랑스의 R&D 조세제도는 R&D 세액공제(Credit d'impôt Recherche, CIR)와 중소기업¹⁴⁾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redit d'impôt Innovation, CII)가 있고, 두 조세혜택에 대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세법상 적격 R&D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기업은 규모, 업종, 국적을 불문하고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프랑스 세무법 제244조).

R&D 세액공제는 공제한도액이 없지만 R&D 비용이 연간 1억 유로 초과 시에는 공제율이 하락하게 된다. 대상 비용에 적합한 R&D 활동의 3가지 범주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로 구분된다. ▲기초연구는 알기 쉬운 이론 등을 사용하여 특성, 구조, 물리현상 및 자연현상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에서 파악된 사실을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이고, ▲응용연구는 기초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응용 가능성, 기업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식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새로운 해법에 관한 연구이며, 성과는 프로토타입의 제품, 프로세스 또는 방법론 등을 포함한다. ▲실험개발은 새로운 원자재, 기기,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또는 기존의 것들을 대폭 개량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또는 파일럿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적격 R&D 비용은 모든 업종에 걸쳐 프랑스령 내에서 수행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한다(프랑스 세무법 제244의 48-11조). ▲적절한 기술적 스킬을 가지는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 또는 기술자의 인건비(세전 급여총액, 법정 사회보험료 포함) 및 그 50%에 해당하는 경상경비, ▲R&D 활동에 배속된 박사에게 대한 24개월간 급여의 400%, 24개월 뒤는 통상 연구자의 인건비 책정, ▲R&D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기기의 감가상각비이며, 75%는 경상경비로 추가, ▲R&D로 취득한 특허권의 감가상각비, ▲특허 및 식물신품종 보호권 취득·유지·보호에 필요한 비용, ▲특허 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분담금(상한 연간 6만 유로), ▲규격화 비용의 50%, ▲기술동향 모니터링 비용(연간 6만 유로 한도),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대한 위탁연구로 지출하며, 해당 금액의 2배로 계상(위탁비용 상한선은 연간 1,200만 유로), ▲인정 민간 연구기관 등에 위탁연구에 관한 지출로 지출 상한은 기타 적격 연구개발비 총액의 3배(위탁비용 상한선은 이하와 같음)로, 위탁처와 지배·종속 관계가 있는 경우(연간 200만 유로), 위탁처와 지배·종속 관계가 없는 경우(연간 1,000만 유로), 공공연구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용(연간 1,200만 유로)로 구분할 수 있다. ▲R&D 세액공제의 신청에 관한 컨설팅료 중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적격 R&D 비용에서 감액한다. 한도는 15,000유로(부가세 제외), 또는 적격 R&D 비용의 5%에서 공공 보조금 수취액을 공제한 금액, 또는 컨설팅료가 R&D 세액공제액에 비례하는

14) 프랑스의 중소기업은 직원 수 250명 미만,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미만 또는 총자산 4,300만 유로 미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경우는 전액을 감액한다.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비용 상한은 연간 400,000유로이고, 이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적격대상 비용은 ▲신제품 프로토타입 설계 및 신제품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에서 발생하는 이노베이션 비용(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제품 이노베이션에 관한 지출(기법, 상품화 기획은 제외),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제품, 기술, 에코 개념, 인간공학, 혹은 기능성(이들 기준은 검토 중)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기존 또는 기존 제품에 관한 활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이노베이션 세액공제가 R&D 세액공제와 크게 다른 점은 혁신적 활동의 기준이 보다 엄격하다는 점이다. ▲이노베이션 비용의 적격 기준은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와 거의 공통적인 비목을 설정한다. 즉, 이노베이션 관련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설비의 감가상각비 해당 금액의 75%가 경상경비로 가산, 대상 업무에 배속된 인원의 인건비, 해당 금액의 50%가 경상경비로 가산, 공공인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대한 외부위탁비, 인정 민간 연구기관 등에 대한 외부위탁비, 특허 및 의장의 신청비, 특허 및 의장의 보호 비용 등이 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지식재산의 규모 및 활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과학적 접근에 따라 수행된 활동을 포함하는 R&D 비용에 대해 광범위하게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의 일반 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CGI) 부속서 III의 제49조 제f항은 기본 연구, 응용 연구 및 실험 개발이라는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에 적합한 R&D 활동을 정의하는데, 국제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R&D 활동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R&D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참신성: R&D 활동이 제품 및 프로세스에 포함된 지식을 포함하여 구조화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한다. ②창의성: 지식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적용이 R&D 활동의 목표 중 일부이어야 한다. ③불확실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식별 가능한 지식으로 사전에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④체계성: R&D 활동이 수행절차를 계획하고 그 진행과 결과를 기록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⑤양도 및 재생산 가능: R&D 활동은 취득한 새로운 지식의 이전 및 사용, 결과의 복제가 가능해야 한다.

프랑스의 R&D 세액공제에서는 특허를 R&D 활동의 주요 지표로 사용한다. 실무적으로 특허 심사 시 참신성과 독창성, 산업활용성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특허의 등록 및 연장이 R&D 세액공제의 자격 평가 시 창의성 지표로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알려진 최신 기술과의 차이점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창의성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허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가 R&D의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구보고서와 시험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R&D 활동과 특허출원이 항상 병행되지는 않지만, R&D 관련 특허를 세액공제의 적격성 분석 방법에 활용하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일반조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244조 quater B II a-j는 R&D 세액공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R&D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비용으로 R&D 활동 관련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운영비, 외부발주된 R&D 비용, 산업재산권 보호 비용, 표준화 비용, 기술조사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산업재산권 보호비용에는 발명품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식물품종증서와 관련된 비용만 포함되며, 디자인, 모델, 상표 및 라이선스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조세법 제244조 quater B II e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보호 비용은 크게 ①R&D 활동을 위해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지원과 ②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유지비용, ③산업재산권의 방어비용, ④산업재산권 관련 보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국가차원의 산업화를 위한 관점이 아닌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특허 또는 식물품종증서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EU,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에 기반한 활동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에 대한 출원 및 유지비용은 특허취득과 관련하여 INPI(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의 변리사 및 대리인에게 지불한 수수료, 특허 출원담당 요원, 번역 수수료, 특허 부여 및 발명의 보호를 보장하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INPI의 이익을 위해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 식물품종증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유지목적에서 프랑스 및 해외의 변리사 및 특허감독기관에 지불한 연간 보수 및 유지수수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비용은 특허 실시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의 방어비용은 변호사 및 사법 전문가의 보수와 법원 비용을 포함한 기업의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뿐 아니라, 특허방어를 위한 회사 내부인력의 인건비도 포함된다.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 관련 비용이 R&D 활동과의 연계성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산업재산권 관련 보험료는 분쟁 관련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비용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기부금의 경우 연간 €60,000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은 회사 소유의 특허 또는 식물품종증서와 관련하여 소송차원에서 부과되는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및 전문가 보수 등의 법적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기부금이다. 회사의 특허 및 식물품종증서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법적 비용을 포함하는 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기부금이 포함된다.

반면, 해당회사의 위조 행위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위조품 피해 회사에 손실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계약은 분쟁의 맥락에서 발생한 비용 이외의 비용을 충당하는 보험 계약이므로, 피해회사 손실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및 기부금 분담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프랑스 일반조세법 제244조 quater B II j)는 기술조사활동을 R&D 활동과 관련된 비용

으로 인식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세법상 기술조사는 개발기회를 추론하기 위해 과학지식 및 기술에 관한 정보와 제품 및 공정, 방식, 정보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영구적인 업데이트 과정으로 정의된다.

R&D 활동 관련 기술조사비용은 R&D 활동을 수반할 경우 연간 최대 €60,000 한도로 세액 공제된다. 따라서 회사는 기술조사비용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 비용은 과학저널 구독, 데이터베이스, 기술연구 구매 경비 및 과학경시대회 참가(등록) 비용 또는 전적으로 참가로 인해 파생된 직원 경비를 포함한다.

III 영국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진 기업은 R&D 세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R&D 세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세제 적용을 달리 한다. 중소기업은 적격 R&D 비용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세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별공제를 적용한다.¹⁵⁾ 위탁 R&D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R&D 세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대기업 스킴에 따른 적용이 인정된다. 대기업은 '16년 4월 1일부터는 R&D 세액공제를 적용한다.¹⁶⁾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시 적격 R&D 비용에 대해서 125%의 추가손금산입을 하기 때문에 공제액=적격 R&D 비용×225%로 계산된다. 세액공제 한도액이 없고, 하나의 R&D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세금감면액은 750만 유로까지이다.

대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시, 특별공제액=적격 R&D 비용×130%로 적격 R&D 비용에 대해 30%의 추가손금산입을 한다. R&D 세액공제액=적격 R&D 비용×10%이다. 특별공제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없다.

R&D 세액공제에서 적격 R&D 비용은 R&D 프로젝트(직·간접적 활동)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관련된 인건비, 인재파견 비용, 업무위탁비, 소모품비, 제약업계의 임상시험참가비, R&D에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의 비용이 해당한다. 특히 중소기업 업무위탁비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대한 업무위탁비는 지출액의 65%를 적격 비용으로 간주하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업무위탁비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불액과 위탁업체가 지불한 관련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격

15) 중소기업은 500명 미만의 직원과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 또는 조직이다. (a)1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연간 매출 (b)8,6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대차 대조표(이 정의는 2008년 8월 1일부터 R&D 지출에 적용됨).

16) 대기업의 경우 '15년 3월 31일까지는 특별공제와 R&D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었다.

비용이 된다. 대기업의 업무위탁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적격 비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R&D 프로젝트에 대해 특정기관(대학, 자선단체, 연구기관 등), 개인, 개인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등으로 직접 종사하는 작업에 대한 지출은 적격 비용이 된다.

간접적인 활동으로도 적격 R&D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R&D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실시된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리, 보안, 관리사무 업무, 재무인사 업무, 연구설비 리스 등의 부수 업무, 연수 업무, 대학에서 수행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 의한 연구, R&D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검사, 조사, 샘플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 구체적 R&D 활동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조사 등으로 한정한다. 또한 R&D가 대학과 같이 비과세 기관 등 적격단체에 위탁되는 경우는 위탁비가 적격 비용으로 인정된다.

IV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RDA)는 인건비 이외의 R&D 비용 및 투자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대표적인 R&D 지원 세제로 '1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공제한도는 없고, RDA에 의해 과세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통상적 법인세 원칙하에 1년간 환급 또는 9년 이월이 가능하다. 대상 비용은 납세자 자신의 R&D 신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R&D 활동에 직접 귀속하는 비용이다. 즉, R&D 신청은 R&D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기업청에 제출하고, R&D 활동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등을 추계하고, R&D 프로젝트 종료 후에 산정되는 실적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 공제액을 정산하게 된다.

적격 비용은 R&D의 성과 실현을 위한 모든 지출(회계 상 '비용'에 한정되지 않음)이며, 납세자 자신이 행한 지출을 말한다. 적격 R&D 활동 유형으로 ▲신기술이 이용된 제품, 제조 프로세스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산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 신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 ▲R&D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관한 조사, ▲프로세스 대상의 기술적 연구(예: 제조공정이나 소프트웨어 개량)를 구분할 수 있다.

R&D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으로는 프로젝트 관리 등의 간접업무, 프로토타입 제작, 시장조사, 특허신청·유지, 생산 준비 등이 있다.

RDA 대상 비용은 적격 R&D 활동에 직·간접 관련된 비용이며, 임금, 설비의 감가상각비, 자금조달 비용, 토지 매입·개량비용, 일반 용도의 IT기기, 중고자산, 에너지투자공제 또는 환경투자공제가 인정된 투자의 비용은 RDA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위탁된 연구 활동에 관한 비용은 RDA의 대상이 아니나, 적격 R&D 활동

과 관련하여 위탁된 작업의 위탁내용이 WBSO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 제작·테스트를 위탁한 비용은 적격 대상 비용이 될 수 있다.

V 독일

독일의 R&D 촉진정책은 에너지, 헬스케어, 교통, 보안, 통신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독일에는 R&D 우대세제뿐 아니라 투자단계의 우대(세액공제 등)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승계 등에 대한 특혜세제도 미비하다. 독일의 기업 구성은 높은 중소기업 비중(기업 수 99.6%, 노동인구 79.2%)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R&D 지출이 전체 대비 비중이 낮아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R&D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50억 유로 이상을 R&D 보조금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특히 R&D 중요성이 높은 분야인 기후변화, 에너지, 헬스케어, 운수, 정보통신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 한도는 지원대상 비용 전체의 50%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대상사업은 보다 높은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

보조금은 사업자별이 아니라 사업 프로젝트마다 지급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은 프로그램마다 상이하다. 하이테크 전략하에 배분되는 보조금은 대상사업이 2개 이상의 파트너십 조직(민간기업과 연구기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한다. 보조금 지원 평가 시, 장기고용의 증가, 사회·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적 요건뿐 아니라 사업목적의 내용 등 정성적 요건 및 사업 프로젝트 고유의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한다.

R&D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기초연구(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실험 또는 기초연구), 산업연구(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서비스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 목적을 가지는 사업), 실험개발(프로토타입이나 사업계획 작성 등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의 한도는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50%, 중소기업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보조율이 결정되지만 50% 이상 적용을 인정한다.

중소기업 핵심 이노베이션 프로그램(Zentrale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ZIM)은 기술 분야나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 공동연구에 의한 R&D 및 기술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과거 개별 프로그램에서 실시된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등의 시책이 통합되어 중소기업 및 대학발 벤처의 상호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ZIM의 대상사업은 공동연구에 의한 R&D 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동독 지역에 대해서는 단독기업의 R&D도 대상으로 한다. 단독

기업이 실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적격 비용의 최대 45%, 독일 국내 기업·연구기관이 실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적격 비용의 최대 50%, 독일 국내 기업·연구기관과 해외기업이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적격 비용의 최대 55%까지 보조금 한도를 둔다.

독일은 기업형태를 크게 자본회사와 인적회사로 구분하고, 자본회사에는 법인세, 인적회사에는 소득세를 각각 부과한다. 기업분류를 할 때 기업의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구성원에 있는지(인적회사), 혹은 자본·재산에 있는가(자본회사)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율은 전국이 동일하며, 현재 평균적 실효세율(법인세[소득세]+연대부가세+영업세)는 29.83%이다.

독일 정부는 보조금 정책의 효과가 유효한 이상, 세제혜택은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영국의 특허박스 도입을 비롯하여 다른 EU 국가의 R&D 세제혜택 강화에 대응하여 독일 내 각 단체에서 R&D 세액공제 등 세제혜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⁷⁾

현재 독일 상·하원의 주요 정당은 R&D 우대세제 도입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독일의 우대세제 도입 목적은 다국적 대기업 유치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은 세제혜택의 대상은 독일 국내에서 실시되는 R&D 활동이며, 특허박스제도처럼 기존 특허 등으로부터 얻는 수입에 대한 과세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VI 중국

중국은 과세소득액 계산에 있어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 개발에 관한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기업소득세법 제30조). R&D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R&D 비용을 실제 발생액에 추가로 50%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R&D에 발생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에는 실제 발생액에 50%를 가산한 금액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 있다(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95조). R&D 세제혜택에서 추가손금 산입한도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서는 'R&D'의 정의는 언급이 없으나, 2008년 12월 10일 국가세무총국이 공포한 「기업 연구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관리변법(시행)의 발부에 관한 통보」(국세발[2008]116호)에서 'R&D 활동'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R&D 활동은 기업이 새로운

17) 예를 들어 2011년에 독일의 주요 경제 단체인 독일공업연합(BDI), 독일화학공업연합(VCI) 등 단체가 R&D 관련 지출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당시 독일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과 유로존 경제위기 장기화를 이유로 R&D 우대세제의 조속한 도입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지식과 기술(인문과학, 사회과학 제외)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기술, 공정, 제품(서비스)의 대폭적 개선을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와 개발활동을 말한다. 기업 제품(서비스)의 통상적 업그레이드나 공개된 과학연구 성과를 직접 응용하는 활동(예를 들어 공개된 신기술, 재료, 장치, 제품, 서비스 또는 지식 등을 직접 채택하는 것) 등은 R&D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상 우대 R&D 활동은 국가중점 지원대상이 되는 첨단기술·신기술 목록 리스트 및 중점항목 고급기술 산업개발 가이드선(2007)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R&D 활동으로 제한되며, 구체적으로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 및 방송기술 등을 포함한 전자정보기술, ▲중국 전통 의약품과 화학약품 등을 포함한 바이오테크놀로지나 신규 의료기술, ▲민간용 항공기기술이나 항공관제기술 등을 포함한 항공·우주 관련 기술, ▲금속재료와 세라믹(무기비금속물질)의 응용기술 등을 포함한 신소재 기술, ▲범용기술과 현대적 물류 등을 포함한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기술 등을 포함한 새로운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관한 기술, ▲수질오염 제어기술이나 환경 모니터링 기술 등을 포함한 자원·환경기술, ▲자동화된 생산공정 제어 시스템, 고기능 계측기, 첨단제조기술 등을 포함하는 전통산업의 개혁에 이용되는 고도 신기술 등의 산업 및 기술 분야이다.

기업의 적격 R&D 활동에서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R&D 활동에서 적격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 R&D 활동에 직접 연관된 신제품에 관한 설계비용, 새로운 기술, 절차의 책정에 관여하는 비용, 번역 비용을 포함한 기술서 및 자료와 관련한 비용
- R&D 활동 중 직접 소비되는 재료, 연료 및 전력에 관한 비용
- R&D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 지불되는 임금, 급여, 상여보조금 및 수당
- R&D 활동에만 사용되는 설비 및 기기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지불리스크
- R&D 활동에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특허권, 특정 특허 미취득 기술 등 무형자산에 관련된 상각비
- 중간시험 및 실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금형이나 기술장치의 개발이나 제조에 관련된 비용
- 시굴이나 개발기술의 현지조사와 관련된 비용
- 연구결과의 평가, 검토, 검사 및 인정에 관련된 비용
- 기업이 국무원 또는 관련된 에너지 담당 정부당국이 정하는 규칙대로, 해당 R&D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해 출연한 기초연금, 기초의료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및 주택기금
- R&D 활동에서 발생한 기구설비의 운용, 보수, 조정, 시험 및 수리비
-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샘플 및 프로토타입의 비용 및 일반적 시험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 신약에 관한 R&D 활동에서 임상시험비용
- R&D의 결과에 관련된 인증비용

또한 중국은 공동·위탁연구 촉진 목적의 세제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과학연구기관 및 고등학교에 신제품·신기술 등의 R&D 비용을 지원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지원비용을 과세소득에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당초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해 특별히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소득을 넘어선 금액은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도의 기술, 거액의 투자, 공동의 집약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R&D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그룹에서 발생한 R&D 비용을 합리적 방법에 의해 배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R&D 자산의 가속상각·즉시상각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약품 제조, 전용설비 제조, 철도·선박·항공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 컴퓨터·통신기기 및 기타 전자장비 제조, 계측장비 제조, 통신·소프트웨어·정보기술서비스 등 6개 업종은 '1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구입하는 고정 자산에 대해서 상각기간의 단축 또는 가속상각의 적용 • 상기 6개 업종의 소형 박리(薄利)기업은 '14년 1월 1일 이후 신규구입하는 R&D 및 제조에 사용되는 계측기, 설비에 대해서 단가가 100만 위안 이하의 경우, 일괄 비용 계상 및 손금산입이, 단가가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각기간 단축 또는 가속상각 적용이 각각 인정 • 업종을 불문하고 '14년 1월 1일 이후 신규구입하는 R&D에 이용되는 계측기·설비에 대해서 단가가 100만 위안 이하의 경우는 일괄 비용계상 및 손금산입이, 단가 100만 위안 초과 경우는 상각기간 단축 또는 가속상각의 적용이 각각 인정 • 업종을 불문하고 단가 5,000위안 이하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일괄 비용계상 및 손금산입 인정

중국에서는 '14년 이후 업종을 불문하고, R&D를 위해 구입한 기기·설비에 대해 감가상각의 특혜를 인정해준다. 취득단가가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취득년도의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60%로 감가상각 기간 단축 또는 배액정률법(倍額定率法) 등의 가속상각이 가능하다.

VII 일본

일본의 R&D 세제는 크게 ①시험연구비의 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총액형) ②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 세제 ③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 ④시험연구비의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증액형)로 구성된다. 특히 2015년 세제 개정에서 기업 간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한 사업화와 가치창출을 촉진하고자 오픈 이노베이션형 R&D에 대한 조세지원인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였다.

특별시험연구에 관한 세액공제는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제42조의4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동 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되는 시험연구비 중 특별시험연구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특별시험연구비는 특정 상대기관과 공동시험연구나 위탁시험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령 제27조의4 제13항 제8호)로 규정된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및 해외의 이에 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육성자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해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법제42조의4 제8항 제9호, 령 제27조의4 제13항 제8호).

일본의 현행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동 제도에 의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특별시험연구비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구체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특별연구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특별시험연구비 중 ①국립시험연구기관 및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에 관한 시험연구비의 30% 상당액과 ②기업 간 공동·위탁 연구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같은 기타 특별시험연구비의 20% 상당액의 합계액이다.

다만 특별시험연구비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액의 5%를 한도로 한다. 또한 시험연구비 총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기술기반 강화 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나, 시험연구비의 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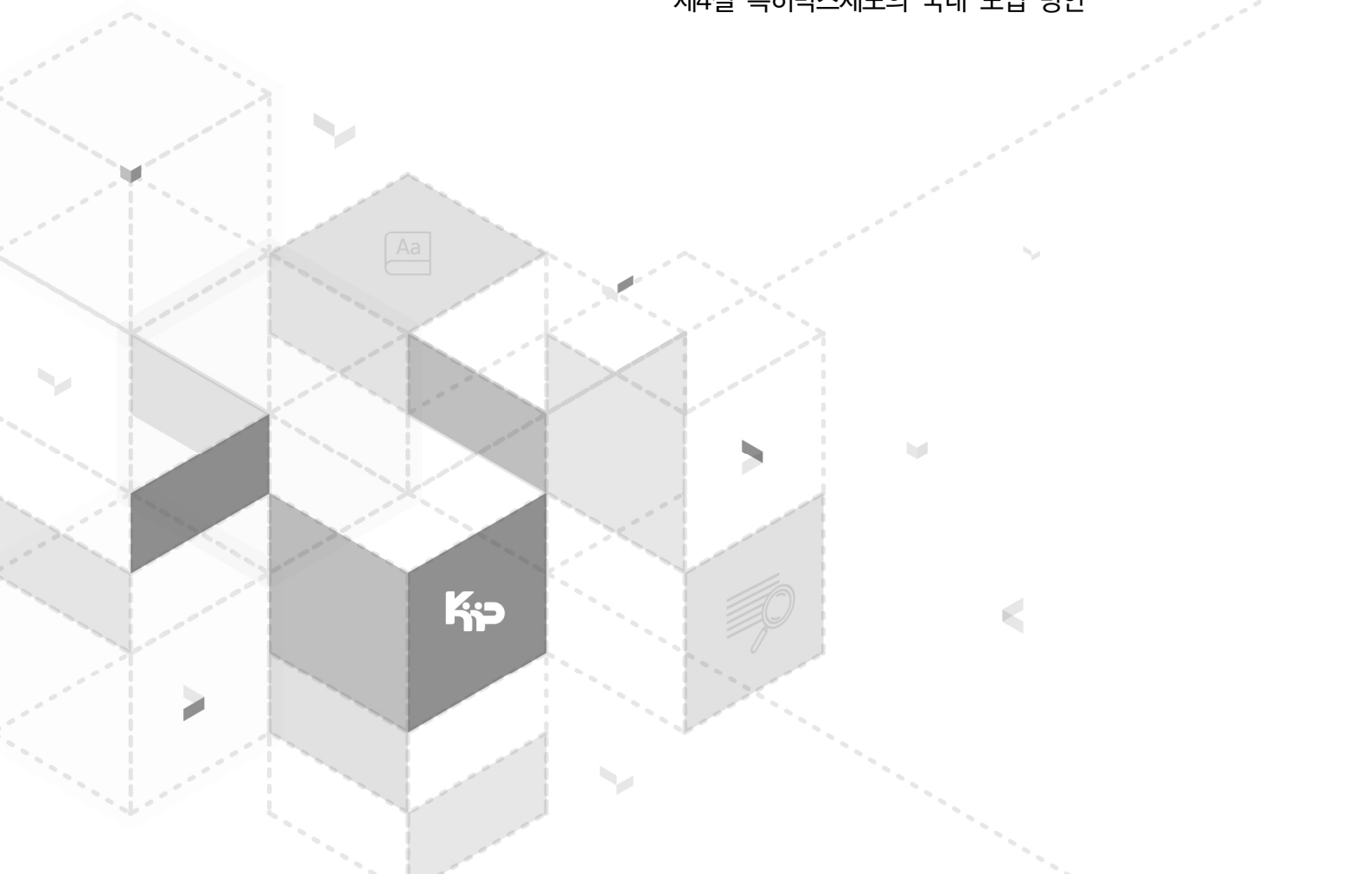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BEPS Action 5 및 넥서스 접근법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제4절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제1절 ●● 개요

1. 특허박스제도의 배경 및 개념

최근 글로벌 시장은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3차 산업혁명에서 IT 기반의 생산시설 및 제품에 지능을 부여하고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통한 기술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R&D가 매번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더 낮다. 기술혁신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조세감면 등의 여러 정책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R&D 성과를 사업화하기까지 추가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0여 년간 유럽의 주요국들이 자국 내 기업의 혁신기반 기술이전 및 사업활성화, 지식재산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¹⁸⁾, 특허 및 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Patent Box Regime)를 도입하고 있다.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의 특허박스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일반화된 학술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명칭도 특허박스 혹은 이노베이션박스(innovation box), 혁신소득공제(innovation income deduction), IP 조세제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특허박스제도는 협의의 의미로는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라는 한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광의의 의미로는 '지식재산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소득뿐만 아니라 특허 등 지식재산 자체의 대여·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lstadsæter 외(2015)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를 따라 광의의 특허박스제도의 정의를 준용한다.¹⁹⁾

18)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요인 중 하나로서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유입 효과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3년 글로벌 제약사인 Glaxo Smith Kline이 영국에 5억 파운드(약 8,800억 원)의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있었다.

19) Alstadsæter 외(2015)에서는 특허박스를 IP(Intellectual Property)박스라고도 한다. 특허박스는 IP를 활용하여 얻은 소득에 감소된 요율을 적용하는 산출 관련 세금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특허박스는 IP의 기업 수익에 우선적인 세금처리를 부여하는 특수 조세제도이다.; Alstadsæter, A., Barrios, S., Nicodeme, G., Skonieczna, A. M. and Vezzani, A. (2015), "Patent Boxes Design, Patents Location and Local R&D",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Papers, N. 57, June 2015.

특허박스제도는 지식재산이 적용된 제품의 경제적 수익에 대해서 일반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혁신기술이 상품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적극적으로 R&D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특허박스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식재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적극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이 제도로 인해 유해한 조세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비판하는 국가들도 있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IP 소득에 대한 조세지원을 오남용하는 관행이 확산되자, 특허박스제도의 효과 및 기능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G20의 요청으로 OECD에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Project Action 5에서 조사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 조세조약의 미비점 등을 이용하여 경제활동 기여도가 낮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관련 국가들은 기존의 IP 소득 조세지원제도를 BEPS Action 5에서 제시한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 비용혜택연계접근법, 이하 넥서스 접근법이라 한다.) 지침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특허박스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향후 새롭게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이 지침을 따라 도입하도록 권고 받고 있다.²⁰⁾

우리나라의 R&D 비용이나 GDP 대비 R&D 비중, 특허출원 수 등 양적인 혁신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사업화나 특허수익 등의 질적인 혁신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R&D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로 조세지원제도가 R&D 투자의 확대 및 특허창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나, 특허 등의 R&D 성과를 경제적 이익까지 이끌어 내는 데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R&D 자체에 대한 조세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식재산의 사업화에 대한 조세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술거래와 관련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규정은 지식재산 자체 소득만을 감면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럽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처럼 지식재산이 적용된 제품의 판매 소득에 대한 세제감면혜택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이른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으며,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였다. 2013년 7월 BEPS 프로젝트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2014년 9월에 일부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5년 10월 15개 Action Plan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G20에 제출하였으며, 동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현재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총 129 개국이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https://www.kipf.re.kr/beps/introduce_History.do).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R&D 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수익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사업화에 성공할 확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발명가 혹은 사업가에게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식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국내의 R&D 투자 및 지식재산 사업화의 활성화를 위해, BEPS 프로젝트의 국제적 논의에 따라 수정된 유럽의 지식재산 소득 조세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제품매출형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 관련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주요국들도 자국 내 기업의 혁신기술을 통한 사업활성화,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지식재산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및 혁신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위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자국 내 기업의 R&D를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 기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허박스제도에 의한 법인세 인하는 소득 총액이 대상이 아니라 특허가 기여한 순소득만을 구분·적용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래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특허박스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이에 대한 세금우대 내용은 다양하며 국가별로도 상이하다. 지식재산 관련 소득 유형은 ▲ 지식재산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 ▲ 지식재산 자체의 이전 ▲ 지식재산 자체의 대여 등으로 구분되고 특허박스제도 적용 소득유형도 국가별 경제 환경과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다양하다.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이동이 용이하고 인접한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식재산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 제도를 수용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 제도가 유해한 조세경쟁을 일으키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국가도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특허박스제도 초기에 ‘자국 내’ R&D 결과로서 특허만을 법인세 감면혜택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2007년 유럽위원회가 자국특허에 대한 배타적 법인세 감면은 ‘유럽위원회 조약 226조(Freedom of Establishment and Free Movement of Services)’ 위반으로 판결하였고, 이후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활동이라는 제약조건을 삭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동 제도에서 자국 기업의 사업화 촉진 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R&D 투자 확대와 특허출원·등록의 양적 성장에 비해 우수특허 확보 및 기술사업화 성장이 부족한바, 기술사업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허박스제도를 검토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허박스제도의 개념을 정리하고

특허박스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한다. 특히 특허박스제도를 먼저 도입·운영하고 있는 주요국의 사례 및 선행연구를 통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주요 요인과 특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을 검토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2. 국내 IP 사업화 지원 정책 도입 현황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주요국들이 자국 내 기업의 혁신기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자 지식재산을 통한 사업활성화, 기술이전,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 등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글로벌 혁신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제도적인 방안으로 특허박스제도는 민간기업들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2013년 6월에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건의하였다. 2014년 7월 김희국 국회의원이 특허박스 관련 입법안을 발의하였고, 2014년 8월에도 우윤근 국회의원이 특허박스 관련 입법안을 발의, 2017년 8월 김세연 의원, 2018년 12월 조배숙 의원, 2019년 1월 송희경 의원, 2020년 7월 14일 신정훈 의원 등이 특허박스제도 입법안의 발의하였다.

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게 중소기업(혹은 중견기업 포함)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과 내국인 간 기술거래(이전·대여 등)한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4(혹은 50%, 30%, 25%, 20% 등)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혹은 중견기업)의 사업화를 유도·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표 4 | 의안별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김세연의원 외 11인 (발의 2017. 8. 29.)	조배숙의원 외 9인 (발의 2018. 12. 11.)	송희경의원 외 10인 (발의 2019. 1. 11.)	신정훈의원 외 13인 (발의 2020. 7. 14.)	
시행일		2018. 1. 1.	2019. 1. 1.	2019. 1. 1.	공포 후 3개월	
기술 거래	이전 50% 공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1항
	취득* 5% 또는 10% 공제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2항
	대여 25% 공제	25%→50%	현행유지	현행유지	현행유지	제12조제3항
사업화	없음	중소기업 50% 공제	중소기업 25% 공제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공제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국내복귀기업 15%	제12조제4항 신설(특허박스)

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기술거래 취득)은 2018년 12월 31일 이후 일몰됨

관련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개정하는 형태로 발의되었고, 제안 이유로는 기술거래에 한정한 세제혜택을 사업화 영역으로 확대하여 R&D 성과물 활용을 촉진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 2017년 8월 김세연 의원 등이 특허박스 입법안을 발의하여, 중소기업이 자체연구·개발, 이전, 대여 받은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을 제시하였다. 특허 등을 대여한 경우에도 특허 등 이전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018년 12월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특허박스 입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 이전, 대여 받은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 감면하고, 중견기업은 15% 감면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2019년 1월에는 송희경 의원이 중소기업에 한하여 자체 연구·개발, 이전, 대여 받은 특허권 등을 이용한 재화나 용역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2020년 7월 신정훈 의원의 안건은 최근 해외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15%의 법인세 세액감면을 제안하였다. 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5%) 세액감면 혜택(안)을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신정훈 의원 외 13인, 2020. 7. 14.)

- ▶ 제12조(기술이전·취득 및 사업화) ④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 또는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이전·대여받은 특허권 등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특허박스제도 도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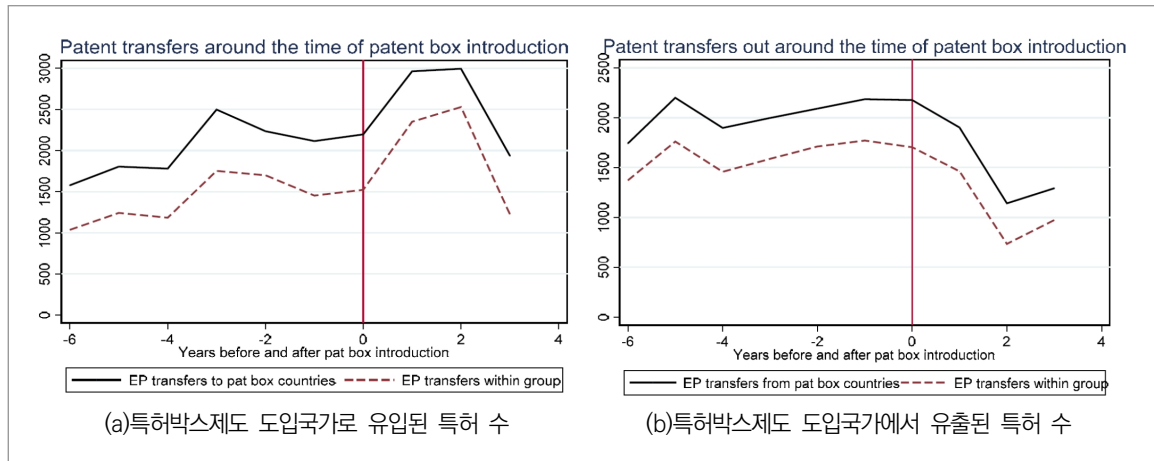
Fabian et al.(2019)의 연구에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하였다.²¹⁾ MPI 2018 특허이전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유럽 특허(EP)의 등록 소유권 이전이 약 120만 건에 달한다. 이러

한 특허권 이전 중 약 3분의 2가 기업 그룹 내에 있는 반면, 국가 간 특허권 이전은 약 12%를 차지한다. 가장 일반적인 권리 이전은 독일과 미국, 스위스 사이의 특허권 이전이 차지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2000~2014년 기간 동안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유입된 유럽특허의 총 이전을 연도를 함수로 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a)의 두 곡선은 특허박스제도 도입 후 2년 동안 예상되는 특허 이전의 증가를 보여 주며 곡선은 다소 증가하다가 원하는 전환이 완료되면 2년 후에 효과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²²⁾

그림(b)는 특허박스가 도입된 후 2년 동안 특허박스 도입국으로부터 특허권 이전이 총 2,000개에서 1,000개로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특허박스의 목적이 한 국가 내에서 무형소득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만은 그러한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보여준다.²³⁾

▼ 그림 1 |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가 유럽특허 이전 수



출처: Fabian Gaessler, Bronwyn H Hall and Dietmar Harhoff(2019), SHOULD THERE BE LOWER TAXES ON PATENT INCOME?, NBER Working Paper Series 24843, 2019,

EU(2016)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혁신성과지수²⁴⁾가 비도입국에 비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데, 도입국 평균 혁신지수는 0.541로 EU평균 0.521보다 높았고, 미도입국 평균은 0.430으로 도입국에 비해 혁신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⁵⁾

21) Fabian Gaessler, Bronwyn H Hall and Dietmar Harhoff(2019), SHOULD THERE BE LOWER TAXES ON PATENT INCOME?, NBER Working Paper Series 24843, 2019, 12p.
 22) Fabian Gaessler, Bronwyn H Hall and Dietmar Harhoff(2019), SHOULD THERE BE LOWER TAXES ON PATENT INCOME?, NBER Working Paper Series 24843, 2019, 13~14p.
 23) Fabian Gaessler, Bronwyn H Hall and Dietmar Harhoff(2019), SHOULD THERE BE LOWER TAXES ON PATENT INCOME?, NBER Working Paper Series 24843, 2019, 14~15p.
 24) 혁신성과지수(Innovation Performance Index)는 EU가 매년 EU회원국의 혁신활동성과지수 등 25개 부분을 평가하여 지수로 발표함.
 25) EU, Innovation Union Scordboard 2016, 2016;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 2.(재인용)

▼ 표 5 |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도입국가	지수	미도입국가	지수	미도입국가	지수
네덜란드	0.631	스위스	0.791	이탈리아	0.432
아일랜드	0.609	스웨덴	0.704	포르투갈	0.419
벨기에	0.602	덴마크	0.700	그리스	0.364
영국	0.602	핀란드	0.649	슬로바키아	0.350
룩셈부르크	0.598	독일	0.632	세르비아	0.325
프랑스	0.568	오스트리아	0.591	폴란드	0.292
스페인	0.361	이스라엘	0.581	리투아니아	0.282
헝가리	0.355	아이슬란드	0.572	라트비아	0.281
		슬로베니아	0.485	크로아티아	0.280
		노르웨이	0.463	터키	0.267
		키프러스	0.451	불가리아	0.242
		에스토니아	0.448	마케도니아	0.220
		몰타	0.437	루마니아	0.180
		체코	0.434	우크라이나	0.178
도입국 평균**	0.541	미도입국 평균**	0.430		
EU 평균	0.521				

* 스위스처럼 지역구에서만 시행하거나 이탈리아(2015년 시행), 포르투갈(2016년 시행)처럼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미도입국으로 분류

** 두 그룹의 t-test 결과 $t=1.710$, $p\text{-value}=0.05$ 로 그룹 간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출처: EU, Innovation Union Scordboard 2016, 2016;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 2.(재인용)

2011~2015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연평균증가율이 평균 3.8%인데,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은 10.8%, 미도입국은 -8.0%를 나타냈다.²⁶⁾

▼ 표 6 | EU국가 중 특허박스제도 도입국과 미도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특허박스제도 도입국*	252,182.4	188,790.0	274,878.7	158,244.5	380,083.5	10.8
특허박스제도 미도입국**	197,776.3	120,402.4	60,628.4	99,874.1	141,713.6	-8.0
EU***	449,958.7	309,192.4	335,507.1	258,118.6	521,797.1	3.8

*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스페인 등 8개국. 스위스처럼 지역구에서만 시행하거나 이탈리아(2015년 시행), 포르투갈(2016년 시행)처럼 최근에 제도를 도입한 경우는 미도입국으로 분류

**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등 16개국

*** 상기 24개국 총합

출처: OECD(2016), FDI flows(indicator). doi: 10.1787/99f6e393-en(Accessed on 14 December 2016); 유경진(2017) 재인용.

26) 유경진,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2017.

제2절

BEPS Action 5 및 넥서스 접근법

1.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적용 배경

국가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세 자주권을 가진다. 내국세법은 납세의무자와 세원, 세율, 조세 인센티브, 오용방지법, 이자 및 배당, 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비즈니스가 일반화됨에 따라 하나의 소득이 한 국가 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중복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양자 간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국가 간에 조세권한을 배분하여 기업의 거주국에서 과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거주국 이외에 두고 있는 경우 그곳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정사업 소재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기업의 거주국에서는 고정사업장 국가에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 로열티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원천국에서 원천징수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협약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더 유리한 국가로의 소득이전을 시도해왔다. 이에 G20과 OECD의 협력으로 유해조세관행 방지를 목적으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애플,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이른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12년부터 BEPS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공조 및 공동 대응방안 마련을 모색하였으며, 2012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의결하였다. 2013년 7월 BEPS 프로젝트 세부 과제를 발표하고, 2014년 9월에 일부 과제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15년 10월 15개 Action Plan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G20에 제출하였으며, 동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현재는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BEPS 대응을 위한 자국 세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 기준 총 129개국이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²⁷⁾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의 14개국과 이스라엘 및 중국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자국

27) https://www.kipf.re.kr/beps/introduce_History.do

에 첨단기술 기업 및 R&D 활동을 유치하고 무형자산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특허기술의 사업화 유도와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로 인한 5%대의 낮은 세율로 다국적 기업의 자국 유치를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게임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룩셈부르크에 기업을 이전하고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박스제도는 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허박스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특허박스제도가 도입취지와 어긋나게 국가 간 조세회피를 하거나 낮추려는 다국적 기업의 부정적인 행위에 대해 우려의 평가가 있다. 이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서유럽 국가들은 OECD가 국가 간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 ‘넥서스 접근법’을 적용하여 특허박스제도의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조세협약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위해 더 유리한 국가로의 소득이전을 시도해왔다. 다국적 기업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특허박스제도로 인해 상업 활동이 실제 일어나는 발생지 혹은 투자지역과 이익 납세신고지역을 대응시키지 못하여 각 국가별로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식재산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각 국가들의 경쟁으로 특허박스제도 관련 적격 기준을 낮추기 시작하면서 유해조세경쟁과 조세회피행위가 유발되었다. 이에 G20 회원국이 OECD에 요청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조세회피전략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Project가 추진되고, 총 15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BEPS Project는 모두 15개의 실행방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허박스제도의 효과 및 기능에 대하여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자 Project Action 5에서 관련 대책안을 제시하였다. Action 5에서는 유해조세경쟁문제(Harmful Tax Practices)에 대응하기 위해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소득에 대한 실질적 비용지출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익을 계산하도록 제안하였다.

BEPS Project 최종보고서에서는 특허박스제도를 유해조세제도로 보지는 않았지만, 해당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Action 5와 같은 일정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BEPS Project Action 5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설계할 때 R&D 활동에 조세혜택을 제공하지만 기타 국가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넥서스 접근법 도입으로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기 위한 구조조정 비용 및 경영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최종안은 비적격지출의 한도 내에서 적격지출의 30%의 추가감면소득(up-lift)을 허용하는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로 수정·보완하였다.

OECD는 IP 소득 특례제도로 인해 실질적 활동이 수반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유해조세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핵심 대안으로 넥서스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넥서스 접근법에서는 IP 소득 중 납세자가 직접 IP자산에 기여한 R&D 지출의 범위까지만 IP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IP자산 취득이나 내부관계자에게 외부발주 시는 IP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적격지출 식별 시 납세기업의 실질적인 활동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즉, 非관련자에 대한 외부발주 시 근본적인 가치창출활동은 납세자가 유지함에 따라 실질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지만, 관련자에게 외부발주 시에는 전 영역(full spectrum)의 R&D 활동을 외부 발주함으로써 당해기업의 실질적 활동이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적격지출이 존재하는 경우 적격지출의 30%를 상향 조정하는 30% 추가감면소득(up-lift)제도를 허용한다.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적격 IP자산은 특허뿐 아니라 특허와 기능적으로 동등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인증·등록절차를 거친 기타 IP자산을 말한다. 즉, 적격 IP자산은 광의의 특허와 저작권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하는 반면, 상표와 같은 마케팅 관련 IP자산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해조세관행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은 법적 절차를 2015년에 개시하도록 하되, 각 국가의 특허박스 개정안 도입 시 혼란을 우려하여 기존 법안에 대한 유예기간 허용한다.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신규 기업 및 기존 수혜 납세자가 보유한 신규 IP자산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IP 과세특례 규정 유예한다. 다만, 내부관계자로부터 취득한 IP자산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유예한다.

2. BEPS Action 5 개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 간의 상이한 조세제도 및 디지털 재화·서비스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²⁸⁾를 의미한다.

세원잠식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막론하고 세수 및 과세주권, 조세 형평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고 사업이 영위되는 장소와 세무상 이익이 신고되는 장소의 지리적 불일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납세순응(compliance)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과세권의 국제원칙이 급변하는 사업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및 국제 기준을 남용하여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²⁹⁾

28) 주OECD 대표부 정책브리핑 자료, 김태호('14. 5. 30.) 1p.

특허박스제도는 시행국 내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R&D 활동을 유치할 때 국가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국적 기업은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해 생성된 소득을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로 이전하여 절세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7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에서 볼프강 샤우블 독일 재무장관은 영국, 네덜란드 및 기타 국가가 제정한 특허박스가 '부당한 세금 경쟁'을 초래했으며 차별적 세금법을 금지하는 EU 규칙과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특허박스제도의 종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BEPS가 논의되게 되었다. BEPS 패키지는 소프트웨어 법률 도구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모든 OECD 및 G20 국가들은 조세회피를 예방하고 유해한 세금 관행을 막기로 합의했다.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대응은 투명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³⁰⁾ 특히 조세특혜체제와 관련된 예규(rulings)에 대한 자발적인 정보 교환은 필수적인데, 세금 예규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에 대한 법적 확실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일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조세부과액이 관련법이나 실무관행에 따르지 않거나 과세당국이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재량권을 행사해 낮은 세율을 초래하는 예규를 중점 검토하였다. 무형자산과 관련해 실질적 활동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전가격접근방법(transfer pricing approach),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 비용혜택연계접근법), 가치창출접근방법(value creation approach) 등 3가지 접근방법이 중점 검토되었다.³¹⁾

OECD는 두 가지 유해한 세금 관행, 즉 소위 '조세피난처' 및 '유해한 특혜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낮은 세율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했다. OECD가 이 두 가지 관행에 대하여 다국적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국가 간에 다르게 발생하면 세금이 낮은 곳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국가 간 유해한 조세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OECD가 발행한 BEPS에 관한 액션플랜(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은 수익과 가치가 창출되는 곳에 이익이 돌아가고 과세가 집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15가지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OECD는 특히 소득 배분이 그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기존의 국내 및 국제 세금 규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BEPS Action 5의 유해한 세금관행에 관한 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 FHTP)

29) 주OECD 대표부 정책브리핑 자료, 김태호('14. 5. 30.) 1p.

30) 주OECD 대표부 정책브리핑 자료, 김태호('14. 5. 30.) 2p.

31) 주OECD 대표부 정책브리핑 자료, 김태호('14. 5. 30.) 5~6p.

은 ▲회원국 특혜체제의 검토를 마무리하고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며 ▲기존 프레임 워크에 대한 수정 및 추가를 추구한다.

특허박스제도는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조세 제도로 볼 수도 있지만, 다음 단계에서 이 제도가 잠재적으로 유해한지도 분석해야 한다. 특허박스제도와 같은 특혜체제는 기업의 실질적인 R&D 활동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BEPS Action 5의 '잠재적으로 유해한 특혜체제'로 간주될 수 있다.

BEPS Action 5는 유해한 특혜 조세제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박스제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OECD는 IP 집약적 산업이 성장과 고용의 핵심 원동력이므로 유해한 세금관행에 관한 포럼(FHTP)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가는 R&D 활동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³²⁾ 즉, OECD 유해조세제도 분야의 원칙과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특혜를 주더라도 지식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과 R&D 활동을 연계시켜 무형자산의 개발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3.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

BEPS Project Action 5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으로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시키는 유해조세제도에 대응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했다.³³⁾

Action 5와 관련하여, OECD는 14년 9월 1단계, 15년 9월 2단계, 15년 12월 3단계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1단계에는 기존에 검토 중인 15개 국가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preferential regimes) 검토 작업과 새로이 추가된 유해조세제도의 검토 작업을 14년 9월까지 마무리하였다. 이때 유해조세제도 관련 예규(Rulings)에 대한 의무적인 정보교환을 포함한 투명성 개선과 실질적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1차 보고서에 기술된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대해 영국과 독일이 제시한 내용을 담아서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으로 2015년 결정되었다.³⁴⁾

넥서스 접근법이란, 조세혜택(tax benefit)과 R&D 비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실질

32) BEPS Action 5, 2014 Deliverable, p.24.

33) 김태호,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주OECD 대표부 정책브리핑 자료(15. 4.).

34) 2014년 9월 OECD는 BEPS Action 5 관련 유해조세관행에의 대응에 관한 중간보고서에서 지식재산 관련 특례제도가 납세자로 하여금 실질적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유해조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2014년 11월에 영국과 독일 정부는 OECD BEPS project의 중간보고서에서 계획된 지식재산 특례제도 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진전시키고자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5년 11월 OECD와 G20은 공동협력을 통해 조세분야의 투명성 및 정보교류를 증진시키고 세원감소 및 이익이전을 초래하는 국제조세체제를 검토하여 BEPS Action 5의 최종안에 합의하였다.

적 활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법이며,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이란 비용혜택연계접근법에 영국과 독일이 제시한 다음의 3가지 수정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넥서스 접근법에 추가된 3가지 수정 사항

- ① (**up-lift**) 제3자 관련 아웃소싱과 인수비용에 대해 적격 비용(qualifying expenditure)의 30%까지 증액 허용, 예를 들어, 회사의 지출 비용이 미화 1백만 달러인 경우 세금에 대해 미화 130만 달러를 설정할 수 있음
- ② (**closing old regimes to new entrants**) 늦어도 2016년 6월 30일까지만 기존의 IP 제도의 혜택을 새로운 시장진입자에게 허용
- ③ (**grand fathering of old regimes**) 기존 IP 제도의 수혜자가 관련 기득권을 향유하는 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만 허용

2단계로 BEPS Action 5를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OECD 준회원국(associates)도 참여할 수 있는 유해조세제도로 확장해서 15년 9월까지 마무리했다. 유해조세제도 관련 예규(Rulings)에 대한 정보교환체계를 의무화하도록 설계하고, 실질적인 활동에 조세혜택이 연결될 수 있도록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2016년 2월 23일 OECD는 BEPS 이행을 위해 BEPS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가가 BEPS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체계를 수용하였다. 2016년 2월 26일~2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BEPS 이행을 위한 포용체계가 승인되었다.³⁵⁾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준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하여 G20 및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지위로 BEPS 기준을 설정(standard setting)하고 BEPS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였다.

3단계로, 유해조세제도를 평가하는 기존의 체계를 개정·검토하는 작업을 15년 12월까지 완료하였다.

넥서스 접근법은 R&D 지출과 IP 파생 소득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혁신활동에 대한 비용만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와 같은 마케팅 관련 지식재산권은 특허박스제도의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상표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특허박스제도(IP Box, Innovation Box 등)는 넥서스 접근법 및 BEPS Action 5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넥서스 접근법에서 조세 특혜를 받는 IP 체제의 적용은 넥서스 비율에 의해 제한된다. 이 비율은 '지식재산권 개발 적격지출'을 '지식재산권 개발에 소요된 전체지출'로 나누어 결정한다. 또한, 넥서스 접근법은 IP 소득이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 자신이 실제 R&D 활동의 상당 부분을 수행해야 하며, R&D 활동의 아웃소싱은 상당히 제한된다.³⁶⁾

35) G20(http://www.g20.org/English/image/201603/t20160301_2173.html).

넥서스 접근법은 본인이 무형자산을 자체 개발하지 않은 경우 IP자산을 취득한 후 이를 발전 시키기 위해 지출한 경우만 적격지출로 인정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취득 비용은 지출 계산에 고려되지 않으며, 취득한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일반적으로 세제혜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에 의해 발생한 수입이 적격지출이 맞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R&D 활동을 아웃소싱한 경우는, 관련 당사자가 수행한 부분은 전체 지출로 인정될 뿐 적격 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제3자가 수행한 아웃소싱 R&D 활동은 적격지출로 인정된다. 그리고 취득, 금융 및 건축 비용은 적격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넥서스 접근법은 IP 파생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과 납세자가 수행하는 R&D 활동 사이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연계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특허박스제도가 가질 수 있는 유해한 측면을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된다.

4. 넥서스 접근법의 계산

OECD는 BEPS Action 5의 최종안에서 유해조세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을 제시했다.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은 기업이 수행한 R&D 활동에 근거하여 지식재산 세제혜택을 적용한다. 지식재산 소득 중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지식재산에 기여한 R&D 지출까지다. 그리고 지식재산 자산 취득이나 내부관계자에게 외주위탁 시에는 지식재산 세제혜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허박스제도 적용 과세특례 소득 계산식

특허박스제도 적용 과세특례 적용 소득

$$= \text{nexus ratio} \times \text{IP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

$$= \frac{\text{IP자산의 개발로 인해 발생된 적격 지출의 합계}}{\text{IP자산의 개발로 인해 발생된 전반적 지출의 합계}} \times \text{IP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

$$= \frac{D + O}{D + O + A + R} \times \text{IP 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

D: 해당 국가에 직접 R&D 지출	O: 非내부관계자에게 외부발주된 R&D에 대한 지출
A: IP자산 취득에 대한 지출	R: 내부관계자에게 외부 발주된 R&D에 대한 지출

출처: 류태규, 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6.

36) BEPS Action 5, 2014 Deliverable, p.29.

넥서스 비율에 포함될 지식재산 자산 관련 적격지출은 실제 R&D 목적을 위해 발생한 지출로, 과학적 관계와 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적 문제점의 검토, 지식·신규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행된 활동을 의미한다. 지식재산 자산 관련 적격지출은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원가만 포함된다. 예를 들면, ①급여 및 임금, ②직접원가, ③R&D 시설과 직접 관련된 제조간접원가, ④공급원가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넥서스 접근법은 소득과 지출 간의 결합에 근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P자산별 소득과 지출의 추적이 필요하며, 특히 납세자에 의한 탈세목적의 소득·지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추적이 중요하다. 납세자는 조세행정담당자에게 지출과 수익 간의 관계를 추적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IP자산별로 소득·지출의 추적이 비현실적이고 상당한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IP자산이 포함된 제품별 또는 제품군별이나 의약품은 질병별로 소득·지출을 추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회주의적으로 IP 관련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적격소득·지출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과세관청은 증명서 제출에 관해 개별적인 고유 지침을 가질 수 있지만, 다음의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IP 소득 특례의 적용을 위한 의무 증명 사항

- ① IP자산 기준이 아닌 제품이나 제품군 기준으로 소득·지출을 추적한 경우 IP 비즈니스 복잡성의 증명
- ② 적격 IP자산의 보유 증명
- ③ 동일한 IP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세액감면 등의 세제혜택 존재 시 관련 서류 제출
- ④ 일반적이거나 모험적 성격의 R&D 지출 발생 시 IP자산과의 연계성 또는 해당 지출의 IP자산별 배분방식 증명
- ⑤ 적격지출 및 전반적 지출을 소득과 동일한 IP자산에 추적했음을 증명
- ⑥ 관련자로부터 IP취득 시 공정가격을 입증하는 이전한 관련자의 전반적 지출 내역 증빙

제3절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1. 유럽의 특허박스제도 개요

특허박스제도는 1973년 아일랜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특허박스’라는 용어는 세금신고서 양식의 체크박스에서 유래되었다. 2007년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가 동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2020년 현재 아일랜드, 프랑스, 터키, 헝가리, 이스라엘,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중국, 스위스,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키프로스, 몰타,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19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도입을 포기하였다. 동 제도가 적용되는 적격 IP자산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희귀의약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국가별로 다양하다.

또한 특허박스제도가 적용되는 IP자산 관련 적격소득 유형은 ▲IP자산이 내장된 제품의 매출 ▲IP자산 자체의 이전(처분) ▲IP자산 자체의 대여(실시허여) ▲연구기업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사용한 비용에 대한 내재 사용료 ▲외부 지식재산 매수 시 추가 연구활동을 통해 개선한 경우의 비용 등으로 구분되며, 적격소득 유형도 국가별로 다양하다.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적용세율을 살펴보면, 최초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했던 아일랜드와 최근 특허박스를 이노베이션 박스로 개선한 네덜란드의 경우 각각 6.25%와 5%로 파격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경우 일반 법인세율 22%의 절반에 못 미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특허박스제도 초기에 자국 내 R&D 결과로서 특허만을 법인세 감면혜택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2007년 유럽위원회가 자국특허에 대한 배타적 법인세 감면을 ‘유럽위원회조약 226조(Freedom of Establishment and Free Movement of Services)’ 위반으로 판결하여, 이후 모든 유럽 국가들이 자국 내 활동이라는 제약조건을 제거하였다. 유럽 국가들은 ‘유럽위원회조약 226조’에 따라 자국특허만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 수 없으므로 자국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고, 대신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이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 표 7 | 각국의 특허박스제도 도입 현황 요약

국가	도입	적격 IP자산	대상소득	PB세율 / 법인세율
아일랜드	1973~2010, 2015	(EU)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적격 컴퓨터 프로그램 및 R&D 결과 특허권,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활동 수행 필요	IP에 관한 특정 판매수익	6.25% / 12.5%~33%
프랑스	2001, 2019	(EU)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확장된 특허인증서(특허추가보호인증서), 유틸리티인증서, 식물품종인증서, 산업조립공정(취득 IP 포함), 특허 가능한 발명품(중소기업 한정), 인수한 IP는 2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취득후 2년 이상된 IP의 양도 순소득, 라이선스 수수료	법인세의 10%감면 / 25.83%~32.02%
터키	2001	터키 내 R&D, 혁신에 의한 발명(취득 IP 포함), 허가권, 특허권, 개작권, 개발, 수정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 20%
헝가리	2003	특허권, 실용신안권, 식물다양성 보호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배타적 권리, 희귀의약품 등	소득 및 이전소득의 50%	4.5~9% / 9~18%
이스라엘	2004	해당 없음. 외국인 거주자에게 산업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고 과학자 사무실'로 승인받아 세금감면을 받음	외국인을 위한 산업 R&D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6% / 7.5% / 12%
벨기에	2007	(전 세계) 특허권, 부수적 특허인증서, 사육권, 희귀의약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활동 수행 필요	총 특허소득, 순 혁신소득	5.1%~6.8% / 33.99%
네덜란드	2007	(전 세계) 소프트웨어, 특허권, 품종특허권, 의약품 유통 라이선스, 승인된 연구용역으로 취득한 IP(추가 자체개발 IP 포함), 인수한 IP는 추가 지식재산권 개발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5% / 25%
스페인	2008	(EU) 특허권, 디자인, 노하우, 비밀공식, 공정, 계획, 모델(취득 IP 포함)	순이익 및 비관계사 이전소득	10% / 30%
룩셈부르크	2008, 2018	(전 세계)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품 또는 서비스판매로 인한 로열티, 자본이득 및 내재 IP 소득 및 이전소득 80% 면제 순자산세 면제	5.76% / 22.47%
중국	2008	특허기술(국방특허 포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집적회로설계 특허권, 식물신품종권, 바이오신약 및 과거 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된 기타의 기술성과	보상소득금액 개인소득세액 50% 감면	0%~12.5% / 25%
몰타	2010~2016, 2019	특허권,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브랜드, 상표, 상호, 마케팅 관련 IP자산 제외	총 특허권 수입	0%~6.25% / 12.5%
스위스	2011	(전세계)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취득 IP 포함)	IP 취득원가를 제외한 총특허 소득, 이전소득	8.8% / 1.5% ~24.2%
키프로스	2012	특허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식물 및 유전물질 보호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모델, 고의약품지정 및 특허 보호연장	로열티, 보험 또는 보상 금액, IP 양도소득 80% 감면, IP이용 제품판매 수익(내재이용료)의 80% 감면	2% / 12.5%
영국	2013	(EU) 특허권, 부수적 보호인증서, 데이터 보호권, 화훼 품종보호권, 인수한 IP는 추가 IP 개발활동 수행 필요	순이익 및 이전소득	10% / 19%

국가	도입	적격 IP자산	대상소득	PB세율 / 법인세율
포르투갈	2014	특허발명, 모델 및 산업디자인 등 혁신	적격 IP 총소득(관계사거래 제외)	11.5%~23%
이탈리아	2015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델, 소프트웨어 저작권, 노하우, 비밀공식, 공정 등	순이익의 50% 및 이전소득 전액 (90% 이상 재투자 조건)	13.95% / 27.9%
리투아니아	2018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추가보호인증서로 보호되는 특허가능성 기술	특허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	5% / 15%
슬로바키아	2018	특허권, 실용신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로열티, 내재사용료(IP 이용제품 판매수입)	10.5% / 21%
폴란드	2019	특허권, 발명에 대한 추가 보호 권리,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지형등록의 권리, 의약품 또는 식물보호제물에 대한 특허에 대한 추가 보호 권리, 의약품 또는 수의학 제품 등록 권리, 식물신품종 및 동물품종 등록 권리,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라이선스 수수료, IP 양도소득, 적격 IP 제품·서비스 판매 소득, 법원등 소송에 따른 침해보상	5% / 19%

출처: PWC, 『Tax Notes』, 2012, p.1667.; 문은희, “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입법과제”, Lisa Evers, Helen Miller, and Christoph Spengel, Intellectual Property Box Regimes: Effective Tax Rates and Tax Policy Considerations, ZEW Discussion Paper, No. 13-070; NARS 현안분석 vol.17, 2018.; 박진석, “유럽지재권 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제도”, 과학기술정책, 2014.;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April 2017.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주: 1. 스위스는 최근 Nidwalden의 스위스 주뿐만 아니라 스위스 전체를 포괄하는 주 단위로 2020년에 발효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에서 개발된 특허 및 유사한 권리로 인한 소득에 대해 최대 90%의 과세 기준 감면을 제공하고, 칸톤은 더 낮은 감축을 선택할 수 있음
2. 터키는 ‘**터키기술개발구역**’에서 수행된 R&D 활동으로 인한 적격 지식재산소득에 대해 완전한 세액공제(실효세율 0%)를 허용
3. 몰타는 2016년에 특허박스제도를 폐지. 그러나 몰타는 2019년 법인세에 관한 EU 행동 강령과 OECD의 수정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새로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
4. 리히텐슈타인은 OECD의 수정 넥서스 접근법을 준수하지 않고 특허박스제도를 폐지

▼ 표 8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벨기에	프랑스
실효세율	IID*: 적격대상소득×5.1% PID: 적격대상소득×6.8% (법인세율 33.99%) ※우대세율/부분면세(소득세법 205조)	적격대상소득×(15% ~ 15.5%) (법인세율 33.33%~36.1%) ※우대세율/부분면세(조세법 제39조)
적격 IP	IID: 특허권, 추가 보호 인증서, 식물품종보호권, 희귀의약품, 데이터 및 마케팅 독점권(EU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서 부여),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IP PID: 특허 및 추가 보호 인증서	특허권, 확장된 특허 인증서, 특허 가능한 발명 및 산업 제조 공정
적격수입	IID: 순 혁신 수입 PID: 총 특허 수입	양도소득 *내재사용료 불허
취득 IP	취득한 IP에 대하여 추가적인 R&D로 얻은 자산	가능
혜택한도	IID: 혜택 제한 없음 PID: 세전의 100%로 제한되는 공제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포함	불포함

항목	벨기에	프랑스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IID: 포함(조건에 따라) PID: 불포함	포함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IID: 해외 수행 R&D 성과 인정, 하지만 실제로는 벨기에 본사의 R&D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감독이 필요. 아웃소싱은 IID 세제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PID: 해외 수행 R&D 성과 인정, 본사 R&D 센터가 일정 부분 활동을 하고, 회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함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인정	인정
제도 시행연도	IID: 2016년 7월, PID: 2007년	2001, 2005, 2010, 2011
기존 IP 적용 여부	IID: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적격 IP.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요청·취득한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구PID 제도를 계속 적용 PID: 2007년 1월 1일 이후 부여된 IP	기존 IP 적용

* 벨기에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특허소득공제제도(PID)가 폐지되고 혁신소득공제제도(IID)로 대체됨.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요청하거나 취득한 특허(보조보호인증서 포함)의 경우 납세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구PID 제도를 계속 적용 가능

** 2012년 프랑스 재정법(2011년 제정)은 특허 양도 수수료 공제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

출처: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 2017.

▼ 표 9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헝가리	아일랜드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4.5% ~ 9%) (추가로 실효세율을 더 낮출 수 있음)	적격대상소득×6.25% (법인세율: 사업소득 12.5%, 수동소득(passive income) 25.0%) ※특별상각(조세통합법 294A조)
적격 IP	특허권, 실용신안권, 식물품종권, 추가보호증명서(SPC), 마이크로 전자 반도체 특허 지형, 저작권 소프트웨어, 독점권, 화귀 의료 제품 등록	적격 R&D 활동 결과로부터 얻은 적격 컴퓨터 프로그램 및 특허권
적격수입	적격 자산에서 얻은 이익(넥서스 접근법 적용 가능)	적격 IP와 관련된 특정 거래의 이익.
취득 IP	넥서스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적격 IP 획득 후 추가 R&D 활동한 범위
혜택한도	세액공제는 적격 이익의 50%, 최대 세전 이익의 50%	해당 무형자산에서 얻어진 사업소득의 80%가 공제한도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포함	포함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포함. 특정 IP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불포함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자체 R&D 활동 조건하에서 가능	제한적임, R&D 활동은 EU회원국의 아일랜드 회사 직원이 수행해야 하며 비용은 해당 회원국에서 세금 공제 자격이 없어야함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인정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03년 시행, 2016년 대대적으로 개편	2015년 12월 제정, 2016년 1월 1일 이후 적용
기존 IP 적용 여부	2016년 개편에 따른 제한하에 가능	아일랜드 회사가 적격 IP창출을 위해 적격 R&D 지출을 하고 IP를 보유한 경우

▼ 표 10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실효세율	2015년: 적격대상소득×21.98% 2016년: 적격대상소득×18.84% 2017년 이후: 적격대상소득×13.95% (실효세율에는 법인세(IRES)와 지방세(IRAP)가 모두 포함됨. IRES와 IRAP의 일반세율은 각각 27.5%와 3.9%로 총 31.4%임. 2017년 1월 1일부터 IRES비율은 24%임)	적격대상소득×5.76% 즉, 적격대상소득의 80% 상당액 면세 (법인세율: 25%, 20만 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과세표준 20%를 적용, 지방사업세와 고용기금 회사부담액을 더해 법인세율 28.8% 적용, 28.8%×20%=5.76%) ※우대세율/부분면세(소득세법 50bis조)
적격 IP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저작권, 모델, 디자인, 노하우, 공식, 프로세스 및 라이선스가 있는 IP) 등 잠재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모든 IP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도메인 이름, 모델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적격수입	적격지출(IP의 유지, 증가 또는 개발비용)과 IP 생산에 발생한 총지출 사이의 비율로 계산	사용료, 양도소득
취득 IP	구매 및 라이선스 IP 비용의 30%로 제한됨	직접 관련 없는 회사로부터 취득된 IP는 적용
혜택한도	적격 IP 순이익의 50%로 제한 (2015년 30%, 2016년 40%로 제한)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IP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예: 로열티 없음), 적격 소득 금액은 APA를 기준으로 결정	포함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적격 IP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적 자본 이득은 해당 수익의 90% 이상이 판매 후 향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성격을 가진 다른 IP의 개발에 재투자되는 경우 과세가 완전히 면제	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인정	인정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불인정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5년	2008년, 2018년
기존 IP 적용 여부	기존 IP 적용	2007년 12월 31일 이후 개발 또는 취득한 IP

* 상표권은 실제로 Patent Box제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OECD 권장 사항으로 인해 곧 제외될 수 있음

▼ 표 11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몰타	네덜란드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0%~6.25%)	적격대상소득×5.0% (법인세율: 25%, 20만 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우대세율/부분면세(법인소득세법 12B조)
적격 IP	특허권, 실용신안, 소프트웨어 저작권 *브랜드, 상표, 상호, 마케팅 관련 IP자산 제외	대규모 납세자: 승인된 R&D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특허 IP(patented IP) 소규모 납세자: 승인된 R&D 프로젝트에 따라 개발된 비특허 IP(non-patented IP)
적격수입	총 특허권 수입	적격 IP의 순이익
취득 IP	인정	승인된 R&D 프로젝트 중 추가로 자체 개발된 경우

항목	몰타	네덜란드
혜택한도	혜택 제한 없음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불포함	포함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불인정	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인정	인정. 승인된 R&D 프로젝트가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 (30% 증가 포함)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불인정	제한적으로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0년, 2019년 *2016년 폐지, 2019년 재시행	2007년 개정: 특허박스제도의 도입 2008년 개정: 대상자산의 확대(연구개발증명을 취득한 자산의 추가) 2010년 개정: 적용한도(4만 유로) 폐지, 이노베이션박스 제도로 개편 2017년 개정: 넥서스 접근법 및 BEPS 5 적용
기존 IP 적용 여부	기존 IP 적용	2007년부터 개발 또는 재개발 된 특허 IP; 2008년부터 승인된 R&D 프로젝트의 IP, 2016년 6월 30일의 IP는 Nexus Approach 및 기타 BEPS 5 기준에 따름

▼ 표 12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포르투갈	스페인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11.5%(50% of CIT)	적격대상소득×최소법인세 10%~15% (법인세율 30%) ※우대세율/부분면세(법인세법 23조)
적격 IP	특허 받은 발명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모델 및 산업 디자인과 같은 기타 혁신	특허권, 비밀 공식, 프로세스, 계획, 모델, 디자인 및 노하우. 소프트웨어는 제외
적격수입	적격 IP의 총수입. 관련 당사자에 대한 판매 또는 라이선스는 제외	적격 IP의 순이익
취득 IP	불인정	제3자에 의해 생성된 부분만큼 법인세 감면이 비례적으로 감소
혜택한도	혜택 제한 없음	혜택 제한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불포함	불포함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인정	인정. 단, 인수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함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자체 개발한 경우	자체 개발한 경우. 자체 개발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경우, 라이선스 부담 비용, 총비용, 취득비용 등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가 감소됨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제한적으로 인정	제한적으로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4년	2008년 개정: 제도 도입 2016년 7월 개정
기존 IP 적용 여부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발된 IP에만 해당	2016년 이전에 개발 된 IP자산은 이전 스페인 특허박스제도를 적용

▼ 표 13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스위스(니드발덴 주에만 적용)	터키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8.8% 적격대상소득의 80% 상당액 면세(주세 및 지방세), 연방세 포함 (법인세율 33.99%) ※우대세율/부분면세(니드발덴 주 세법 85조)	적격대상소득×10%
적격 IP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의장 또는 모형, 도면, 비밀방식 및 비밀공정, 산업·상업·학술상의 경험 정보 (OECD 모델 조세 조약의 Art 12에 따름)	1. 터키에서 실현된 연구, 개발, 혁신 및 소프트웨어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발명으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인증 2. 기술개발 구역에서, R&D 활동의 결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 또는 제품에서 파생된 라이선스, 특허권, 적용, 개발, 개정, 배포 및 플러그인
적격수입	총 특허 수입(사용료, 양도소득)	적격 IP 순이익
취득 IP	인정	TDZ에서는 불인정 법 No.6518에서는 인정
혜택한도	상한선은 없으나 주 세금에만 적용	조건에 따라 다름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불포함	포함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인정	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니드발덴 주에 있는 회사가 감독한다는 조건으로 인정	불인정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효과적으로 납부된 세금에 한하여 인정	1. 조건에 따라 다름 2. TDZ 제도에서는 불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1년 개정: 제도 도입(니드발덴 주)	1. 2015년 개정 2. 2001년(TDZ)
기존 IP 적용 여부	기존 IP 적용	1. 터키에서 R&D, 혁신 및 소프트웨어 활동을 통해 발생된 IP 수입, 터키 특허연구소에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받은 IP 수입에 대해 인정 2. 테크노파크에서 수행된 R&D 활동에서만 발생하는 IP 수입에 대해 불인정

▼ 표 14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

항목	영국	이스라엘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최소 10% (법인세율: 19%) ※우대세율/부분면세(법인세법 8A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글로벌 통합 매출이 ILS100억(US\$25억) 이상인 그룹에 속한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 기업 • 12%: 글로벌 통합 수익이 ILS100억 미만인 기타 적격 기업 • 7.5%: ILS100억 미만인 기타 적격 기업 중 이스라엘 회사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특정 북부 또는 남부 지역에 위치한 경우 • 4%의 감소율 적용: 해외 주주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규모 또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적격기업에 감소율 적용

항목	영국	이스라엘
적격 IP	특허권, 추가 보호 인증서, 식물품종보호권, 특정 의약품 또는 식물 보호 제품	해당 없음. 외국인 거주자에게 산업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최고 과학자 사무실'로 승인받아 세금감면을 받음 Patent Box제도는 외국 거주자에게 산업 R&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 즉, IP는 외국 기업이 소유함
적격수입	사용료, 양도소득, 판매소득, 자사 사업 사용에 따른 소득, 특허권 침해에 관계된 배상금. 넥서스 접근법을 채택하여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이 납세자의 R&D 비용과 연결됨	외국인을 위한 산업 R&D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
취득 IP	인수 후 추가 개발한 부분 단, 인수회사가 인수전에 R&D를 수행했다면, 이를 넥서스 비율에 포함할 수 있음	인수 후 추가 개발한 부분
혜택한도	적용 한도 없음 (경과조치: 2014년 60% → 2017년 100%)	적용 한도 없음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포함	포함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인정	불인정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납세자가 R&D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	제한적으로 인정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인정	불인정
제도 시행연도	2012년 개정: 제도 도입 2013년 4월 1일 제도 시행	2004년: 제도 도입 2017년 1월 1일: 넥서스 접근법 수용, 혁신박스 제도로 전환
기존 IP 적용 여부	인정	불인정

▼ 표 15 |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비교(일부 적용)

항목	중국	한국
실효세율	적격대상소득 × 12.5% [적격대상소득 전액 면세(500만 위안 이하), 적격대상소득의 50% 면세(500만 위안 초과)] (표준법인세율 25%) ※ 우대세율/부분면세(기업소득세법 제27조, 시행조례 제90조)	5~11%(IP 판매액) 7.5~16.5%(로열티)
적격 IP	기술이전 계약에 기초한 특허기술,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 레이아웃에 관한 권리, 식물 등의 신물질 바이오약품, 기타 재무부 및 국가세무 총국의 승인을 얻은 자산	국내 자체 개발 특허권, 실용신안권, 과학기술 비밀 및 기술(산업재산권, 해외 건설 및 엔지니어링 활동 제외)
적격수입	사용료(5년 이상), 양도소득	중소기업(SME) 및 중견기업이 소유한 적격 IP를 국내 기업 또는 거주자(특수 당사자 제외)에게 양도하여 획득 중소기업 기술을 제외한 적격 IP의 로열티 수입(특수 관계자 제외)

항목	중국	한국
취득 IP	불인정	불인정
혜택한도	혜택 한도 없음	중견기업 10~17%, 중소기업 7%
임베디드 로열티 포함	불포함	자체 개발한 IP로 제한
적격 IP 판매이익 포함	포함	포함
해외에서 수행한 R&D 성과	불인정	불인정
적격 로열티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공제	불인정	인정
제도 시행연도	2008년 개정	2014년
기존 IP 적용 여부	기존 IP 적용	기존 IP 적용

2. 아일랜드 특허박스제도

1973년 아일랜드가 특허박스제도를 제일 먼저 도입하여 유럽의 특허박스제도의 원형으로서 선도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12.5%인 법인세율을 특허박스제도 대상에는 6.25%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식재산권 개발 및 관리에 효과적인 투자국가로 인식되었고, 결과적으로 외자유치를 높이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이 제도의 초기 도입 시에는 ‘아일랜드 내’에서 수행된 R&D의 특허만을 인정하였으나, 2007년 유럽위원회조약(European Commission Treaty)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의해 이후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활동’이라는 제한조건을 두지 못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특허박스제도는 유럽위원회 조약으로 인해 자국특허만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 기업 특허의 사업화 촉진 효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럽국가들은 특허박스제도의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와 R&D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주된 기능 중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치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2011년~2014년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구제금융 이후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법을 개정하였고, 특허박스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 다시 특허박스제도를 부활시켜 운영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식재산권 지원정책과 낮은 법인세율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지식재산권 개발이나 관리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었고, 이를 통한 외자유치가 아일랜드를 ‘켈틱의 호랑이(Celtic Tiger)’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일랜드의 특허박스제도를 KDB(Knowledge Development Box, KDB)라고 부르고, 적격 수입에 법인세율 12.5%를 적용하고 나서 세액의 50%를 감면하게 되므로 KDB의 실효세율은 6.25%가 된다.³⁷⁾ 1980년대 후반부터 아일랜드 정부의 과감한 시장개방과 규제개혁 조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서 2001~2003년의 1

인당 평균 FDI 유입액이 서유럽 평균의 6배인 6,700달러에 이르는 등 해외자본 유치에 힘입어 2000년대 초반 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으로 성장하였다.³⁸⁾

3. 네덜란드 특허박스제도³⁹⁾

네덜란드는 적극적인 R&D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 R&D 결과물의 사업화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octrooibox(Patent Box)'를 도입하였다. 처음 도입된 특허박스제도에서는 특허권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일반법인세율 25% 보다 현격히 낮은 10%의 법인세를 적용하였으나 기업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0년부터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도 대상으로 추가하고, 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혁신박스제도(Innovation Box Regime)로 확대 개정하였다. 혁신박스제도에서는 기존 특허박스제도의 과세감면 한도를 폐지하였다.

혁신박스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통해 직접적으로 창출된 수익뿐만 아니라 R&D 활동에 기초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가격에 포함된 이익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였다.

혁신박스제도로 개정되면서, 특허가 출원에서 등록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허등록이 되기 전인 특허출원을 신청한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특허박스제도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혁신박스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R&D 비용을 부담하거나 직접 수행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이나 R&D 활동이 창출된 소득에 적어도 30% 이상 기여해야 하고, 제조방법 및 노하우와 같은 다른 요소들은 창출된 소득의 70%를 기여해야 한다. 매수한 지식재산은 추가적인 R&D 부분에 한하여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적격 수입 범위는 사용료, 양도소득, 내재 사용료를 포함한다.⁴⁰⁾ 혁신박스세제 계산은 적격 수입에 5% 특례세율을 곱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BEPS Project에 따라 넥서스 접근법을 따른다.⁴¹⁾

네덜란드는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을 준수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박스를 개정했다. 새로운 이노

37) 아일랜드에서 영업이익(active income)은 법인세율이 12.5%이고, 비영업이익(passive investment income)의 법인세율은 25%임: Petrina Smyth·Jonathan Sheehan and Brendan O'Brien, "Ireland's Intellectual Property Tax Regime", 2016.

38) 한국은행 경기본부, "특허박스제도의 현황 및 국내 도입방향", 2014. 4.

39) 류태규, 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6.의 내용을 정리함.

40)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April 2017)", PWC.com, 2017, p.13.

41) Patrick Schrievers, Mats Emonts, "Amendments and Developments Involving Netherlands Tax Incentives Promoting R&D Activities", EUROPEAN TAXATION(August 2016), p.367.

베이션 박스는 적격 IP 소득에 대해 7%의 실효세율을 적용한다. Action 5의 권고를 따라 본인이 직접 관여한 R&D 지출로 창출한 IP자산과 제3자에게 아웃소싱한 R&D 지출로 창출한 IP자산이 적격지출로 인정된다. 네덜란드는 적격 비용의 30%를 추가감면하는 up-lift을 인정한다.

네덜란드는 기업혁신을 원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WBSO(Wet Bevordering Speuren Ontwikkelingswerk)라는 연구개발촉진법을 강화함으로써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기틀을 잡았다. WBSO는 R&D를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혁신 관련 인건비에 대해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해주는 인센티브제도로써,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혁신박스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적격자산은 2007년 1월 1일 이후 내부적으로 개발·창출되고 특허로 등록된 무형자산뿐만 아니라, 특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WBSO 규정하에 발행된 R&D 인증을 받은 무형자산인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⁴²⁾

적격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라이선스 수익이나 상품판매 수익과 관련된 소득은 혁신박스제도에 인정되지만 상표권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된다.

2015년까지는 해외에서 타인에 의해 개발된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네덜란드 납세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IP자산과 R&D 작업을 관리할 능력을 보유 시 세액감면혜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질활동 없이 혁신박스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네덜란드 내에서의 실질적 혁신활동 요건을 추가하였다.

넥서스 접근법의 적용과 함께 기술혁신 개발 요건 및 대기업에 대한 특허권 보유 요건이 강화되었다. WBSO가 인증한 R&D프로젝트에 한정하여 기술혁신의 개발 요건을 인정한다. 대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이 특허 등의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되거나 소프트웨어로서 적격하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부 미특허 공정 및 상품에 대해서는 혁신박스제도 적용이 제외된다.

4. 영국 특허박스제도

영국은 IT기술 등 첨단기술이 상대적으로 뒤쳐진 상황에서 첨단기술기업들을 유치하여 자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은 2009년 특허박스제도 입법을 제안하고, 2010년 말 법인세 개혁에 대한 논의를 거쳐, 2011년 말에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2013년 4월에 특허박스제도를 발효시켰다.⁴³⁾ 영국 특허박스제도의 세율은 특허로

42) WBSO 인증은 네덜란드 기업청(Rijksdienst voor Ondernemend, RVO)에 의해 실시한다. RVO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혁신,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조금 및 사업파트너 탐색, 노하우, 법규제와 관련하여 지원한다.

43) 영국은 2013년 4월 1일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영국법인세법(Corporation Tax Act 2010)의 Part 8A, Chapters 1-7의 sections 357A - 357GE에 특허박스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2020년 기준 19%의 일반법인세보다 낮은 10% 법인세를 부과한다.

2013년에는 적격특허활용 수익의 60%만을 특허박스제도 수혜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제도 시행 후 매년 10%씩 인정비율을 높여 2017년부터는 특허활용 수익의 100% 모두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특허박스제도에 의한 세제혜택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R&D 세액공제와 병행하여 적용가능하고, 두 가지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받을 시 유효세율은 최대 10%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영국에서는 IP의 이전 및 대여로부터 발생된 'IP자체 수익'과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부터 발생된 'IP제품 매출'까지 세액감면대상 적격소득으로 인정한다.

OECD의 BEPS Project의 최종안에 따라 영국도 기존의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법안의 핵심은 특허박스제도의 대상소득을 실질활동과 연계하는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이다. 이는 특허박스제도의 적용 대상인 IP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해당 IP의 개발 시 발생된 R&D지출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새로운 제도는 2016년 7월 1일 이후에 창출된 IP를 보유한 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특허권의 경우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출원되었지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된 법안의 적용을 제외하고 구제도를 따를 수 있다.

넥서스 접근법의 원칙을 적용하여 영국은 특허박스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신청자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박스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특허박스제도를 수정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넥서스 비율을 사용하여 세금우대 처리 대상 IP의 수입을 결정하기 때문에 넥서스 접근법을 준수하고 있다. 영국의 IP 박스제도 역시 30%의 추가감면소득(up-lift)을 활용한다. 적격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10%의 세금이 부과되며, 영국은 자발적으로 세금관련 예규를 다른 국가들과 교환하고 있다.

영국 특허박스제도도 BEPS Project에 따라 개정되어 무형자산이 실제로 납세자 본인이 수행하는 혁신 활동과 연결된 경우에만 우대 세제가 적용된다. 새로운 특허박스제도하에서 납세자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으려면 IP와 관련하여 '개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발 조건은 ▲특허 발명의 생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특허 발명을 위해 상당한 양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특허 발명을 포함하는 모든 항목 또는 프로세스를 통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⁴⁴⁾ 반면, 특허 발명이 사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거나 R&D 활동을 그룹 내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에는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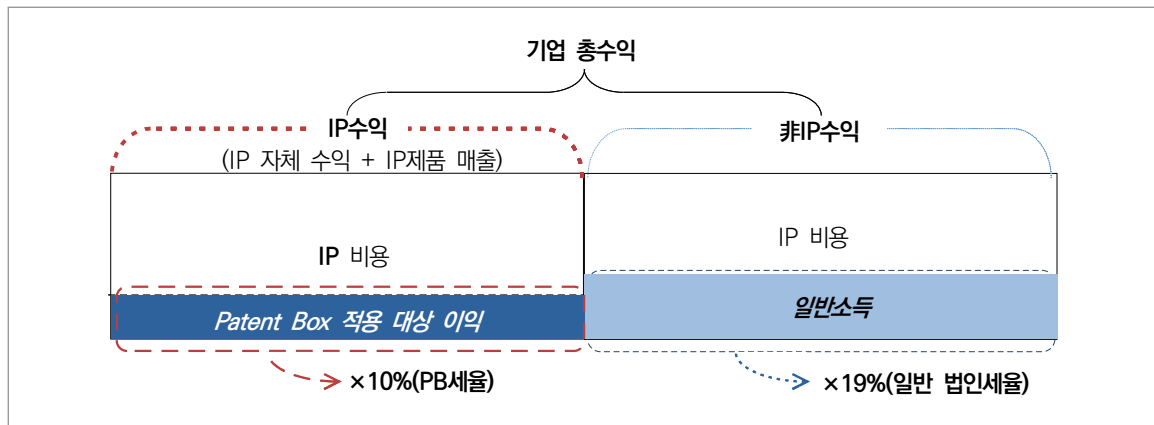
영국의 특허박스제도는 특허권 및 특허 유사 권리를 보유·활용하는 영국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적격 IP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 법정법인세율인 19%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44) British Corporate Tax Act 2010, Section 357BD, as amended by the 2016 Finance Act.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영국에서 2015년까지 적용된 일반적인 특허박스제도의 적용방법은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①총수익 대비 IP자산 관련 수익의 비율을 적용하는 비율방식에 따른 특허박스 대상소득=사업소득×(적격 IP수익/총수익)이 있었고, ②IP자산 관련 수익·비용과 IP자산 非관련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추적하는 Streaming방식을 병행하면서, 전자인 비율방식을 표준방식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BEPS Action5에 따라 2016년 7월 이후 신규진입자 부터는 Streaming방식만을 적용하도록 제한된다. 최근 의무화된 Streaming방식은 IP자산 관련 수익·비용과 IP자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비용을 구분하여 추적함으로써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한다.

▼ 그림 2 | Streaming방식에 따른 특허박스제도 적용



출처: 류태규, 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6.

기업의 수익 중 적격 IP자산과 관련된 수익(IP수익)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적격소득을 산출한 후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실질활동과 관련된 소득의 비율(Nexus Ratio, 넥서스 비율)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면 관련 IP 소득(Relevant IP Profit)이 산출된다. 단, Streaming방식의 수익-비용 추적은 IP자산(혹은 제품, 제품군)의 단위로 수행하여, IP자산별(혹은 제품별, 제품군별) 소득을 산출 후 넥서스 비율을 곱하면 IP자산별(혹은 제품별, 제품군별) 넥서스 소득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면 특허박스제도를 적용받는 관련IP 소득이 산출된다.⁴⁵⁾

마지막으로 이 관련 IP 소득에 특허박스 세율인 10%를 적용하는 반면, 기업의 매출 중 적격 IP자산과 관련 없는 매출(非IP수익)의 경우 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일반소득을 산출 후 일반 법인세율인 19%를 적용한다.

45) 류태규, 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6.

5. 프랑스 특허박스제도

프랑스는 2001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2005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 개편을 시행하였다. 특허 및 특허에 준하는 지식재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일반법인세율인 33.33%보다 절반 이상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였다.

프랑스의 세제혜택 적용 대상은 프랑스 기업의 단독 지식재산권 소유뿐 아니라 라이선싱이나 서브라이선싱을 통해 획득한 지식재산권도 포함된다. 적격 지식재산 범위는 특허, 특허에 준하는 권리 등(extended patent certificates),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patentable inventions), 산업제조허가(industrial fabrication process) 등이 포함되고, 적격 수입에서 내재 사용료는 배제된다. 프랑스의 경우,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기 전인 2001~2004년 동안 매년 평균 159건의 특허 양도가 있었지만, 특허박스제도 시행 이후인 2005~2013년 동안 평균 특허 양도 건수가 544건으로 증가하였다.

프랑스는 특허박스제도 시행을 OECD의 BEPS 보고서 이전에 시행하였고 OECD의 Action 5의 넥서스 접근법과 일치하지 않는 특허박스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프랑스의 특허박스제도 시스템을 개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자국의 특허박스제도 상의 15.5%의 세율이 아일랜드의 법정 세율 12.5%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동일한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6. 벨기에 특허박스제도

벨기에는 2007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특허소득공제제도(Patent Income Deduction Regime, PID)를 실시하였다. 적격 지식재산 범위는 특허와 SPC(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가 있으면 총수익의 6.8% 특례세율을 적용하였다. 적격 지식재산 총수익에서 80%를 감면하고 나머지 20%에 대하여 법인세율 33.99%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6.8%가 된다.

BEPS 보고서 이후 벨기에는 2016년 7월 1일에 특허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하고,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과 일치하도록 5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졌다. 따라서 특허가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되거나 출원된 기존 제도하의 수혜대상의 적격특허소득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유예(Grandfathering)한다.

BEPS Action 5에 따라서 벨기에 정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특허소득공제제도(PID)를 폐지하고 혁신소득공제제도(Innovation Income Deduction Regime, IID)를 도입하였다. PID에서 IID로 바뀌면서 적격 IP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허 및 포괄적 특허인증서뿐 아니라, 납세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육종권, 희귀의약품, 특정 데이터, 의약·식품규제분야의 유럽지침이

나 기타 국제법에 기초한 시장독점권도 포함한다. 적격소득의 유형도 로열티와 라이선스 수수료 뿐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가격에 포함된 IP권리 소득, 양도소득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다. 특허소득공제의 비율도 기존의 80%에서 85%로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순적격소득에 대해 5.1%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즉, 적격 지식재산 총수익의 85%를 감면하고 나머지 15%에 대하여 법인세율 33.99%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5.1%로 낮아지게 된다. 영국, 네덜란드와 같이 벨기에도 매수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당시 수준에서 추가적인 R&D에 따라 개량된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도가 적용된다.⁴⁶⁾

특히 OECD의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 규정에 따라 벨기에의 IP 과세특례인 혁신소득 공제 (Innovation Income Deduction)는 납세자에 의해 수행된 R&D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제한한다.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은 IP 과세특례에 대한 적격소득과 그 소득에 기여하는 지출 간의 직접적 연계성을 요구하며, IP 소득의 순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과세특례 적용 소득은 IP자산의 개발로 인해 발생된 전반적 지출의 합계 중 IP자산의 개발로 인해 발생된 적격지출의 합계의 비율(nexus ratio)을 산출한 후, IP자산 관련 전반적 소득을 곱하여 IP자산 관련 적격소득만을 산출한다. 해당 국가에서의 직접적인 R&D 지출(D) 이외에 非내부관계자에게 외부 발주된 R&D에 대한 지출(O) 및 IP자산 취득에 대한 지출(A), 내부관계자에게 외부 발주된 R&D에 대한 지출(R)도 존재하는 경우, 적격지출은 해당 국가에서의 직접 R&D 지출(D)과 非내부관계자에게 외부 발주된 R&D 지출(O)만 포함한다. 과세특례 적용 소득에 적용될 넥서스 비율은 모든 지출의 합계 중 적격지출의 합계의 비율로 산출된다.

▼ 표 16 | 벨기에의 특허소득공제(PID)와 혁신소득공제(IID)의 비교

	특허소득공제(PID)	혁신소득공제(IID)
기간 내 신청	2016년 7월 1일 폐지 (유예기간: 2021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발효
적격 납세자	벨기에 거주 기업, 해외법인의 벨기에 고정사업장	벨기에 거주 기업, 해외법인의 벨기에 고정사업장
적격 무형자산	특허 및 보충적인증서 단,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 제외	특허 및 보충적인증서 육종권 희귀의약품 데이터 및 시장 독점권 저작권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 IP 단, 마케팅 관련 무형자산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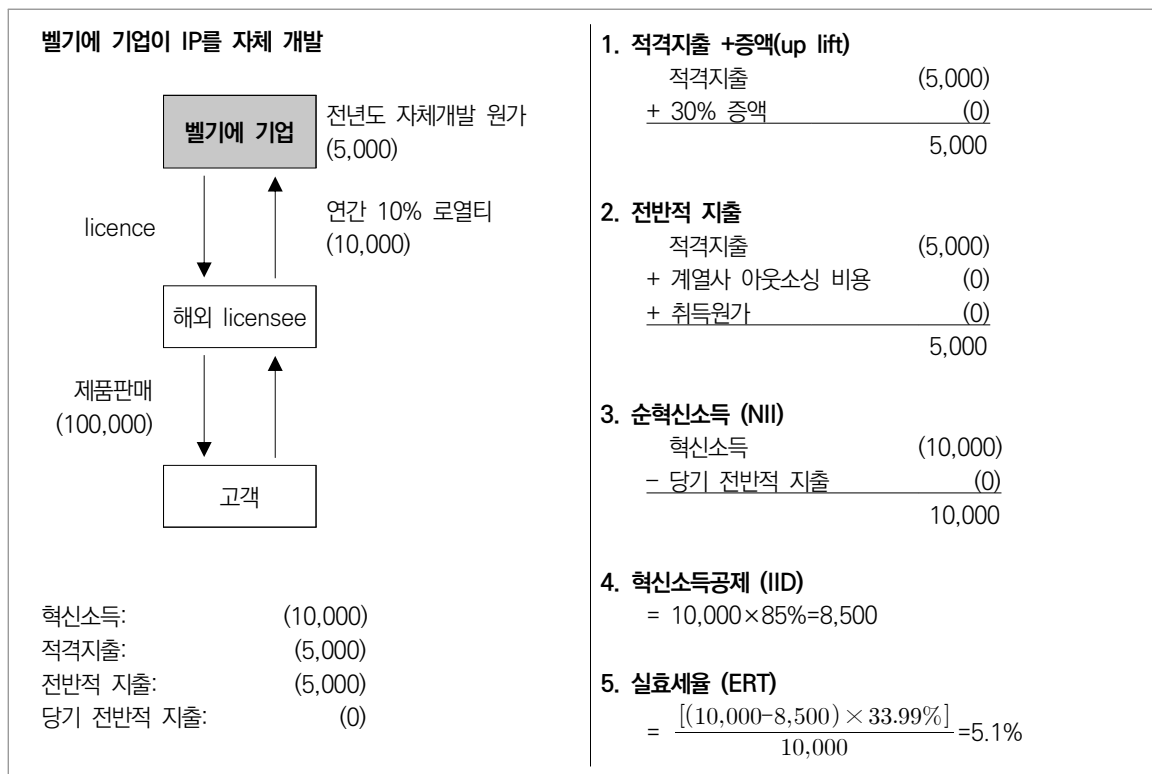
46) PWC,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April 2017)", PWC.com, 2017, p.8; Ernst & Young, "Worldwide R&D Incentives Reference Guide", EYG Limited, 2017, p.25.

	특허소득공제(PID)	혁신소득공제(IID)
적격소득	라이선스 소득 IP 적용 판매 소득 => 총 IP 소득	라이선스 소득 IP 적용 판매 소득 공정혁신 소득 법원판결에 근거한 보상금 IP 양도소득(5년 내 재투자 조건) => 순 IP 소득
비율	80%	85%
실효세율	6.8%	5.1%
이월	불가	가능
심사청구 중인 IP	불가	임시 면제

출처: Wallyn. T., Unimaas Mastering the IP Life Cycle: The International Tax Perspective, PWC, 2017.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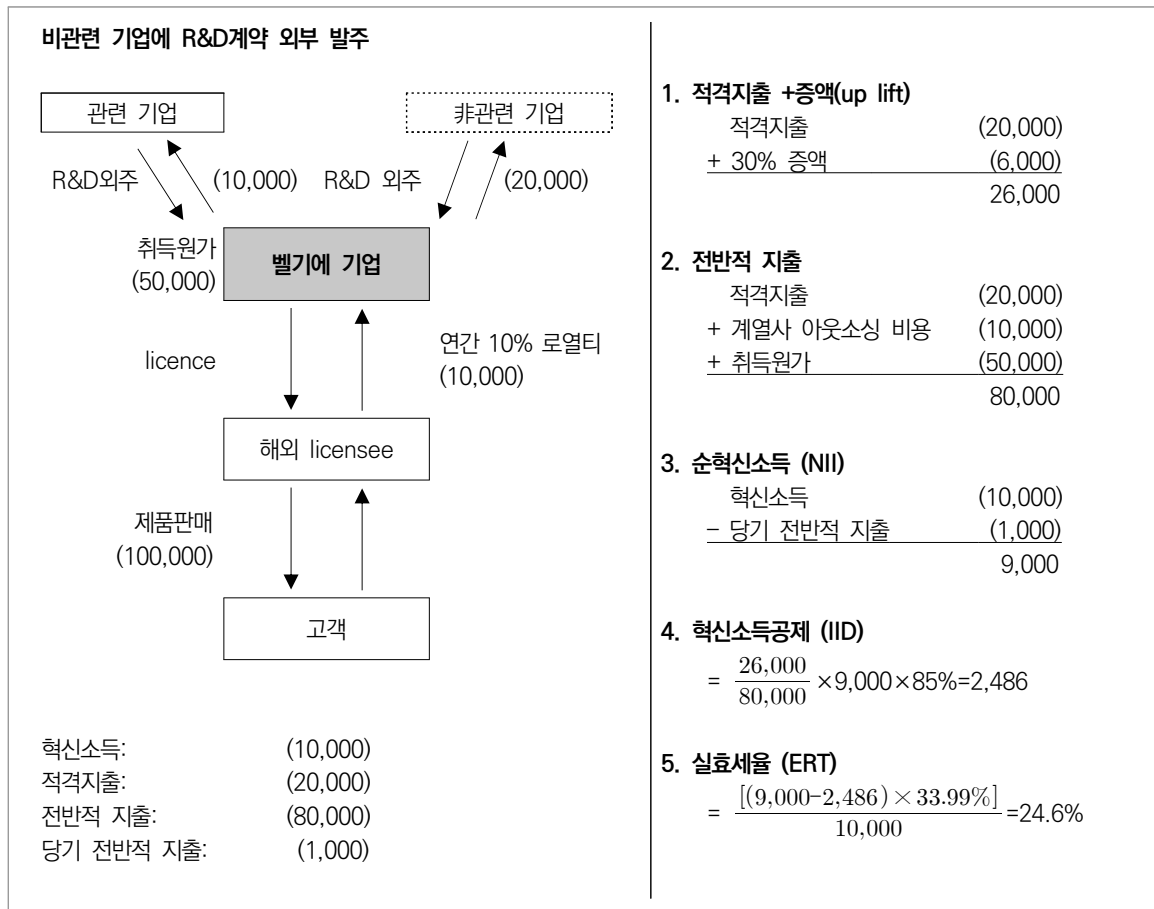
해당 국가에서의 직접 R&D 지출(D)은 기업에 의해 창출된 IP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적격지출은 실제적 R&D 목적을 위해 발생한 지출만 포함되며 이자비용이나 취득원가 등은 제외한다. 또한 전반적 지출이 존재하는 경우 적격지출의 30%를 상향조정하는 추가감면소득(up-lift)제도를 허용한다. 넥서스 비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넥서스 비율이 25% 이상이면 조세판결을 통해 실질적 부가가치가 입증된다면 넥서스 비율은 반박 가능하다.

▼ 그림 3 | 벨기에 기업의 혁신소득공제(IID) 산출 사례1



Wallyn. T., Unimaas Mastering the IP Life Cycle: The International Tax Perspective, PWC, 2017. 6. 2.

▼ 그림 4 | 벨기에 기업의 혁신소득공제(IID) 산출 사례2



Wallyn. T., Unimaas Mastering the IP Life Cycle: The International Tax Perspective, PWC, 2017. 6. 2.

7. 중국 특허박스제도

(1)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중국은 ‘기업소득세법’ 제27조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에 근거하여 특허박스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선행연구들은 언급하고 있으나, 이 조항들은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만이 언급되어 있어, 이를 기술양도소득을 포함한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제혜택인 특허박스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 기술이전 및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특허권 자체의 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일 뿐 제품매출형 특허박스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2008년 특허박스제도⁴⁷⁾를 도입하여 고신기술기업⁴⁸⁾에 대해서 일반 법인세율인 25%보다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지방 정부의 고신기술기업 조건에 부합되면 지방세도

경감받게 된다.

수익자는 중국 거주자 기업으로 고신기술기업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며 핵심 기술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불포함)에 등기된 기업으로 자체개발, 이전 또는 구매, 수증, 합병 등을 통해 과거 3년 전에 획득한 핵심 기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5년 이상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한다. 대졸 이상 학력의 과학기술업무 종사자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되고, 10% 이상이 R&D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중 중국 내 발생 비용이 총연구개발비의 60% 이상 되어야 한다.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는 직전년도 총수익 중 일정비율(6%, 4%, 3%)을 차지해야 한다.

▼ 표 17 | 총수익 중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 비중

직전년도 총수익(위안화)	총수익 중 R&D 지출 비율
5,000만 이하	6% 이상
5,000만 ~ 2억	4% 이상
2억 이상	3% 이상

출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14년 기반전문위원회 정책이슈 발굴 연구, 2014.

중국 내 주요 고신기술 기업으로는 Huawei, ZTE, Xiaomi, Haier, Tencent, 삼성전자 북경연구소, Ericsson 광저우·남경 연구소 등이 있다. 고신기술기업 자격은 3년마다 갱신이 되고, 부적격 판정 시 감면 세액과 이자 추징 및 향후 5년 간 고신기술기업 신청 자격 상실된다.

대상소득은 고신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으로, 로열티 소득, 대상 IP 처분 수입 등이고, 총수입 중 고신기술 및 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고신기술기업 자격 요건으로 R&D 개발비, 고급기술인력 채용, IP 보유 조건의 high-tech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특허박스 소득을 별도로 구하지 않고 총소득에 인하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등 중국의 경우는 순수한 특허박스제도라기보다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R&D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특허박스 개념이 결합된 형태이다.

47)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을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이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세제혜택인 특허박스제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48) 관할 조세당국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고신기술기업 HNTE(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와 ATSE(Advanced and new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s) 자격을 부여함.

중국형 특허박스제도: 고신기술기업 과세특례

- ▷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2008년부터 ‘중국형’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 ▷ 고신기술기업 관할 조세당국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고신기술기업 HNT (High and New Technology Enterprise)와 ATSE(Advanced and new Technology Service Enterprises) 자격을 부여함에 대해서 일반법인세율인 25%보다 낮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 지방 정부의 고신기술기업 조건에 부합되면 지방세도 경감받게 됨
- ▷ 기업소득세법은 세금감면 대상을 ‘고신기술기업’으로 한정
 - 전자 및 정보기술, 바이오 공학 및 신약 분야, 항공 우주 기술, 신소재분야, 첨단기술 서비스, 신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자원과 환경, 선진제조와 자동화 등 8개 지정분야의 고신기술기업의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감면(25%→15%)
 - 대상소득: 고신기술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 로열티 소득, 대상 IP 처분 소득
- ▷ **연혁1:** 중국의 고신기술(첨단기술, 하이테크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은 1980년대 말 ‘지정지역 혜택’ 방식으로 이루어짐. 즉, 전국 각지에 전문구역을 지정하여 지식집약형 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 하였고, 이 구역에 입주한 고신기술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조세혜택을 부여함
- ▷ **연혁2:** 고신기술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는 1994년, 2008년 두 번의 세제개혁을 통해 강화
 - ‘산업유형 중심의 혜택 부여 판단, 지역별 조건은 부수적인 조건’
- ▷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2016년, 과학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 표 18 |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 제11조

고신기술기업의 인정기준	
인정 신청 기업 요건	• 인정신청 시, 등록 및 신고가 1년 이상 된 기업
지식재산의 취득 방식	• 자체개발, 양도, 증여, 합병 등 방식
기술 범위	• 국가 중점적으로 지지하는 첨단기술 영역(산업 유형 중심의 혜택 부여 판단, 지역별 조건은 부수적인 조건)
인적요건	• R&D 및 관련 혁신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인원이 기업 당해 직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함
R&D 비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년 회계연도의 R&D 비용의 총액이 동기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과 같아야 함 • 최근 1년의 매출액이 5,000만 위안(포함) 이하인 기업: R&D 비용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함 • 최근 1년의 매출액이 5,000만 위안~2억 위안인 기업: R&D 비용 비중이 4% 이상이어야 함 • 최근 1년의 매출액이 2억 위안 이상인 기업: R&D 비용 비중이 3%(포함) 이상이어야 함 • (1, 2, 3 공통) 기업이 국내에서 지출한 R&D 비용이 R&D 전체 비용 총액의 60% 이상이어야 함
수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의 첨단기술제품(서비스)의 수입이 동 기간 총수입의 60% 이상이어야 함 •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 부여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능력평가, 인정 신청 1년 전에 안전, 품질 및 환경 기준 충족 • 고신기술기업 자격은 3년마다 갱신

(2)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

중국 자국 내에 등록된 특허, 노하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500만 위안까지 0%(면세), 500백만 위안 초과분에 대해서는 1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0조

- ▷ **제90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4항에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세'는 납세연도 내에 거주자기업의 기술 소유권 양도소득이 5백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백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 표 19 | 중국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는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정리

중국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 주요 내용	
조세특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세율/부분면세(기업소득세법 제27조, 시행조례 제90조에 항구조치로 규정) • 거주자기업이 취득한 기술양도소득 중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가 면제(0%) • 기술양도소득 중 500만 위안이 초과된 부분에는 일반세율의 50%가 적용(12.5%)
기술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계약에 기초한 특허(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생물 의약품종,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지정한 기타 기술
기술양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양도는 거주자기업이 소유한 적격 기술의 소유권 • 5년 이상(5년 포함) 독점 기술의 사용권 • 5년 이상 비독점 기술의 사용권(해당 기술의 소유권 소유) • 소유권과 5년 이상 독점기술의 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 기술양도소득=기술양도수입-기술양도의 원가-관련 세금 및 비용 • 5년 이상의 비독점 기술의 사용권이 양도되는 경우: 기술양도소득=기술양도수입-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관련된 세금 및 비용-해당 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R&D 비용 • 기술을 양도하는 기업에서는 기술을 양도하는 동시에 양수인에게 해당 기술에 관한 자문,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기술양도의 과정 중 동반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교육과 관련된 수익도 기술양도소득혜택세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기술양도소득 기업소득세 면제문제에 관한 통지, 국가세무총국, 2013) • 관련 사항은 반드시 '기술양도계약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관련 대가는 '기술양도에 따른 대가와 함께 지급'하여야 함
기술양도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 간의 기술양도는 성(省)급의 과학기술부문의 인증 및 등록 필요 •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게 기술을 양도하는 경우, 성(省)급의 상무부문의 인증 및 등록 필요

8. 그 밖의 유럽국가의 BEPS 이행실적⁴⁹⁾

현재까지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국가의 특허박스제도는 넥서스 접근법에 따라 특허박스제도를 수정하였다. 즉,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은 BEPS Action 5에 따라 특허박스제도를 개정하였다.

(1) 헝가리

헝가리는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을 채택하여 IP 박스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 특허 및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세금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적격소득의 비율은 넥서스 비율을 통해 결정되며, 적격 IP 비용은 과세 당사자가 수행하는 R&D 활동과 다른 당사자가 수행한 R&D 활동으로 구성된다.

(2)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2014년의 BEPS 보고서에 부합되도록 넥서스 비율을 사용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이탈리아 특허박스제도의 범위가 축소되어 BEPS Action 5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의 특허박스제도는 더 이상 마케팅 무형자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표는 과세 특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넥서스 비율의 적격지출은 납세자가 직접 발생하는 R&D 비용과 제3자에게 아웃소싱 한 R&D 비용으로 구성되며, 30%의 추가감면소득(up-lift)를 적용하고 있다.

(3)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기존의 IP 박스 제도 중에서 넥서스 접근법의 IP 박스체제를 준수하지 않는 부분은 2016년 7월 1일자로 취소되었다.⁵⁰⁾ 룩셈부르크 의회는 법률 제7163호에 의하여 BEPS에 일치하는 IP 박스체제를 구성하기 위하여 OECD BEPS Action 5에서 제안한 대로 더 이상 IP 박스에 마케팅 목적의 무형자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표를 제외하게 되었다. 2018년 개정된 룩셈부르크의 IP 박스제도는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에서 제안된 대로 30%의 추가감면소득

49) Simone Vos(2018), Fiscal treatment of IP in a post-BEPS world -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reports 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U, EEA and Switzerland, Tilburg University, 2018, p.34-48.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함.

50) Deloitte BEPS Actions Implementation Luxembourg(2017), p. 3,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beeps-actions-implementation-luxembourg.pdf>.

(up-lift)를 활용하며, 여전히 IP 소득에 80% 면세를 적용하지만 법정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IP 소득에 5.20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4)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우선 IP 박스를 넥서스 접근법에 맞게 변경하였고, 새로운 IP 박스는 Action 5에서 제안한대로 넥서스 비율을 적용한다. 다른 국가의 IP 박스와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역시 적격지출의 30%의 추가감면소득(up-lift)를 활용한다. 또한 적격지출은 10.5%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5) 스페인

2016년 7월, 스페인은 기존의 특허박스제도를 수정하고 수정된 넥서스 접근법을 도입했다. 적격 IP 소득에 대한 60% 면제는 변하지 않았지만, 적격 IP 소득이 조세 우대 제도에 자격이 되는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넥서스 비율이 도입되었다. 적격 비용은 Action 5의 권장 사항과 일치하며 IP자산과 직접 관련된 납세자에 의해 발생하는 R&D 비용 또는 R&D 활동이 아웃소싱되는 경우 IP자산과 직접 관련된 제3자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스페인 역시 넥서스 비율의 30%에 해당하는 추가감면소득(up-lift)를 활용하고 있다.

(6) 이스라엘

2017년 1월 1일에 이스라엘은 지식재산 기반 기업을 위한 이노베이션 박스(innovation box) 과세특례제도가 발효되었다. 기존의 특허박스제도는 BEPS Project에서 권고하는 조건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혁신기술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려는 일환으로 설계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1인당 과학자, 기술자 및 엔지니어 수가 가장 많은 기술혁신센터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다국적 기업(MNC)이 수백 개의 이스라엘 기술기업 인수와 R&D센터 설립을 통해 현지 인재와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

BEPS Project Action 5를 수용한 새로운 체제는 다국적 기업이 기존 이스라엘 R&D 기능과 함께 IP와 이를 통한 수익이 연계되도록 한다. IP 기반 소득에 대해 6%의 법인세(CIT)와 IP 판매에 대한 6%의 자본취득세율 감소의 혜택을 준다. 6% 세율은 글로벌 총매출이 ILS 100억(US \$ 25억) 이상인 그룹에 속한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 기업에 적용된다. 글로벌 총수익이 ILS 100억 미만인 기타 적격 기업은 법인세 감면 및 자본취득세율 12%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

사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의 특정 북부 또는 남부 지역에 위치한 경우 CIT 세율은 7.5%로 더 낮아진다.

또한 해외 주주에게 배당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는(규모 또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적격기업에 대해 4%의 감소율이 적용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투자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R&D 매출액의 7% 이상 발생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는 회사의 연간 R&D 비용이 ILS 7,50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이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직원의 20% 이상이 R&D에 참여(또는 R&D 직원이 200명 이상)
- 벤처캐피탈 투자가 ILS 800만이 이루어짐
- 3년 동안 이스라엘 내 매출 또는 직원 수가 25% 증가

9. 특허박스제도 미도입국의 특징

IP551) 중 앞서 살펴본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 일본이 남는다. 그런데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IP 소득조세특례 시행국 목록에 올라 있지 않다.⁵²⁾ 이는 그만큼 IP 소득조세특례에 대한 절실함이 덜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2년 10월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 기업의 R&D 거점이나 기업의 추가적 수익원인 IP가 영국 등의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으로 이전될 것을 우려하며, 2013년도의 세제 개정에서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을 요구하였다⁵³⁾. 일본은 R&D 활동 자체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IP 사업화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는 부족하다. 이에 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의 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2년 1월에 경제산업성의 산업기술환경국이 발표한 『연구개발형 벤처』의 창출·진흥' 보고서에서 연구 성과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구체적 시책사례의 하나로 '혁신박스 세제'의 검토를 제시하였다.⁵⁴⁾

2016년도 2월 '2015년도 내외일체의 경제성장 전략구축에 관한 국제경제조사사업(대내직접

51) 글로벌 지식재산 5개 주요 특허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유럽과 우리나라 특허청을 칭한다. 유럽연합회원국이지만 유럽특허청 회원국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겹치는 국가가 다수이고, 여기서는 유럽 자체의 문제가 아닌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글로벌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어서 유럽에 대해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52)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P 소득조세특례제도를 운용한다는 평가가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GILTI and FDII는 특허뿐 아니라 증권이나 상품, 나아가 유형재산으로부터 얻어진 '국외'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해외소득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중국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고신기술인증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으로서 IP 소득조세특례제도와 대응하지 않는다.

53) '平成25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提言',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12.

54) 류태규, 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6.

투자촉진 체제정비 등 조사(BEPS를 고려한 우리나라의 CFC세제 등의 기본 방향에 관한 조사)⁵⁵⁾에서 영국 및 프랑스 등 해외의 특허박스제도 등을 검토하는 등 일본의 재계 및 정부가 특허박스제도에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최근까지도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언어나 문화, 법제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다수이지만 동북아 이외의 국가들과는 그렇지 않다. 지리적으로도 도서국가로서 유럽과 달리 육상으로 연결되는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개발국이 한국과 중국 정도이지만, 유럽과 같이 이동이 자유롭지도 않으며 중국과는 사회체제도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 해도 일본 밖으로 진출할 것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고 역으로 일본 밖의 기업들이 일본에서 IP 소득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더라도 일본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⁵⁶⁾

미국의 경우 2013년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혁신법(Manufacturing Innovation in America Act of 2013)’ 개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당시 도입방안은 특허박스제도 소득이나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의 71%를 세액감면하고 특허박스 법인세율을 10%(미국의 표준 법인세율은 35%)로 인하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2015년 7월 일부 상원의원들이 특허뿐 아니라 발명, 공정, 디자인, 패턴, 노하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세혜택을 적용하는 혁신박스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양당보고서를 상원재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미국은 혁신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경쟁적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혁신박스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에도 미국 의회에서 특허박스제도와 관련 연구를 통해 특허박스제도가 반드시 호스트 국가에서 세금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특허박스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새로운 특허활동으로 인한 추가 수입이 특허 수입에 대한 세율 감소로 인해 수입에 손실을 볼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채택할수록 특허소득에 대한 유효 세율을 낮추는 국가 간의 경쟁이 과열되게 되고, 특허박스제도는 현지 개발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호스트 국가의 혁신적인 활동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⁵⁷⁾

행정적으로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America First로 대표되는 자국우선주의 기조하에서, 조세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보호무역강화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미국 외의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상황이어서 IP 소득조세특례가 도입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5) 平成27年度内外一体の経済成長戦略構築に係る国際経済調査事業(対内直接投資促進体制整備等調査(BEPSを踏まえた我が国のCFC税制等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56) 일본의 특정지역이나 일본시장, 또는 특정 기업을 목표로 일본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는 존재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IP 소득조세특례제도의 시행이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57) Guenther, Patent Boxes: A Primer, 19.

경제적인 환경에서도 미국은 세계투자의 중심축이다. 미국에는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고용을 창출한다. 영국에서 특허박스제도 시행이 한참 화두였던 2013년을 전후하여 삼성전자는 산호세에 3억 달러짜리 R&D센터를 만들어 실리콘밸리에만 8개 이상의 연구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주도로 채용에 나섰고, LG그룹은 기술센터를 설립하고자 구본무 회장이 현지 채용설명회에 참가하는 열의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기업 오너들이 직접 현지 투자를 적극 챙기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일례다.⁵⁸⁾ 즉, 미국정부가 별다른 조세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외국기업들이 자본을 들여와 인재를 채용하고 투자를 하는 상황이어서, 굳이 세수를 줄여가며 투자유치를 도모할 필요성이 낮은 것이다.

한편 중국의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는 핵심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특정 8개 영역의 기술로서, 일정한 기술인력과 연구개발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업우대정책이다. 이를 두고 중국은 변형된 IP 소득조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신기술기업 인증제도의 혜택이 명확하게 IP를 활용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은 아니다. IP가 고신기술기업으로서의 인증요건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IP활용 소득을 추적하여 특별한 세율을 적용해주는 것이 아닌 점, 특정기술영역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인 점에서 중국이 IP 소득조세특례를 시행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은 유보해야 할 것이다.⁵⁹⁾

58) 이혜운, “금귀! 실리콘밸리 천재들”, 조선비즈, 2014. 8. 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3907.html〉, 2020. 1. 6. 최종방문.

5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앞의 보고서, 12면.

제4절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1.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에 관한 논거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에 있어 우리의 경제·사회·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재해석되어야 한다. 특허박스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착근되기 위해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특허박스제도에 관한 논쟁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이 제도가 처음 적용된 원형 자체로나 혹은 유럽 국가들이 적용하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제도에 대한 오해나 부정확한 정보가 통용되고 있거나, 선행 도입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아 정보가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연구보고서의 설명은 자칫 “특허박스제도는 태생된 유럽에서조차 논쟁적이다.”는 잠재적 결론과 속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보고서의 결론은 이와 상반된 내용으로, 연구의 결과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특허박스제도를 잠재적 유해조세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최근 무형자산에 대한 조세특례를 이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이 증가함에 따라 OECD BEPS 프로젝트에서 실질적 활동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나친 조세특혜로 지적되고 있다.

기존 대부분의 제도 도입국들은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직접 개발한 특허권뿐 아니라 타사로부터 이전받은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었으나, OECD는 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본 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간 불필요한 조세경쟁을 부추긴다고 판단하고, 이에 OECD에서는 특허박스제도에 실질적 활동 요건 및 특허제도에 대한 동시적 정보교환 의무를 추가하였다.⁶⁰⁾

60) 유경진(2017),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17-04, 2017.

특허박스제도 도입국은 OECD 권고사항에 따라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며, 벨기에에는 제도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 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특허박스제도가 유해조세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로 지정되었으나, 자국 내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및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이는 특허박스제도가 유해조세경쟁을 유발하는 제도로 지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로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및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데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유경진, 2017).

세 번째 이유는 ‘기존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R&D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선 부른 평가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에 따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이 R&D 세액공제, R&D 추가비용공제, 특허박스제도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표 20 | 해외 주요국의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R&D 세액공제 (R&D Incentives)	R&D 추가비용공제 (R&D Super Deduction)	특허박스제도 (Patent or Innovation Box)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	○*
브라질		○	
캐나다	○		
중국		○	○
체코		○	
덴마크	○**		
프랑스	○		○
헝가리	○	○	○
인도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		
카자흐스탄		○	
한국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몰타	○	○	○
네덜란드	○***		○
폴란드		○	
포르투갈	○		○****

	R&D 세액공제 (R&D Incentives)	R&D 추가비용공제 (R&D Super Deduction)	특허박스제도 (Patent or Innovation Box)
루마니아		○	
러시아		○	
싱가포르		○	
슬로바키아		○	논의 중
남아프리카		○	
스페인	○		○
스위스			○
터키	○	○	○
영국	○*****	○	○
미국	○		

* 벨기에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특허소득공제제도(PID)가 폐지되고 혁신소득공제제도(IID)로 대체됨. 2016년 7월 1일 이전에 요청하거나 취득한 특허(보조보호인증서 포함)의 경우 납세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구PID 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음.

** 덴마크는 R&D 비용의 즉각적인 공제로 인해 현재 평가 연도에 발생한 손실의 세금 가치로 최대 2,500만 DKK로 제한됨.

*** 네덜란드는 2016년부터 이전의 R&D 추가비용공제가 R&D 세액공제에 통합됨.

**** 포르투갈은 2014년 1월 이후에 생성된 IP에 대해 Patent Box제도를 적용.

***** 영국은 2013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대기업의 지출에 대하여 새로운 R&D 세액공제를 도입함. 이 제도는 처음에는 대기업에 대한 R&D 추가비용공제와 함께 시행되었지만 2016년 4월 1일부터는 의무화됨.

이런 상황에 대해 가장 바림직한 판단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R&D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로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R&D 성과물의 사업화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는 경우 중복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에 대해 조급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것 보다는, 유럽 국가에서 왜 이렇게 R&D 세액공제, R&D 추가비용공제, 특허박스제도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비판은 기존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는 중복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며 R&D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는 대답은, 'R&D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과, 그 특허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며,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별도로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의 R&D 비용을 감소시켜, R&D 투자의 확대 및 유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실패 시에 많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나, 기업이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특허박스는 R&D 성과인 특허 등을 기반으로 한 제품 매출이나 거래 수익에 대한 조세혜택에 중점을 둬으로써, R&D 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에 중점을 둔 기존 R&D 조세 지원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업화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유경진, 2017).

네 번째는 제도 운영상의 유연성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 운영상의 유연성이나 선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 중 가장 비근한 예가 바로 대기업 혹은 몇몇 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반면 다른 반대편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나, 제도의 도입취지 및 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편중된 혜택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점도 있다. 이 역시 이 특허박스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충분히 따져보아야 할 사안 중의 하나인 것이지 이 검토 자체를 가로막은 결정사유는 아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논쟁점과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인식이 자칫 단기적으로 조세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강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 이로 인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할 때 단기의 조세수익 감소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수익의 기반을 강화해 보전될 혹은 차감될 가능성이나 궁극적으로 고용 증가나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동적 이익에 관해서는 논의 자체를 어렵게 했던 것 아닌가 우려도 된다.

그동안의 소극적 분석과 논의에 의해 특허박스제도 자체의 실체에 대한 효과와 장애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음을 상기하고, 현재 상황에서 꼭 달성해야할 성과를 혹시 있을지 모를 부작용에 대해 답습된 비판논리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실제로 본 안을 정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정책이든 그 효과성을 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기초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여건과 특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 자체가 적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⁶¹⁾이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특허박스제도 도입 방안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절에서는 네 가지 관점에서 한국적 적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각각은 특허박스제도가 기존 R&D 세액공제가 있는 만큼 특허박스제도는 R&D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그에 앞서 어떤 정책이든 효과를 발현하는 것은 적절한 조정의 결과로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61)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와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특허출원 규모를 비교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우리의 특허출원 규모가 이들 제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때 그 비용이 지나치게 클 것이라는 논리는 우리가 그 이상 연구개발비 지출이 높고, 경제규모가 크다는 점은 배제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1)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제도 설계

특허박스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가장 큰 반대 논리 중 하나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쏠릴 수 있고, 자칫 중소기업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이슈에 대한 논쟁점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위 ‘대기업 대(對) 중소기업’의 이슈이다. 즉, 특허박스제도가 대기업 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편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 연구는 이 제도의 적용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 이슈는 제도 적용을 제약할 만큼 큰 문제점은 아니며, 주된 적용 대상을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절하게 해소가능하다고 본다.

두 번째 논쟁점은 과연 대기업에 편중된 지원이 이 제도의 기능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전문가에 따라서는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혜택이 편중될 수 있다고 해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유경진(2017)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사업화 역량이 높아 사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 대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거나 대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을 우려해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가지 논쟁점 중에서 후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 제도의 초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제도적 환경, 즉 기존 R&D 조세특례제도가 대기업에 편중성이 있다는 지적을 고려할 때 우선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한 주요국의 사례에서 기업규모를 제약하고 있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만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적격성에 제한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을 대기업 배제의 이유가 없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각국의 제도 적용을 가름하는 환경과 외연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부 R&D 사업 연계한 특허박스제도 추진

특허박스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간과하기 쉬운 사항 중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정부지원의 중복 혜택이다. 이 논점의 요지를 다루기 위해 굳이 ‘매몰비용(Sunk Cost)’ 같은 개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지표와 통계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아래 [표 4-21]은 소위 기초연구⁶²⁾를 위한 정부 R&D 예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웅용·김주

62) 이것을 보다 엄밀히 말한다면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예산이며, 과학기술의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띤다(한웅용·김주일(2017)고 설명된다.

일(2017)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기초연구사업은 2018년 1조 1,215억 원에서 2019년 1조 2,7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3억 원 증가하였고, 집단기초연구사업은 2018년 3,028억 원에서 2019년 4,3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9억 원 증가하여 기초연구투자규모가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 표 21 |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관련 주요사업

(단위: 억 원, %)

분야별	2018년(A)	2019년(B)	증감(B-A)	증감률(%)
개인기초연구	11,215	12,718	1,503	13.4
생애기본연구	450	1,340	890	197.8
신진·중견·리더연구	7,280	8,456	1,176	16.2
집단기초연구	3,028	4,387	1,359	44.9
집단연구	1,988	2,210	222	11.2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1,040	2,177	1,137	109.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2,347	2,525	178	7.6

출처: 한용용·김주일(2017),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KISTEP.

동 조사자료는 “이에 따라 기초연구 수혜대상은 2018년 약 1.7만 명에서 2019년 약 2.1만 명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과학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애맞춤형 기본연구 등의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를 대폭 확대하여 ‘신진연구 및 생애 첫 연구 → 중견연구 → 리더연구’의 연구단계별 체계적 지원으로 단절 없는 자율·창의형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적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공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많은 기초연구 및 원천지식생산에 투자하고 있고, 만일 이 같이 생산된 지식이 기업에 의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 R&D 투자의 목표는 원래부터 공허한 것이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R&D 투자는 총 77,988.8백만 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은 4.53%로 이스라엘(4.94%)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⁶³⁾ 지난 10여년 간의 변화 추이를 볼 때 향후에도 이 같은 경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R&D를 매개로 하는 ‘혁신=성장’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과정에서 양산된 방대한 양의 혹은 적어도 이 정도의 투자에 비례해 생산을 기대한 단위 GDP당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특허박스제도의 추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대전제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63) www.ntis.go.kr

한편,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 중 정부연구비는 22.68%(2016년 기준)로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⁶⁴⁾, 이 역시 지난 10여년 간의 추이를 보아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앞에 언급한 우리나라의 높은 R&D 집약도는 실상 정부 R&D 투자의 영향이 주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간기업이 지출한 R&D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R&D 조세지원제도라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 첫째, 투자 결과물이 기초연구의 결과든 아니면 아직 제품화되지 못한 기술지식의 형태를 띤 것이든 간에 활용할 수 없다면 투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양산된 기술지식이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도 설계의 필수적인 전제이다.

두 번째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제도가 R&D에 대한 이중 지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서는 안된다. 두 제도는 ‘앞선 단계’와 ‘뒤따르는 단계’이며 있는 하나의 묶음으로서 기능하는 정책인 것이지 서로 기능적으로 대부분이 중복된다고 보는 것은 표면적이고 한 단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본 것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R&D 세액공제와 특허박스를 통해 R&D 성과 혹은 결과물을 제품에 투영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얻도록 유인하는 과정을 구분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며, 특히 이 같은 시각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R&D 지원 정책, 나아가 우리 산업육성정책의 기초에 보다 더 일관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 같은 점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그 대상을 명시하고,

특허박스 정부 R&D 사업 중 기술개발의 목표 혹은 이에 기반한 분명한 제품 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과제의 결과물로서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매출 발생 경우 혹은 이 과정이 기업과 기업 간 협력(기술이전 포함)으로 수행된 경우

더불어 그 지원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우선 적용할 것으로 제안한다. 물론 당장은 상기 특징을 가진 정부 지원사업에 한정하더라도 향후에 원천연구개발들, 특히 민간이 주도하거나 공공기관 주도하에 참여하는 정부 R&D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파급효과를 보면서 고려하기 위한 탐색과제로 적시해 둘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64) 2016년 기준 러시아 68.17%, 캐나다 33.08%, 미국 25.08% 등으로 나타남(OECD MSTI, 2017).

(3) 전략산업 기술 역량 증진형 특허박스제도

특허박스제도의 적용과 관련해 고려할 만한 현안으로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물자에 대한 자국 기술 확보 문제가 있다. 이 조치 후 특허청에서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을 조사한 바, 이들 제품과 관련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일본업체들이 점유하고 있었다.

개략적으로 알려진 바를 보면 전 세계 특허 점유율을 기준으로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65.1%, 우리나라는 9.1%로 일본의 약 1/7 수준이었다. 또한,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은 일본 55.3%, 우리나라 38.4%였으며, 불화수소는 일본 33%, 우리나라 5.2%로서 일본과는 현격한 격차를 보였다.

이 사태를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단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뿐 아니라 많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제조 경쟁력에 비해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전체 산업 분야에 적용하는 대신 전략산업 기술,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역량 및 그 기반을 국가 혹은 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제품을 지정하여, 해당 기술 경쟁력 확보나 제품 개발 및 양산 등에 핵심적인 특허를 대상으로 적용

향후 양산될 R&D 성과물로서의 특허를 이것이 궁극적으로 투영될 제품 매출이나 기술 자체의 수익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화를 지향하는 R&D’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기존 R&D 투자 전체의 실질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것으로 전략산업의 경쟁력에 새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동시에 이렇게 특허박스제도의 우선 적용 대상을 산업의 위기나 기술경쟁력을 조속히 증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4)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한 한시형 특허박스제도

특허박스제도를 둘러싼 논쟁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이 태생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1973년 아일랜드가 최초로 지식재산 관련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것을 적용하고,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주요국들이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을 때 그 목적에 자국 내 기업의 혁신기술의 사업 활성화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돕는다는 목적도 있었겠으나 지식재산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 유치나 이와 병행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도 있었다.

특허박스제도 도입으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한 경우나 외국인직접투자(FDI) 연평균 증가율에 있어 제도 수용국이 EU 평균보다 높다는 점은 이런 목적이 실제로 작동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특히 European Commission(2015)은 2000~2011년에 걸쳐 특허박스제도의 조세효과, 즉 조세상 혜택으로 인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자국 내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제품에 적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제도 활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품질의 특허권의 경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역내국가의 기업이나 특허의 유치를 도모하고자 하거나 혹은 그 외 역외권 국가에서 동아시아권으로 연구센터나 생산지를 이전하고자 탐색하고 있는 기업, 소위 풋루즈(footloose)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나 개도국으로 진출했던 국내기업, 즉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 중 상당수가 리쇼어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이러한 리쇼어링 현상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 국가에 설립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리쇼어링의 이유로 혁신기술개발, 신기술 활용 및 테스트 등이 있는데, 유럽의 리쇼어링은 전기장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항공우주산업 등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활발하나 또한 유행과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의류 및 식품산업에서도 생산 자동화를 활용해 생산속도 및 정확도를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선택된다.⁶⁶⁾

▼ 표 22 | 산업기술별 유럽의 리쇼어링 기업 비율

산업기술별	리쇼어링 기업 비율
첨단(High-Tech)산업	7.5
중고기술(Medium-High Tech)산업	5.3
중저기술(Medium-Low Tech)산업	3.0
저기술(Low-Tech Tech)산업	2.7

출처: Dachs and Zanker(2015), "Backshoring of Production Activities in European Manufacturing", MPR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8)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적인 평가는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해 지원근거는 마련했고 결과적으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인력 지원, 입지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혁신 및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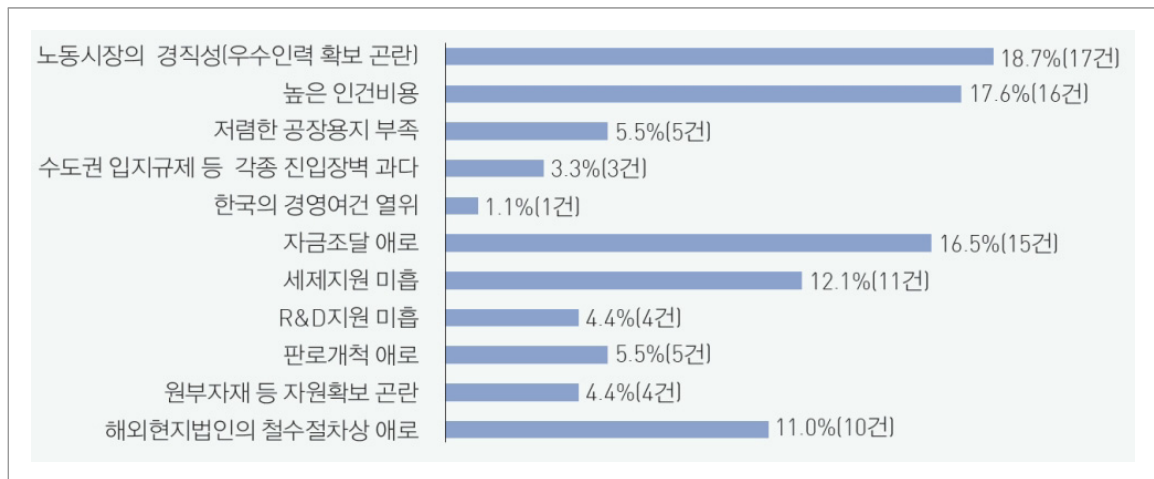
65) 유경진(2017),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17-04, 2017.

6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국 리쇼어링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NRC Research Brief 004, 2018.

관련 지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적어도 2018년 초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44개 기업에 불과한데, 국내 복귀 또는 복귀 예정인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⁶⁷⁾에 따르면 우수인력 부족 및 높은 인건비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고 R&D 지원 미흡도 어려움 중의 하나로 언급된 바 있다.

리쇼어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이다. 첫째는 리쇼어링 지원이 한계 기업들로 하여금 유턴기업법의 수혜를 받아 국내로 복귀하였다는 비판⁶⁸⁾이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만일 특허박스가 인센티브가 되어 유턴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이 기업이 다른 수혜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특허박스가 제안하는 인센티브가 중요한 혜택인 기업을 선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 특허박스가 리쇼어링 정책에 부정적인 작용을 더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 그림 5 | 리쇼어링 이유



출처: 양금승(2017),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U턴 촉진방안」, P.14.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재인용.

그리고 두 번째는 특허박스제도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및 지식재산권을 이전에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조세경쟁을 유발하고 이 제도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지적에 대해 리쇼어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의 부작용을 우려할 필요가 없음과 동시에 기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라는 연계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오프쇼어링의 가장 큰 이유가 국제분업구조 속에서 저임금 활용을 통한 효율적 생산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특허박스제도는 이 제도의 적용을 통해 비록 생산비용이 높더라도 창출한 소

67) 한국경제연구원, “U턴기업 실태조사”, 2017. 2.

6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국 리쇼어링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NRC Research Brief 004. p.6.

득에 대해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저임금과 비교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된다고 하겠다. 단지 이 경우 동종기업 중에 이미 이 같은 목적으로 오프쇼어링을 했던 기업과 국내에서 연구와 생산을 유지했던 기업 중 전자를 역선택하는 것 아닌가는 지적은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의 적용은 일정 기간 동안 이 기업이 연구소나 생산시설을 신규로 이전하고나 재이전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가지 제도 설계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특허박스제도를 신청하는 해당 특허와 관련된 R&D 단계를 잘 규정하는 것이다. 만일 이 등록 특허의 형성을 위한 상당한 단계가 국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두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줄일 수도 있지만 만일 우리 R&D 경쟁력이나 인프라가 적절하다면 큰 영향을 주지 않거나 보다 큰 간접적 정책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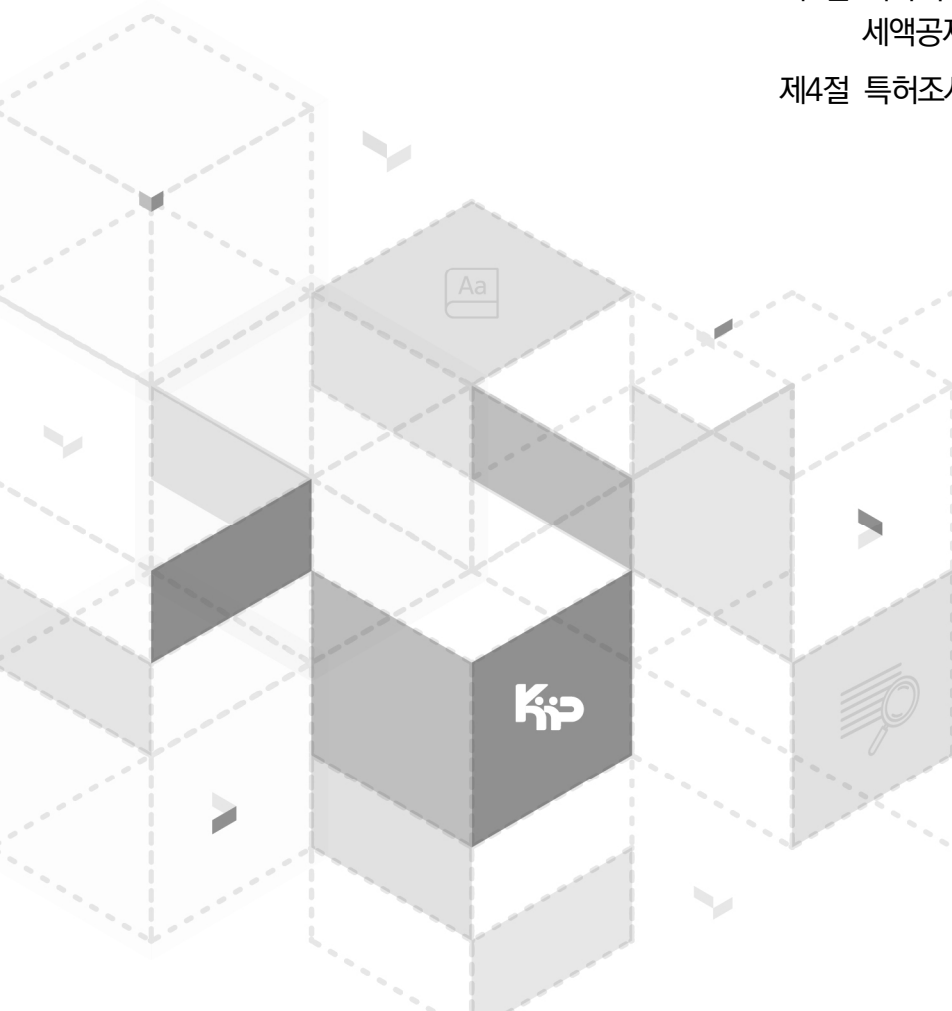
해외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조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 주요국 및 국내 IP-R&D 정책 및
특허정보 활용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 및 국내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현황

제4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적용방안



제1절 ●● 개요

국내 특허출원 규모는 세계 4위이며, 정부 R&D를 통한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의 품질은 미흡한 편이다.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은 10%대로 미국 23.3%, 독일 23.9%, 일본 19.7% 등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80년대부터 시장선점을 견인할 IP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정부 위탁 R&D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 R&D 상업화 촉진 위한 R&D 전 단계 IP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R&D 혁신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IP-R&D가 떠오르고 있다. IP-R&D는 R&D 기획부터 수행, 완료 및 기술사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강한 IP 창출을 염두에 두고 IP 전략을 수립하여 R&D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IP를 고려하지 않은 R&D는 분쟁가능성과 중복투자 가능성을 높여 비용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R&D 기획 단계부터 IP를 분석하여 R&D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외 특허분쟁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특허분쟁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인 R&D를 위하여 특허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 누적 공개특허는 4억여 건으로, 현대 기술정보의 대부분은 특허문헌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특허정보를 분쟁예방 및 R&D에 활용하는 인식·역량이 취약하여 특허분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을 위해서는 특허법 및 특허 데이터베이스(DB), 관련 기술, 특허 검색식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 검색 및 특허전문가에게 관련 전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글로벌 경영 환경과 기술발전의 가속화로 인해 R&D를 거쳐 사업화하는 기간의 단축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R&D 시설은 급속히 진부화되면서 특허조사·분석도 외부 위탁이 증가하고 있다(과학기술부, 2007). 그러나 특허조사·분석을 외부 위탁 시 민간 R&D 주체가 높은 비용을 자체 재정으로 지급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외부 위탁 시 보다 정교한 조사·분석을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R&D 주체가 정부지원 없이 자체 재정으로 특허조사·분석을 외부에 위탁한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통해 특허조사·분석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R&D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은 특허조사·분석을 통한 최적의 R&D 방향 설정을 지원함으로써 강한 특허창출과 R&D 효율화를 증진시킨다. IP-R&D 지원 기업은 비지원 대비 특허·경제 성과가 우수(우수특허비율 1.3배, 해외 특허(미·일·유럽)비율 3.7배, 매출증가율 2배, 2013~2017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⁶⁹⁾.

그러나 특허조사·분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분쟁에 취약하고 분쟁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조사·분석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 정착과 민간 주도의 IP-R&D 기반 확충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지원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특허정보 조사 분석 비용의 세액 혜택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절에서는 IP-R&D의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IP-R&D 전략수립과정에서 수반되는 특허정보 조사·분석의 주요 조사 분석 항목에 대해 기술한다. 2절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국내의 IP-R&D 정책 동향과 R&D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현황에 대해 기술한다. 3절에서는 해외 주요국(영국, 네덜란드, 대만)에서 특허조사비용의 세액공제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국내 현황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R&D 과정에서 수반되는 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관련 R&D 세액공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I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의 개념 및 필요성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이란 특허를 R&D의 결과물로만 보지 않고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로 삼아 R&D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R&D 수행방식을 말한다. 기존에 기획단계에 국한되었던 IP전략을 R&D 전과정 즉, 기획-연구수행-관리-평가의 과정에 도입함으로써 혁신성 제약과 더불어 양적 성과 창출로 인한 특허 품질 저하를 극복하고 경제적 가치 실현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늦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로열티 등 수수료를 지불하고 개발이 완료되거나 상용화된 제품, 상품을 도입한 후, 부품 일부를 국내 생산품으로 교체하는 국산화 과정과 선진국 제품을 구입하여 구조를 분석한 후, 모방제품을 만드는 역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추격형 R&D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선진국 추격형(Catching-up) 기술개발 전략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전자교환기(TDX), 메모리, 반도체 및 CDMA 기술 등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등 많은 성공사례를 가져왔다. 그러나 추격형, 수동형, 방어적 기술개발 전략으로는 한계에 다다랐고 주변국의 견제가 한층 더해짐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기술개발 전략, 특히 지식재산 전반을 고려한 R&D 전략 및 경영 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69)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0년 정부 R&D 우수특허창출지원사업”, 2020.

IP-R&D 수행을 위해서는 R&D를 시작하기 전 또는 R&D 초기에는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허기술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R&D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R&D를 수행한다면 중복연구나 특허 침해의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선행특허조사 없이 수행하는 R&D로 인하여 낭비되는 R&D 예산이 유럽에서만 한해 600억 유로(약 82조 원)에 이르며⁷⁰⁾ 오스트리아에서는 선행특허조사를 거치지 않아서 쓸모없는 R&D를 하는 경우가 3만 명의 연구자 중에서 최대 1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⁷¹⁾도 있다.

▼ 표 23 | R&D IP와 IP-R&D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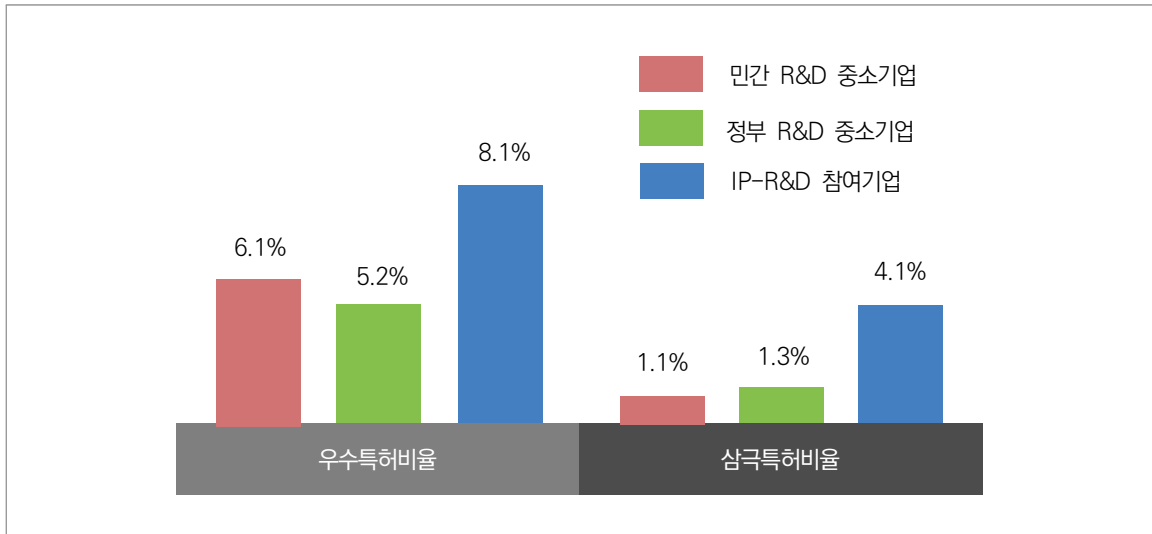
구분	R&D IP	IP-R&D
개념	R&D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R&D의 결과물로서 특허출원)	지재원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선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후 R&D 수행)
R&D 방향	선진국 기술 추격형 R&D	핵심, 원천, 표준특허 조기선점형 R&D
목표	선진기업의 공격에 적절한 방어	돈되는 강한 특허의 선점으로 타사공격, 방어 등 다양한 전략 실행
출원전략	특허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양 위주의 특허출원	전략적 포트폴리오에 따라 촘촘한 특허망을 짜고 출원
경영전략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의 필요에 따른 개별적인 분석으로 일방적인 선진국의 특허공세에 방어적으로 대응	경쟁사 및 시장환경 분석을 통해서 미래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획득하는 종합적이고 쌍방향적인 전략을 수리하여 후발주자를 공격
소통	기술전문가에 의한 일방 통행식 R&D	기술전문가와 특허전문가의 개방, 공유, 참여

이에 반해 IP-R&D를 지원받은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지난 5년간(2012~2016년) IP-R&D 지원 기업의 성장성·수익성·고용창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 기업의 2년 후 연 매출 증가율은 30.9%로 지원받은 연도(9.9%)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10.1%로 같은 기간 대비 10배로 증가했다. 정부지원금 10억 원당 고용 창출도 17.2명으로 정부 R&D 평균(11.2명)보다 50% 이상 높았다. 특허 성과도 우수해 IP-R&D의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 R&D 과제는 연구개발비 10억 원당 특허 수가 1.4배 높았다. 창출된 특허의 질도 높아 우수 특허비율이 비(非)지원 대비 2.3배,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주요국 특허비율도 비(非)지원의 3.4배에 달한다.

70) <http://www.patentamt.at/geschaeftsbericht2006/de/srvverschenken.html>.

71) Maris wally, "Doppelt gemoppelt", profil extra, february 2005, pp.24-25.

▼ 그림 6 | IP-R&D의 특허 성과(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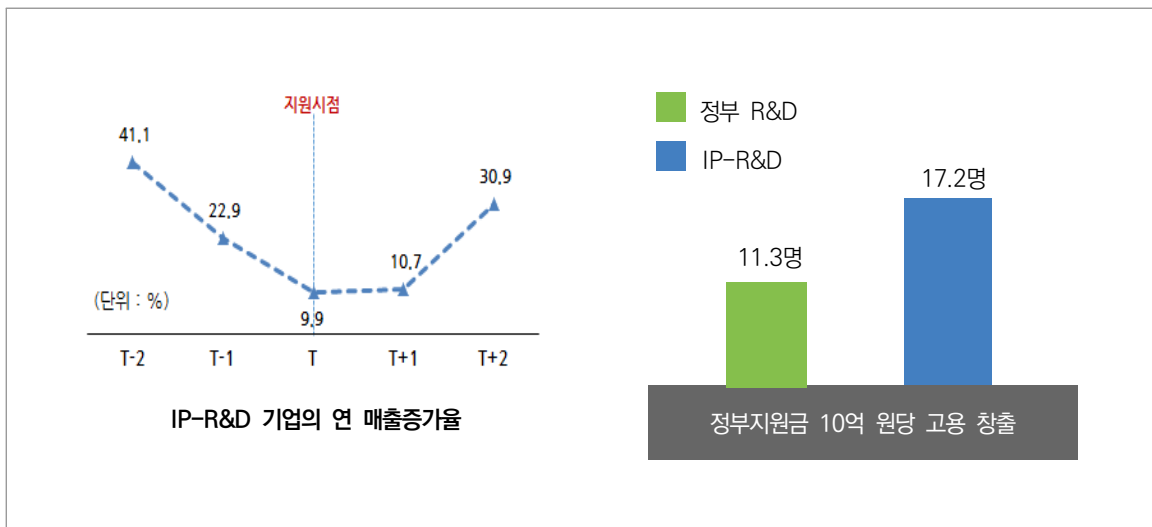


※출처: 특허청

* 우수특허비율: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의 9등급 평가결과 중 상위 3등급 특허의 비율

** 삼극특허비율: 국내에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 미국, 유럽, 일본 특허청에 동시 출원된 비율

▼ 그림 7 | IP-R&D의 경제 성과(2012~2016)



※출처: 특허청

II 특허정보의 주요 조사·분석 항목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활동 정착을 위하여 R&D 과정에서 수반되는 특허정보 조사·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특허정보 조사·분석 항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정부 R&D 사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특허정보조사 항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특허기술동향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여 R&D에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선행기술조사와 특허동향조사를 총칭한다⁷²⁾. 선행기술조사는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R&D과제가 선행문헌에 공개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특허동향조사는 기술동향, 주요 R&D 주체의 R&D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R&D 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조사는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 결과를 기초로, 과제 기술의 선행 문헌에 의한 위험도,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 문헌에 공지되어 있는 기술 내용, R&D 시 유의사항 등 과제 기술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정부 R&D 사업에서 선행기술조사 대통령령 제2821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 11호를 근거로 의무화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11호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 1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72)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 가이드북」, 2017.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4. 제6조제4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7.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
8.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9.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0.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 10의2. 연구개발수요기업의 성능평가·검증 수행 가능성 및 구매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수요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로 한정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선행기술 조사는 ①핵심 기술요소 도출, ②핵심 기술요소별 검색 방법 작성, ③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 ④종합 결론의 순서로 진행되게 된다.

핵심 기술요소는 선행기술과의 비교 판단을 위한 단위 요소로서, R&D 기술에서 종래 기술과 대비해 기술적 특징(목적, 구성 및 효과 측면)이 있는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선행기술조사를 위해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일은 과제 기술에서 특히 관점에서 핵심 기술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핵심 기술요소는 추상적·포괄적인 구성요소로 도출되어서는 안 되며, 과제 기술에 포함되는 구체적·세부적인 구성요소를 그룹화하여 복수의 핵심 기술요소로 도출하되,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개 이상의 핵심 기술요소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기술요소가 도출되면 선행문헌 검색을 위한 조사 대상 국가, 기술 분류, 핵심 기술요소별 주요 키워드 및 검색식(특허, 논문) 등, 핵심 기술요소별 검색 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핵심 기술요소별로 기술적 유사성이 높은 선행 문헌(주요 참조)을 도출되면 핵심 기술요소별로 선행 문헌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게 된다.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을 할 때는 핵심 기술요소가 공지되어 있는 선행 문헌의 페이지, 도면 번호, 청구항 등을 기재하여 향후 R&D 시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 결과를 기초로, 과제 기술의 선행 문헌에 의한 위험도,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 문헌에 공지되어 있는 기술 내용, R&D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시사점 등, 과제 기술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 표 24 | 선행기술조사 절차

① 핵심기술 특정	연구자 인터뷰를 통해 제안과제의 핵심단위기술을 특정하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기술요소도 파악
② 선행기술조사	한국·미국·일본·유럽·국제특허·중국 문헌(간행물, 논문 등 포함)으로 한정하여 조사 실시
③ 유사도 분석	핵심단위기술별 평가(0점; 신규·진보성 있음, 5점; 2개 이상의 문헌으로 진보성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10점; 신규·진보성 없음)
④ 위험도 제시	핵심단위기술별 국내 및 국외 유사도 점수 중 높은 값을 산출한 후 전체 평균값(Average max A to max C)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R&D 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R&D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R&D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핵심특허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R&D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허동향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특허동향조사

특허동향조사는 정부 R&D 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의 기획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경우) 및 R&D과제의 기획 단계(과제기획서·제안요구서 작성 단계 및 기획대상과제 우선순위 결정 단계)에서 수행하게 된다. 정부 R&D 사업에서 특허동향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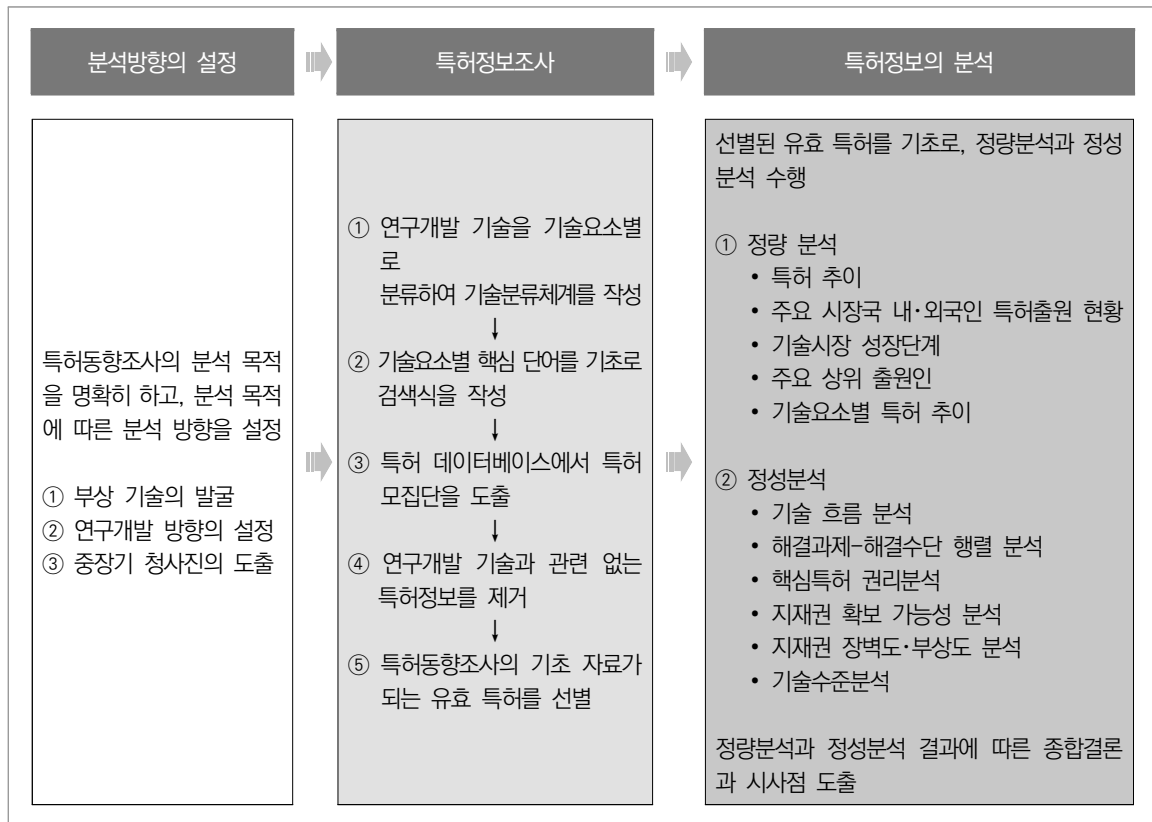
특허동향조사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 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동향조사는 기술 범위 및 기술 내용에 적합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정량 분석 및 정성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허정보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도출하여 검색식을 작성하여 모집단을 도출한 뒤 특허 모집단에서 기술 내용과 관련 없는 특허정보를 제거하여, 특허동향조사의 기초 자료가 되는 유효데이터를 도출한다.

▼ 그림 8 | 특허정보분석 세부절차



이러한 유효데이터를 기초로 특허 전망,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기술시장 성장 단계, 주요 상위 출원인, 세부기술별 전망 등을 포함하는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주요 시장국 연도별 특허 추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국의 R&D 기술(기술요소 전체)에 대한 연도별 특허 추이를 살펴, 각국에서의 특허 증감과 타국가 대비 한국의 기술적 위치를 분석한다.
- 2)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주요 시장국별 출원인 국적을 구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원 분포를 파악하고, 주요 시장국별 내·외국인에 의한 연도별 특허 추이를 살펴, 각국별 자국 기술력, 국외 기술 유입 현황, 해외 기업의 진출 가능성, 기술 시장성 등을 분석한다.
- 3) 기술시장 성장단계: 전체 출원 기간을 일정한 시간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출원 건수와 출원인 수의 증감 변화를 토대로 R&D 기술 분야의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파악하며, 주요 시장국별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비교하여 한국의 기술적 위치를 분석한다.
- 4) 주요 상위 출원인: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R&D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상위 출원인(상위 10~20위)을 도출하여, 주요 상위 출원인의 성격(산·학·연), 출원 국가, 출원 증

기술 및 주력 기술 분야를 분석한다. 최상위 출원인, 최근 높은 출원증가율을 나타내는 출원인, R&D 기술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기술을 보유한 출원인의 기관 현황, 최근 기술개발 쟁점 등에 대한 주요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핵심 출원인을 도출한다.

- 5) 기술요소별 특허 추이: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기술요소별 연도별 특허 증감 및 출원 점유율을 살펴봄으로써, R&D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부기술 분야를 도출하고 기술요소별로 주요 시장국 연도별 특허 추이,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기술시장 성장단계 및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을 수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술 요소별 정량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분석 방향 설정 단계에서 결정된 조사 방법에 따라 핵심 특허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된 핵심 특허를 기초로 기술흐름 분석, 해결과제-해결수단 행렬 분석, 핵심특허 권리분석 등 분석 목적에 적합한 정성분석이 이루어진다. 특허동향조사의 주요 정성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술 흐름 분석: 일정 기준(기술요소별, 주요 출원인별 등)에 따라 핵심 특허를 선별하여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핵심특허를 나열하고, 시계열적 흐름에 따른 기술 발전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도출한다.
- 2) 해결과제-해결수단 행렬 분석: 핵심 특허 각각에 대하여 해결과제(목적) 및 해결수단(구성)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2차원 행렬 위에 핵심특허를 대응시켜서 관심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집중 영역과 기술 공백 영역을 파악하며, R&D 기술이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지를 살펴 R&D사업을 진단하거나, 기술공백 영역을 기초로 중장기 R&D 목표의 설정, 신규 R&D분야 도출, R&D 방향의 재설정 등 시사점을 도출한다.
- 3) 핵심특허 권리분석: R&D 기술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핵심특허 각각에 대한 권리상태, 기술적 특징, 권리범위, 등록 과정 등을 조사하고, R&D 기술이 선행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 선행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한 설계안의 도출, R&D 시 참조 가능한 자유 실시 기술의 도출 등 분석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도출한다.
- 4) 지재권 확보 가능성 분석: R&D 기술의 특허출원을 가정하여 당해 기술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문헌을 조사하고, R&D 기술과의 기술적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R&D 기술의 특허등록 가능성을 진단한다.
- 5) 지재권 장벽도 분석: R&D 기술과 연관성이 높은 선행특허와 R&D 기술 간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특허 장벽도를 도출하고, 주요 상위 출원인의 시장 점유율 및 시장 경쟁수준을 조사하여 시장 진입 경쟁수준을 도출한 후, 특허 장벽도 및 시장 진입 경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D 기술 분야의 지재권 장벽수준을 판단한다.

- 6) 지재권 부상도 분석: R&D 기술 분야의 출원 증가율, 최근 출원 점유율 및 외국인에 의한 출원 증가율(특히 시장 확보력)을 기초로 지재권 부상 정도를 수치화하여 R&D 기술 분야의 지재권 부상 수준을 분석한다.
- 7) 기술수준분석: 기술수명주기, 인용도지수, 특허영향지수, 기술력지수, 시장확보지수의 분석을 통해 기술요소별·국가별 기술 수준을 도출하고, 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장 진입 경쟁 수준 분석을 통해 기술분류별·국가별 기술 독과점 수준을 조사하여, R&D 기술 분야의 기술 경쟁력 현황 및 시장 진입 용이성을 분석한다.

제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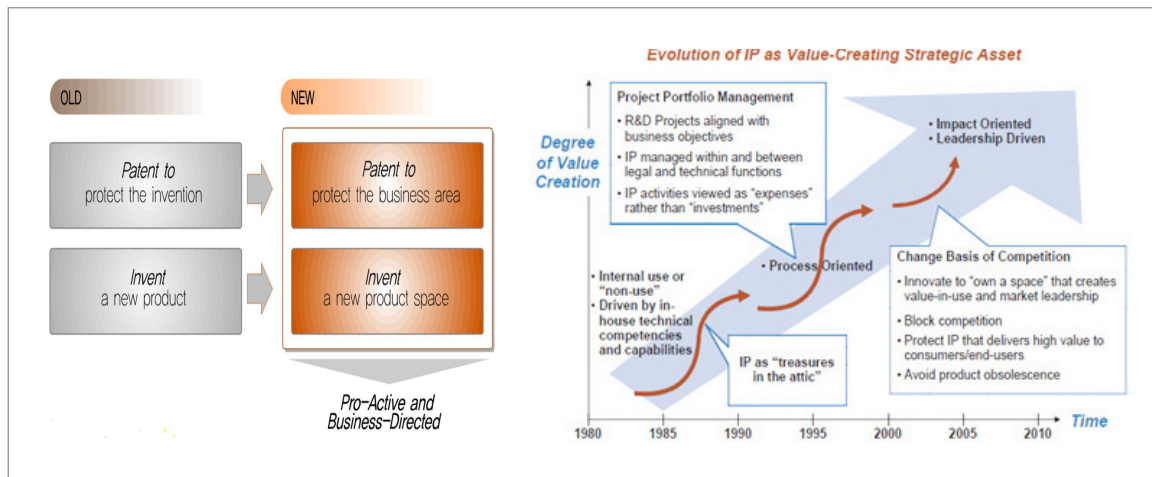
해외 주요국 및 국내 IP-R&D 정책 및 특허정보 활용 현황

I 미국

1. IP-R&D 정책 동향

미국은 80년대 후반부터, 시장에서 가치를 파악한 후에 R&D를 수행하여 IP 획득을 진행하는 IP-driven R&D를 추구하고 있다. IP-driven R&D는 시장 니즈를 차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가치(high value)의 지식재산권 개발을 지향하는 R&D 전략을 의미⁷³⁾하며 5~10년 후 미래시장을 주도할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portfolio)와 이러한 특허들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그림 9 | 미국의 IP-DRIVEN R&D



출처: Hastbacka, M. A.(2004), "The New Paradigm in US R&D: IP-Driven Product &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Management Journal, 1-3.

73) Hastbacka, M. A.(2004), "The New Paradigm in US R&D: IP-Driven Product &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Management Journal, 1-3.

미국 OSTP는 미국혁신전략(15)에서 실험실창업(Lab-toMarket)⁷⁴⁾을 유도하기 위해 연방 기금 R&D에서 창출된 특허의 관리 최적화 등에 대한 계획수립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국립과학 재단(NSF), 에너지국(DOE), 국립보건원(NIH)에서는 벤처기업이 정부 소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 R&D 단계별 특허정보 활용 현황

(1) R&D과제 기획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미국의 행정부처는 각 부처 주관하에 특정 산업에 대한 경쟁력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예컨대 상무부 주관으로 작성된 자동차 산업경쟁력분석보고서는 향후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발전 되어야 할 것인지를 특허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보고의 분석기법은 특허지표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다양한 지표로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분석 보고서는 ① 상위 인용 특허 목록, ② 전체적인 특허활동 동향, ③ 국가 간의 동향 비교, ④ 전체 카테고리의 Patent Family에 의한 상위 랭크 기업, ⑤ 국가와 상위 10위 안의 기업에 대한 랭크 기업, ⑥ 전진하는 기업과 후퇴하는 기업, ⑦ 라이프 사이클 통계치의 7가지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① Number of Patent Families(국가별, 기업별 특허활동 분석), ② Citation Index(국가별, 기업별 경쟁력 분석), ③ Science Index(과학논문 및 기초과학의 연계성 분석), ④ Innovation Speed Index(해당 기술의 최신성 및 기업의 기술진화 속도 파악)의 4가지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2) R&D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미국에서 민간의 R&D지원을 위한 과제의 선정에 있어 특허정보의 활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법(the Small Business Act)에 의거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사업이다. 그외 중소기업 기술이전법(the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Act)에 의거한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사업도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SBIR 사업이란 미국 국립보건원(NHI)을 비롯한 미국 국가 기관이 각 기관과 관련있는 연구 과제를 공모하여 선정된 기관에게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의 3개

74) '기술이전' 또는 'R&D 사업화'에 해당하는 실험실창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연구소와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업화 목표에 대한 추적관리 강화.

년 간 지원가능하다. 중소기업법 제9조 (j)에 근거하여 연방정부는 SBIR 프로그램의 일반 행위를 위한 'SBIR 프로그램 정책 지침'을 제정하였다. 동 정책 지침은 참여 연방기관에게 SBIR 프로그램의 일반 운영을 위한 안내를 제공할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R&D과제 선정을 위한 제안서((Proposal)에는 기업의 상업화 실적(Documentation of commercialization record of firms with multiple Phase II awards), 상업화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 중 상업화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상업화 계획(Commercialization Plan)에는 ① 회사정보(Company information), ② 고객과 경쟁사(Customer and Competition), ③ 시장(Market), ④ 재정(Financing-Plans for securing necessary funding in Phase III), ⑤ 조력과 멘토링(Assistance and mentoring) 외에 ⑥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부문은 특허 상태, 기술 선도, 영업비밀 또는 기타 충분한 보호를 달성하여 상업화 단계를 실현하고 경제적 가치 획득을 위한 방안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미국의 특허정보 분석의 최근 동향은 국가기관 단독의 특허동향 및 보고서 제공이 아니라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새로운 지표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예컨대, 미국 New Innovator 보고서는 미국 상무부(DOC) 기술정책협의회와 민간 컨설팅 회사인 CHI사가 1998년에 발행한 것으로서 미국의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5개 기술 분야를 미국과 EU의 15개국 및 기타 14개국에 대한 국가의 특허경향 및 경쟁력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standard indicators(patenting activity, current impact index(CII), activity index(AI), technological strength(TS), non-patent reference(NPR) score technology cycle time(TCT) 등의 창조적인 지표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IP-R&D 성공사례: 질레트의 R&D 부서와 지재 담당부서의 연계

미국의 질레트는 세계 최대의 면도기 회사로서 지적재산 담당자가 R&D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쟁사의 관련 특허를 분석하고 자사의 특허전략을 세움으로써 특허망을 잘 구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질레트는 자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7개의 핵심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특허화하고, 그 특허들의 장단점을 재분석하여 회피 가능한 수단들을 설계하여 총 22건의 특허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망을 형성하여 기술개발의 성과를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II 유럽

1. IP-R&D 정책 동향

유럽은 4차 EU 프레임워크(94~98, 13,215 million) 중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INNOVATION 프로그램은 연구과제 추진 시, 선행 특허조사를 통해 중복투자 방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Quick Scan 활동을 개시하였다. Quick scan은 연구 후 사업화, 중복투자방지, IP에 대한 인식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Quick scan을 통해 EPO는 '96년 INNOVATION의 100여개 제안과제를 검토하였고 87% 과제가 중복성의 여지가 있음을 판단하였으며, 해당 제안과제 관련 중복 특허정보를 제공하므로 연구방향 수정 유도하고 있다.

2. R&D과제 발굴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현황

EU레벨이나 EU회원국 정부레벨에서 R&D 과제발굴 단계에서의 특허정보 활용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다만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을 위하여 EU차원에서 각종의 지원제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예로는 유럽의 경우 선행기술 신속조사(Quick Scan)사업과 제안서 작성비용보상(Explanatory Award) 사업을 들 수 있다. 민간의 혁신역량이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선행특허를 조사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자금지원 프로그램(Quick Scan, Explanatory Award)을 구축하고 있다.

선행기술 신속조사(Quick Sacn)사업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발하려는 기술에 관한 선행특허를 신속하게 조사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나아가 기술의 중복개발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관련 기술에 관한 시장동향, 경쟁상황, 기술동향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이 조사보고서는 기업이 용자, 합작 또는 제휴를 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의 Quick Scan 프로그램은 사업참여자가 단기적으로 기술 및 특허 데이터베이스 조사에 대한 기술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적 상황에 대한 통찰과 새로운 시장의 탐색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혁신 역량제고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안서 작성비용보상제도(Explanatory Award)는 유럽공동체의 연구기술개발(RTD) 프로그램에 제출하기 위한 제2단계 제안서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그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제안서의 총 적정비용의 75%를 지원한다⁷⁵⁾. 보조한도(Maximum total eligible cost)는 30,000유로이며, EC는 최대 22,500유로까지 지원(maximum EC contribution)해 주고 있다. 그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다. Explanatory Award를 받고 준비하여야 할 제2단계 제안서의 유형에는 협력 연구(CRAFT), RTD 프로젝트, 데모 프로젝트, 복합 R&D와 데모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등이 있다.

자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은 당해 기술의 신규성 확인(Novelty verification)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반드시 국제특허조사(world-wide patent search)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외 자세한 프로젝트 계획과 2단계 제안서의 작성(Detailed project planning and writing of the Step 2 proposal), 실행가능성 검토-탐상연구, 문헌 조사, 위험 분석(Feasibility check - Use desk studies, literature survey, risk analysis, not technical research to determine if the project is realisable), 이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장분석(Market analysis to assess possible exploitation), 추가 참여자를 위한 조사(Search for additional participants)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P-R&D 성공사례: 필립스의 특허 중심 경영

필립스(Philips)사는 1985년 경영구조를 전환, 자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특허 중심 경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 권 전략의 핵심은 강력한 지재권 포트폴리오의 창출 및 구축, 자사의 지재권 포트폴리오로부터 최대의 가치 창출, 지재권 위험 관리 및 신속한 해결, 기술주도로 업체 간 협력 및 단독으로 기술 표준화이다.

필립스는 독립적인 지재권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독립채산제의 단일 조직으로 운영되는 약 500명 규모의 사업본부 형태로서, 변호사가 75명이고 전 세계 14개국에 분소를 두고 있다(2008년 기준).

지재권조직의 4개 그룹 중 하나인 Patent Department는 특허출원뿐 아니라 각 기술 분야별로 기술동향 및 특허분석을 하여 특허 개발을 위한 과제를 R&D 부문에 제안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필립스의 경우 내부 검색시스템이 제공되고 있고 검색을 위한 사전 분류작업을 별도의 검색부서에서 수행을 하여서 분류체계별로 검색을 수행하여 검색시간을 절감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며 검색한 결과를 연구원들에게 신착정보 서비스로서 메일로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분석의 기능을 50여 가지 제공하여 다양한 형태의 특허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인프라를 구축하여 놓았으며, 주기적으로 특허평가를 실시하여(3년, 5년, 10년 단위) 특허권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75) Fif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Community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ivities, Proposal For Financial Support from the EC for S M E Specific Measures Exploratory Awards(Step 1) CALL S M E 1999/1, Edition January 2000. at 1.

III 일본

1. IP-R&D 정책 동향

일본은 「16년 지식재산추진전략」에 따라 오픈이노베이션 및 상용화를 위한 대학·정부 R&D의 IP 전략 강화를 추진하였다.

국가 R&D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 위탁 R&D 관리지침(15, 경제산업성)’을 통해 국가 R&D 상업화 촉진 위한 R&D 전 단계 IP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지식재산 추진전략은 관계 부처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국가 R&D IP 관리에 대한 전략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R&D 프로젝트의 경우 과제 공모, 과제수행, 과제 종료 전 단계에 걸쳐 IP를 관리하며 IP위원회를 연구수행 전 단계에 참여시키고 있다. 과제공모 시에는 연구위탁자(발주처)는 프로젝트 목적, 상태 등에 따라 과제에 대한 지식재산 관리 방침을 제시하고 수탁자가 해당 조건을 따르도록 계약하게 되어 있다. 과제수행 때도 마찬가지로 위탁자는 연구 성과 관리뿐 아니라 지식재산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방침에 따라 지식재산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되어 있으며, 과제 종료 이후에는 위탁계약서에 근거하여 R&D 성과관리, 지식재산 소유권 등에 대해서 관리한다.

2. R&D과제 발굴 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현황

일본은 특허유통지원 차트에서 단순한 기술개발활동뿐만 아니고 기술별로 출원 건수가 많은 기업에 대해 기술개요, 기술이전사례, 주요 제품 및 기술분석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테마기술에 대해 주요 기업의 기술 요소 과제별 보유특허 리스트를 게재함은 물론 주요 기업의 기술개발 거점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특허 4계보의 내용은 일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각 기업의 재무데이터와 특허정보를 정해 개발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최근의 특허 출원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하고 특허출원의 포트폴리오를 추정하고 동시에 이러한 실증 데이터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기술개발시장에서의 각 사의 경쟁력 등을 지수화하여 제공하는 분석 보고서이다. 특허 4계보는 일본의 민간 컨설팅 기업인 IPB(Intellectual Property Bank)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로서 특허정보와 경영 및 재무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기업의 현황 파악과 사업전략, R&D 전략 및 지적재산전략 등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의 특허정보 분석 방법과 분석결과들을 담고 있다. 특히 동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경영, 재무지표와 시장평가 및 특허관련지표를 통해 도

출된 종합지표의 순위를 바탕으로 상위에 랭크된 기업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 조사를 추가하고 있다.

IP-R&D 성공사례: 카네카(カネカ, KANEKA) 그룹

카네카(カネカ, KANEKA) 그룹은 일본 플라스틱가공 전문업체인데, R&D와 관련하여 ‘특허전략 입안·추진 보고서’를 반기마다 작성하고 있다. 동 그룹은 사업전략, R&D 전략, 특허전략이 삼위일체된 R&D형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행하면서, 특허포트폴리오 관리를 베이스로 한 경쟁력 있는 사업전개를 회사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다. 특히 카네카 그룹에서 지식재산부는 사장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고, 카네카 그룹 전체의 지적재산 전략구축과 포트폴리오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R&D 부분과 사업 세그먼트 각각에 지식재산위원을 창구로 배치하고 있다. 권리행사가 가능한 강한 특허를 베이스로 사업수익에 공헌하는 강한 특허망 구축이 카네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관리의 핵심이다. 특허맵을 활용하여 경쟁 상황을 가시화하고, 특허전략을 수립하여 장래 비전에 대응한 특허군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있다. R&D 부분인 ‘특허전략 입안·추진 보고서’를 반기마다 작성, 갱신해서 삼위일체의 전략 수행을 위한 기점(起点)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계층별 지적재산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풍토조성, 특허마인드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카네카 그룹은 타사와의 분쟁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해 신규 테마제안, 사업제안, 사양변경 등의 과정에서 사전에 특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Patent Clearance를 확보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타사특허의 침해 행위나 모방품에 대해서는 침해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있다.

IV 한국

1. IP-R&D 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정부 R&D 과제의 기초연구, 응용 및 개발연구 등 모든 연구단계에서 ‘특허동향조사’를 대통령령 제28210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령을 근거로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R&D를 촉진하고 R&D 결과가 우수한 특허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R&D 기획, 과제 선정, 평가 과정 등에서 특허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R&D 방향을 설정하고 중복 연구 수행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근거 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210호)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⑤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004년 12월 제16회 국과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 각 부처 R&D사업과 연계된 특허동향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국가R&D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에 특허동향조사 실시 및 특허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R&D 활용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통해 R&D(응용·개발)과제 수행 전 과정에서 IP 전략(IP-R&D) 적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R&D 각 단계별로 IP 전략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 ①기획단계에서는 IP 확보 가능성이 높은 R&D 타겟 발굴 ②수행단계에서는 개념특허 출원, 무빙 타겟, 원천·표준 특허군 발굴 및 확보를 위한 IP 포트폴리오 수립, 최적 권리화 설계 등의 전략을 적용 ③활용단계에서는 IP level-up, 패키징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더불어 원천·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연구비 연 10억 원 이상인 R&D 과제의 50%에 대해 IP-R&D 전략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특허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으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짚어냈다. 이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방안을 수립하였다.

▼ 표 25 | 정부 R&D 기획 및 수행단계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관련 주요 논의 내용

시기	주요 내용
2004. 12.	국가R&D 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계획 수립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5. 3.	국가R&D사업 연구기획단계 특허동향조사 제도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 2항)
2010. 12.	특허청과 R&D 부처가 특허동향조사 비용 공동 부담 합의 (제5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 5.	기획재정부 정부 R&D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특허동향조사항목 마련 (부처가 특허동향조사 예산 요구 시 특허청과 5:5 매칭)
2016. 12.	지식재산(IP) 전략과 R&D 연계(IP-R&D)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1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3.	R&D 전 과정에 IP 전략 연계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R&D 실행방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 R&D과제 발굴단계에서 특허정보 활용 현황

특허청에서는 '08년 4개 과제의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0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결을 거쳐 IP-R&D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16년까지 IP-R&D는 중소·중견기업 1,205개, 대학공공연 363개를 합해 1,500여개가 진행되었다.

▼ 표 26 | 민간 및 정부 IP-R&D 지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민간	4	122	115	122	118	158	177	186	203	1,205
정부	-	-	-	-	59	68	78	78	80	363
합계	4	122	115	122	177	226	255	264	283	1,568

출처: 현장에서 꼭 필요한 IP-R&D 전략(2018), 한국특허전략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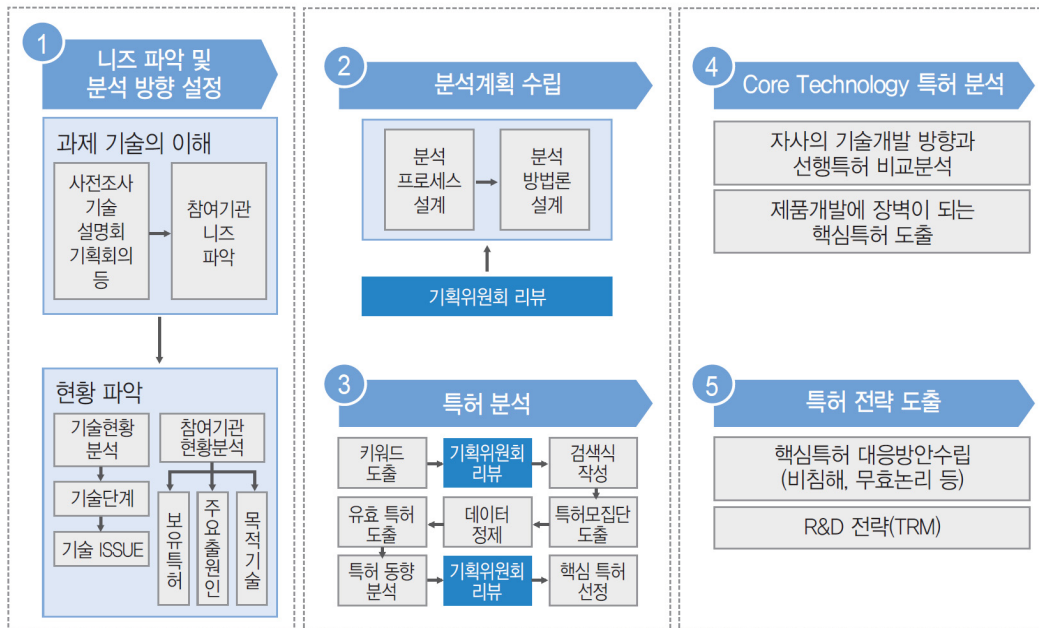
지원내용은 특허동향조사와 선행특허조사로, 특허동향조사는 기술동향, 주요 R&D 주체의 R&D 동향 등을 파악하거나, R&D 방향 등을 도출하기 위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활동으로 R&D 효율화를 지원한다. 선행특허조사는 수행과제 및 주관기업 선정 단계에서 R&D과제가 선행문헌에 공개된 것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활동으로 중복연구를 방지하여 R&D 중복 투자를 차단하고 있다.

IP-R&D 성공사례: (주)글루칸의 R&D 수행과제의 특허동향조사

▶ (주)글루칸의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조절 글로벌 건강기능 식품개발'

- (주)글루칸 '다당류를 이용한 면역조절 글로벌 건강기능 식품개발'에 대한 특허기술동향조사는 기술 공백을 찾고 R&D 방향을 설정하는 '일석이조'의 특허전략 방법론을 개발하여 특허권리확보전략 및 시장경쟁력 확보에 기틀 마련
 - (주)글루칸은 발효와 식품소재를 비즈니스 모델로, 면역기능 소재인 β -glucan을 다양한 건강 제품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는 기업임
 - (주)글루칸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R&D 수행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통해 회사의 마스터플랜은 물론 향후 관련 주제의 예측 및 전망이 가능해져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지 방향을 도출하게 됨
 - R&D 수행과정에서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기술력과 시장성을 확보, β -glucan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β -glucan의 제법·응용·확장의 출원 전략을 창출함
- (주)글루칸은 흑효모(Aureobasidium pullulans)에서 유래한 β -glucan을 포함하는 면역조절(면역 반응 억제) 기술과 관련해 선도기업 또는 경쟁기업의 보유 특허 분석을 통한 R&D 방향성 도출, 그리고 IP 활용화 방안 연계하도록 분석 계획을 수립하였다.
 - 1) 해외선도기업 주요 특허분석: 주요 특허의 제조, 응용, 확장의 순환구조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 2) 해외 선도기업 주요 특허의 연도별 기술흐름 파악: 제조, 응용 및 확장으로 구분해 제시
 - 3) OS-Matrix분석: 해외 선도기업과 글루칸의 특허 포트폴리오 비교
 - 4) 지재권 확보 전략수립: 글루칸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조 분야 출원의 필요성 제시
 - 5) 신규 R&D 방향 제시: 해외 선도기업의 주요 특허 중에서 글루칸이 차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

▼ 그림 10 | R&D 수행단계의 특허동향 추진 프로세스



▼ 그림 11 | (주)글루칸의 특허분석 톨

	β-glucan제조	항암활성	면역증진	특이질병 저항	면역조절	건강증진제(식품)
Aureobasidium pullulans 변이주	3		2			
Biothera(Alpha Beta Technology), Sloan-Kettering Institute						
β-glucan 선정 코드	1	1				
1991 1992		2				
1993 1995			7			
1997 1999						
2003 2007			2			
2008 2010						
2012 2013						
활산화 반응	1					
분자량						
100kDa 이하	2	6		5		
100~500kDa	8	5				
500kDa 이상	3					
β-glucan(β-1,3 및 β-1,3/1,6)		5	8			3
β-1,3 및 β-1,3/1,6				3		
β-1,3 및 β-1,4	1					
β-1,6 결합 4개 이상						0000
β-glucan과 다른 소재 혼합						
광생물질				2		
mannan(mannose)						1
약물 조성 및 투여		14		4	1	
유전자						
DNA, RNA, Plasmid						
키토산						
아스코르브산						
indol acetic acid						
zinc						
보체 단백질 결합		2				
EGF receptor antagonist		5				
TLR agonist			2			
특이적 항체 결합	제조		5			확장

- 글루칸의 특허기술동향조사인 국가별·경쟁사별·시장별 등 특허동향 분석과 IP history 및 주요 특허 30개를 분석한 OS-매트릭스 등 심층분석, 그리고 핵심특허 대응분석을 통해 연구의 효율성 및 차별성을 강화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V 소결

조사한 해외 국가가 R&D 전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조사되지 못했으나 R&D 과제 발굴 단계, 과제 선정 단계, 과제 수행 단계 등 단계별로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상무성의 자동차 산업경쟁력 분석,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술전략맵이나 일본 특허청 기술 분야별 특허맵과 같이 주요 국가들은 대형 R&D 과제 기획 시 특허동향조사를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R&D 과제 선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예로는 미국 SBIR 사업, 유럽 Quick Scan 사업, 유럽 Explanatory Awards 사업이 있는데, 소형 R&D 사업 제안서 제출 시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중복 R&D 투자를 방지하고 특허가 가능한 과제에 R&D 투자를 집중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R&D 사업 효율화를 위한 특허정보 활용 확산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기획단계에서의 특허동향조사뿐만 아니라, R&D 전 과정에서 IP 전략과의 연계(IP-R&D)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특허동향조사를 적용한 정부 R&D 기획의 경제적인 성과 외에도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과제의 차별화 전략을 도출한 사례들이 전 산업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해외 주요국 및 국내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현황

I 대만

대만은 생기신약(生技新藥)산업발전 조례에 의거해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생기신약(生技新藥)산업발전 조례 제5조에는(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치) 바이오기술 및 신약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은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R&D 및 인재교육에 투자된 자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단, 특정 연도의 R&D 비용이 과거 2년간 평균 R&D 비용을 상회할 경우, 또는 특정 연도의 인재 교육비용이 과거 2년간 평균 인력교육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 대신에 해당 초과금액의 50%를 지불법인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선택가능하다.

적용 대상 기업은 '투자로서의 바이오기술 및 신약산업 육성에 관한 비용의 경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1. 바이오기술 및 신약산업의 R&D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해외 당국에서 신약의 인체실험, 현장시험 및 판매(또는 생산)에 관해서 라이선스 승인을 취득한 기업
2. 전년도에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관련된 비용이 순이익의 5%를 넘거나 또는 연구개발비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 또는 전년도에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관련된 비용이 순이익의 10%를 상회한 기업
3. 전문 자격을 가진 5명 이상의 종업원 고용한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적용 대상 비용은 '투자로서의 바이오기술 및 신약산업 육성에 관한 비용의 경감에 관한 규칙 제 6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1.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상근직원, 임원, 어드바이저의 급여
2. 대학(혹은 기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전문연구원 고용 비용
3. 의학연구기업의 R&D 전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관한 작업의 위탁에 관련된 비용
4. 출납에 대한 기록이 있고, 연구에 사용된 비품, 소모품, 시료
5. 연구에만 사용되는 신규설비 취득비용
6. 연구에만 사용되는 건물 월세 및 감가상각비

7. 연구에 필요한 특허기술 전문지식 또는 저작권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비용

8. 제조기술의 개량에 관한 이하의 비용

- 설비의 생산성 향상
- 장비 제조 또는 설계
- 바이오기술 및 신약 생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개량
- 바이오기술 및 신약 생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설계

9. 정부 경제부가 초빙한 대표기관 및 전문가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의 비용

- 대학(혹은 기타 외부기관)위탁 또는 전문연구원의 고용 비용
- 의학연구기업의 R&D 전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관한 작업의 위 부탁에 소요된 비용
- R&D에 관련된 기타 비용

대만의 생기신약(生技新藥)산업발전 조례에는 ‘연구에 필요한 특허기술 전문지식 또는 저작권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비용’의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연구에 필요한 특허기술 전문지식은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분석조사를 포괄한 특허정보 조사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정보 조사는 특정한 분야의 선행기술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인 특정기술 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특정 기술 분야 조사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관심분야의 특허동향을 파악하거나 경쟁사의 동향 파악, 특정문제를 풀기 위해 라이선싱할 수 있는 기술을 찾는 것들을 의미한다. 특정기술 분야조사는 보다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R&D의 추진을 위하여 R&D 테마와 관련된 특허정보를 폭 넓게 조사 및 분석할 수 있는 활용방법으로서 ①기초 정보조사: 관련자료를 수집, 추출, ②분류 정보조사: 기술분류, ③분석 정보조사: 기술분류 및 분석서지사항 조사, 특허성 조사, 특정 기술 분야 조사와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만의 생기신약산업발전 조례에 따라 바이오기술 및 신약개발에 종사하는 기업이 특허정보 조사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며 연구개발비 35%에 대해 법인세의 50%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단,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가 과거 2년간 평균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 공제액은 해당 초과금액의 50%).

대만의 생기신약(生技新藥)산업발전 조례

제1조

이 법은 중화 민국의 경제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중화 민국의 생명 공학 및 신약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이 법은 생명 공학 및 새로운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단, 그러한 다른 법률의 조항이 여기에 포함된 것보다 더 유리한 경우 다른 법률의 조항이 우선한다.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 1항. '생명 공학 및 신약산업'은 인간, 동물 및 식물이 사용하는 신약, 고위험 의료 기기 및 신생 생명 공학 및 제약 제품을 다루는 산업을 말한다.
- 2항. '생명 공학 및 신약 회사'라 함은 회사법에 따라 조직 및 설립되어 신약, 고위험 의료 기기, 신생 생명 공학 및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에 종사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 3항. '신약'이라 함은 중앙 관할 당국이 확인한 새로운 성분, 새로운 치료 효과 또는 새로운 투여 방법이 있는 약물을 말한다.
4. '고위험 의료 기기'는 중앙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임상 시험이 필요한 유형의 III 의료 기기 또는 유형의 II 의료 기기를 의미한다.
5. '신생 생명 공학 및 의약품'이란 행정부가 전략적 개발 방향을 가지고 지정한 생명 공학 또는 제약 품목을 말하며 관련 당국, 학계 및 연구 기관의 대표와 함께 관할 당국이 검토한 후 발표한다.

제4조 이 법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경제부이다.

제5조

기업은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R&D 및 인재교육에 투자된 자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단, 특정 연도의 R&D 비용이 과거 2년간 평균 R&D 비용을 상회할 경우, 또는 특정 연도의 인재 교육비용이 과거 2년간 평균 인력교육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위의 내용 대신에 해당 초과금액의 50%를 지불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선택가능하다.

생명 공학 및 신약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 공학 및 신약 회사는 법인세 과세 후 5년 동안 R&D 및 인력교육에 투자된 총 자금의(R&D) 35%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특정 연도의 R&D 지출이 지난 2년간의 평균 R&D 지출을 초과하거나 특정 연도의 인력 교육 지출이 지난 2년의 평균 인력 교육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 50% 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할 법인세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납입 법인세에 공제된 총 투자 금액은 생명 공학 신약 회사가 1년에 납부하는 법인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기 5년 기간의 마지막 해에 상쇄될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그 적용 범위, 관할 당국, 신청 기한, 신청 절차, 집행 기간, 세액공제율 및 기타 관련 사항은 행정부가 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 및 수정을 위해 2년마다 검토한다.

제6조 적용 대상 비용은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1. 연구 및 개발에 종사하는 상근직원, 임원, 어드바이저의 급여
2. 대학(혹은 기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전문연구원 고용 비용
3. 의학연구기업의 R&D 전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관한 작업의 위탁에 관련된 비용
4. 출납에 대한 기록이 있고, 연구에 사용된 비품, 소모품, 시료
5. 연구에만 사용되는 신규설비 취득비용
6. 연구에만 사용되는 건물 월세 및 감가상각비
7. 연구에 필요한 특허기술 전문지식 또는 저작권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비용

8. 제조기술의 개량에 관한 이하의 비용

- 설비의 생산성 향상
- 장비 제조 또는 설계
- 바이오기술 및 신약 생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개량
- 바이오기술 및 신약 생산 프로세스 또는 시스템의 설계

9. 정부 경제부가 초빙한 대표기관 및 전문가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의 비용

- 대학(혹은 기타 외부기관) 위탁 또는 전문연구원의 고용 비용
- 의학연구기업의 R&D 전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관한 작업의 위 부탁에 소요된 비용
- R&D에 관련된 기타 비용

제8조

생명공학 및 신약회사가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i)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한 이사의 과반수 득표로 채택된 결의안을 통과해야 한다. ii)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주인수권 증서 보유자는 합의된 가격으로 특정 수량의 주식을 청약할 수 있다.

규정된 가격의 금액은 회사법 제140조에 규정된 최소 요건, 즉 주식의 액면가에 적용되지 않으며 집행된 주식 청약은 제7조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된다.

생명공학 및 신약회사가 제7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법 제26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 1항에 따라 최고 경영진 및 기술 투자자는 취득한 주식 증서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첨단 생명 공학 및 신약 기술을 도입하거나 이전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자금으로 구성된 조직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생명공학 및 신약회사의 주개발자가 정부 연구 기관의 연구원인 경우, 연구원은 회사 설립 당시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으며 설립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사 또는 과학 및 기술 자문위원회는 공무원법 제13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전 항의 연구 기관 및 연구원은 심사원과 연계하여 행정부가 정한다.

제11조

생명 공학 신약의 기술 향상, 산학연 R&D 강화, 생명 신약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술 연구 기관의 R&D 인력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생명 공학 신약 회사의 R&D 고문 또는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다.

제12조

바이오 신약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부 부서에서는 바이오 신약 출시 전 통과해야 하는 현장 시험, 임상 시험, 제품 등록 등을 검토하고, 각 중앙 관할 당국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규정하고 검토 및 승인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

제13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II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RDA)' 제도는 인건비 이외의 R&D 비용 및 투자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R&D 지원 세제로 '12년부터 본격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추가 공제율은 '12년 도입 당시 40%, '13년 54%, '14년 6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대상 비용은 납세자 자신의 R&D 신청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R&D 활동(이하, 적격 R&D 활동)에 직접 귀속하는 비용으로, R&D 신청은 R&D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기업청에 제출하게 되며 R&D 활동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등을 추계하고, R&D 프로젝트 종료 후에 산정되는 실적 시간과의 비교를 통해 공제액을 정산한다.

적격 비용은 R&D의 성과 실현을 위한 모든 지출(회계상 '비용'에 한정되지 않음)이며, 납세자 자신이 행한 지출을 의미한다. 적격 R&D 활동의 4유형은 다음과 같다.

- 신기술이 이용된 제품, 제조 프로세스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산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 신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
- R&D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에 관한 조사
- 프로세스 대상의 기술적 연구(예: 제조공정이나 소프트웨어 개량) 단, 프로젝트 관리 등의 간접업무, 프로토타입 제작, 시장조사, 특허신청·유지, 생산 준비는 R&D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활동으로 규정한다.

RDA 대상 비용은 적격 R&D 활동에 직·간접 관련된 비용이며 임금, 설비의 감가상각비, 자금조달 비용, 토지 매입·개발비용, 일반 용도의 IT기기, 중고자산, 에너지투자공제 또는 환경투자공제가 인정된 투자의 비용은 RDA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외부에 위탁된 연구 활동에 관한 비용은 RDA의 대상이 아니나, 적격 R&D 활동과 관련하여 위탁된 작업의 위탁 내용이 WBSO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프로토타입 제작 및 테스트를 위탁한 비용은 적격 비용으로 포함한다.

공제금액은 공제기초금액×공제비율로, 공제기초금액은 R&D로 인정되고, 월 평균 R&D 시간이 150시간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제기초금액은 실적 금액이 아닌 고정금액(R&D 1시간당 15유로)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연간 적격 비용 합계가 5만 유로를 넘을 경우에는 고정단가를 적용하여 공제기초금액을 계산하거나 실적비용을 공제기초금액으로 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제 비율은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다(12년 40%→13년 54%→14년 60% 등). 공제 한도액은 없으며 RDA에 의해 과세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통상적 법인세 원칙하에 1년간 환급 또는 9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RDA)의 적격 비용 중 산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 신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비용은 특허조사 및 분석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Research and Development Allowance(RDA)에서 R&D 비용의 범위

1.3 Tax policy considerations relating to R&D incentives

1.3.6 Definition of R&D for tax purposes

R&D 인센티브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세금 부과와 관련된 R&D의 정의이다. 12b 조 CITA(혁신박스)에서는 R&D나 무형 자산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혁신박스를 고려한 특별한 정의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중간생략)

Wet vermindering afdracht loonbelasting en premie volksverzekeringen 1995(WVA) 및 Afbakeningsregeling speur-enontwikkelingswerk 1997(및 이후 버전)의 제1조에 의하면 R&D를 혁신 활동 또는 검색 및 개발활동으로 정의한다.

EU 국가에서 R&D 활동은 다음 영역 중 하나로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1. 제품,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또는 그 일부의 개발.

이 개발에는 회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이 포함되며 다른 회사가 해당 주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이 없으나 기술적인 위험과 불확실성에 해결을 위한 솔루션인지가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R&D로 인정받지 못한다.

2. 새로운 기술 지식 창출을 위한 기술 과학 연구 수행 (일반적으로 혁신박스의 자격에 부합되지 못한 기본 연구를 포함한다).

3. R&D 활동의 기술적 타당성 조사(대부분 경제 및 재정적 타당성과 관련된 분석 제외).

4. 자체 회사에서 사용하는 생산 프로세스 또는 소프트웨어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술연구.

이러한 R&D 정의는 OECD 2002 Frascati 매뉴얼의 정의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WVA의 R&D 정의와 Frascati 매뉴얼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 WVA 정의는 Frascati 매뉴얼의 R&D 정의보다 넓다. 발명이 '전 세계에 새로운' 발명일 때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위의 WVA R&D 정의의 맥락에서는 R&D 활동의 결과가 납세자에게 새로운 것이기만 해도 된다.

이러한 WVA R&D 정의는 세금 인센티브 중 하나, 특히 혁신박스하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R&D를 정의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또 다른 하나는 혁신 데이터 수집 및 해석 지침에 관한 2005 Oslo 매뉴얼로, 혁신을 '(1)새롭거나 크게 개선된 제품(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형 또는 (2)프로세스, (3)새로운 마케팅 방법 또는 (4)비즈니스 관행, 작업장 조직 또는 외부 관계에서의 새로운 조직 방법'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1)과 (2)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III 영국

영국은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진 기업은 R&D 세제를 신청할 수 있다(항구법). 영국의 R&D 세제는 기업규모에 따라 중소기업⁷⁶⁾ 스킴(Scheme)과 대기업 스킴(Scheme) 2가지 스킴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 스킴은 특별 공제로 적격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손금산입하고 세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단, 하청으로 R&D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R&D 세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기업 스킴에 따라 적용된다. 대기업은 '15년 3월 31일까지는 특별공제 혹은 R&D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나, '16년 4월 1일부터는 R&D 세액공제로 단일화되었다.

중소기업 스킴의 경우 공제액은 적격 연구개발비×공제비율(225%)⁷⁷⁾로 계산되며 한도액은 없으나 하나의 R&D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세금감면액은 750만 유로이다. 특별공제로 인해 과세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통상 법인세의 원칙하에 1년간 이연 또는 무기한 이월 가능하며(관계사 공제(Group Relief)제도에 따라 75% 이상의 자본 관계 등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 그룹법인 간에 이익과 손실의 상쇄 가능), 중소기업의 과세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환급 선택이 가능하다. 즉, 특별공제액(적격연구개발비×225%)과 결손금액 중 적은 편에 14.5%를 곱한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다.

대기업 스킴의 경우 특별공제 공제액은 적격 연구개발비의 130%(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해 30%의 추가손금산입), R&D 세액공제 공제액은 적격 연구개발비의 10%로 계산된다. 특별공제액은 특별공제로 인해 과세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통상 법인세의 원칙하에 1년간 이연 또는 무기한 이월이 가능(관계사 공제제도에 따라 75% 이상의 자본 관계 등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 그룹 법인 간에 이익과 손실의 상쇄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도 R&D 세액공제제도하에서는 신청 시 특정 상황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R&D 세액공제액이 미납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현금 환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 1) R&D 세액공제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미지급 법인세 세액을 상쇄
- 2) 1)의 잔액이 R&D 세액공제액의 세금공제 후 실질가격보다 큰 경우는 R&D 세액공제액의 세금공제 후 실질가격까지 감액
- 3) 2)의 잔액에 대해서 적격 인건비 및 적격 인재파견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보험료 징수액의 합계액을 상한으로 인하여, 이 상한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 4) 3)의 금액에 대해 다른 사업연도의 미지급 법인세 세액을 상쇄
- 5) 4)의 잔액에 대해 선택 시 관계사 공제 제도 적용 가능

76) 영국에서 중소기업은 직원 수 500명 미만인면서, 연간 매출액 1억 유로 이하 또는 총자산 8,600만 유로 이하.

77) 적격 R&D 비용에 대해서는 125%의 추가손금산입.

- 6) 5)의 잔액에 대해 그 다른 세무상 부채를 상쇄
 7) 기업이 계속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의 잔액을 기업에 지불 가능

중소기업과 대기업 스킴의 대상이 되는 비용은 '기업은 과학 또는 기술의 진보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기업 자체 능력 배양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술 분야 전반의 진보를 창출해내는 것'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적격 R&D 비용은 R&D 프로젝트(직·간접적 활동)에 직접적·적극적으로 관련된 아래 ①~⑥의 비용이 해당된다.

- ① 인건비: 임원 및 종업원 인건비
 ② 인재파견 비용
 - 관련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대한 파견비용은 지출액 65%를 적격 비용으로 간주
 - 관련 당사자에 대한 파견비용은 파견지에 대한 지불과 파견지에서 지불한 관련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격 비용
 ③ 업무위탁비
 - (중소기업 스킴) 관련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대한 업무위탁비는 지출액의 65%를 적격 비용으로 간주하며, 관련 당사자에 대한 업무위탁비는 위탁업체에 대한 지불액과 위탁업체가 지불한 관련 비용 중 적은 금액이 적격 비용
 - (대기업 스킴) 일반적으로는 적격 비용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R&D 프로젝트에 대해 아래의 내용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에 대한 지출은 적격 비용
 • 특정기관(대학, 자선단체, 연구기관 등)
 • 개인
 • 개인만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④ 소모품비: 연료·수도광열비 포함, 소프트웨어는 미포함. 적절한 배분계산 필요
 ⑤ 제약업체의 임상시험참가비
 ⑥ R&D에 직접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료

R&D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활동 외에 **간접적인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R&D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실시된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한정한다.

-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 관리, 보안, 관리사무 업무, 재무인사 업무
- 연구설비 리스 등의 부수 업무
- 연수 업무
- 대학에서 수행되는 학생이나 연구자에 의한 연구

- R&D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검사, 조사, 샘플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
- **구체적 R&D 활동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조사**

영국의 경우, '구체적 R&D 활동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R&D의 과정으로 보고 R&D 세제혜택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허정보는 R&D 전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우선 연구기획단계에서는 연구과제 선택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특허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관심 분야에 대한 특허정보를 조사함으로써 현재까지의 기술동향 및 권리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한정된 기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개척대상 분야를 찾을 수 있으며,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채택, 수행하고 있는 특허맵 작성은 바로 이 유형에 해당된다. 특허맵은 특허정보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선도기업과 유사 분야 연구자의 기술력을 평가하는 전체적인 특허분석결과를 뜻하며, R&D 동향 및 중요 기술, 중요 특허를 파악하고 기술 분야의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R&D 측면에서의 자사의 위치를 설정하는 R&D 전략 수립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R&D 단계에서는 연구기획단계에서 설정된 R&D 방향에 대해, 특허 문헌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명세서에 수록된 기존 기술의 문제점 및 최신 기술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구체적인 R&D 수행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실제 R&D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Corporate tax Act, Finance Act에 근거하여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해 R&D 프로젝트의 간접적인 활동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즉, 기업이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외부에 위탁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은 750만 유로 이내에서 적격 연구개발비의 225%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되며, 대기업은 적격 연구개발비의 10%에 대해 R&D 세액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영국은 세제지원이 혁신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하에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R&D 세액공제 도입도 그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액도 특별공제의 추가 손금산입비율이 점차 확충되는 추세이다.

IV 한국

현재 R&D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규정되어 있다. R&D 세액공제 대상과 관련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 따르면 R&D는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활동으로 정의되고, 인력개발은 임·직원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또한 구체적인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서 언급하는 별표6(표 3-2)에 제시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자체 R&D와 위탁·공동 R&D,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 고유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공업·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인력개발은 위탁훈련비와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사내기술대학 운영,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 가. 자체연구개발(R&D 전담부서 및 연구소 직원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 원재료·시약류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이용료 등)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연구개발용역 위탁 비용 등)
- 라~아.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기술지도 비용, 디자인 개발비용

그러나 특허조사·분석 비용과 연관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실질적으로 특허조사·분석 비용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 현행 규정하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인력이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내부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분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허조사·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가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별표6 나목의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R&D에 특허조사·분석 활동이 포함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R&D에 대해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과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기술정보비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의 정의상 기술정보비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 및 교수, 외국인기술자와 같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허조사·분석 비용을 기술정보비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조사·분석 비용에 관해서는 법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유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도 적격 R&D 활동에 대해 법령중심으로 설명할 뿐, 납세자 입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적격 R&D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학수 등, 2017). 이러한 법규정의 모호성은 R&D 주체에게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특허조사·분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강한 특허창출과 R&D 효율화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25%) 대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V 소결

주요국 세제지원 동향은 대부분 R&D 세제혜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지속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기업의 R&D 투자 견인을 위해 ‘적격 R&D’ 활동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더불어 ‘적격 연구비’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조사·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조사·분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인건비 중심의 대상 비용 범위를 R&D 관련 지식확보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제4절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적용방안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준비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R&D 투자의 주요 성과가 되는 특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분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R&D 과정에서 수반되는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한 특허 확보, 특허분쟁 예방 등 특허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금여건상 자기부담만으로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특허 등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분석 비용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식재산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면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65,729개사(2019. 3. 기준, 산기협 연구소DB)가 될 수 있다.

▼ 표 27 | 특허조사·분석 비용 관련 R&D 세액공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바. 기술지도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신설>	가. 자체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직무발명보상금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 포함)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비 바. 기술지도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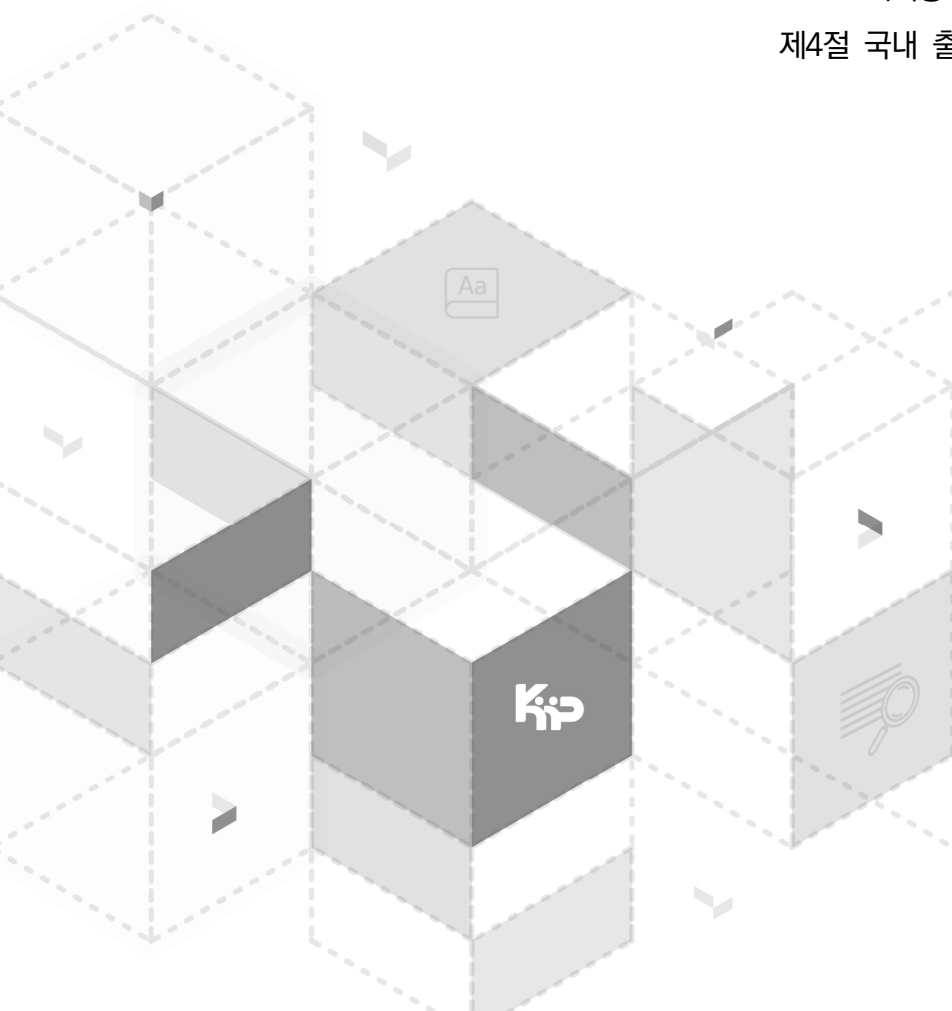
해외 특허출원·등록 비용 조세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 현황

제4절 국내 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법률(안)



제1절 ●● 개요

해외국가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을 감면시키기 위한 노력은 각 국가별 정책입안자들이 어떠한 형태로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지원이나 그 변화가 중소기업들의 특허획득을 위한 전략에 유의미하게 발생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는 제도에 불과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특허의 출원·등록·유지등 특허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직접적으로 제도에 언급하기보다는 기업들에게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서 특허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R&D 비용에 포함시켜 특허활동비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이다. 주요국은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산 및 세제 양면에서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측면에서 특허에 대한 세제지원도 R&D 비용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위주로 세액공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의 특허의 출원·등록·유지를 위해 지불되는 특허비용의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세부내용, 최근의 동향, 제도의 적용효과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특허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주로 중소기업들의 요구가 높다. 중소기업들의 R&D 활동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효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국가들이 특허에 대한 출원·등록·유지비용의 세액공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고 이행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절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I 국내 특허 현황

1. 국내 특허출원 현황

〈표 28〉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과 2017년을 거쳐 하락을 하였으며 그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 되어서야 그 이전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던 2015년 수준을 넘게 되었다. 이는 특허청에서 특허의 양적인 팽창은 IP5 수준에 이르고 유지할 만큼 증가하였으므로 2016년도부터 특허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양질의 특허를 유도하려는 정책과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었고, 이후 심사역량의 강화와 우리나라 기술력의 신장 등으로 특허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 표 28 |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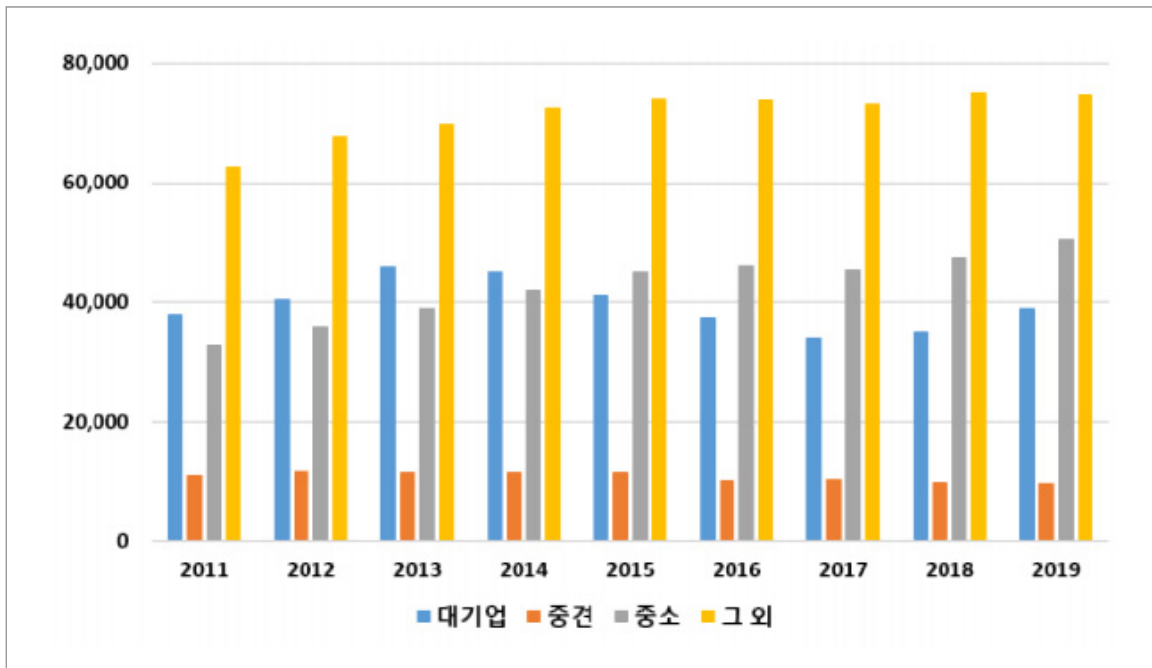
(단위: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기업	38,090	40,478	46,074	45,104	41,156	37,551	34,016	35,114	39,079
중견기업	11,116	11,747	11,551	11,569	11,623	10,293	10,416	9,932	9,752
중소기업	32,897	35,927	39,069	42,197	45,167	46,194	45,553	47,509	50,672
그 외	62,655	67,890	69,925	72,713	74,199	74,053	73,351	75,125	74,815
합계	144,758	156,042	166,619	171,583	172,145	168,091	163,336	167,680	174,318

자료: 특허청

기업유형별로 보자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약 25.9%로 가장 높고, 대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0%로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12 |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출원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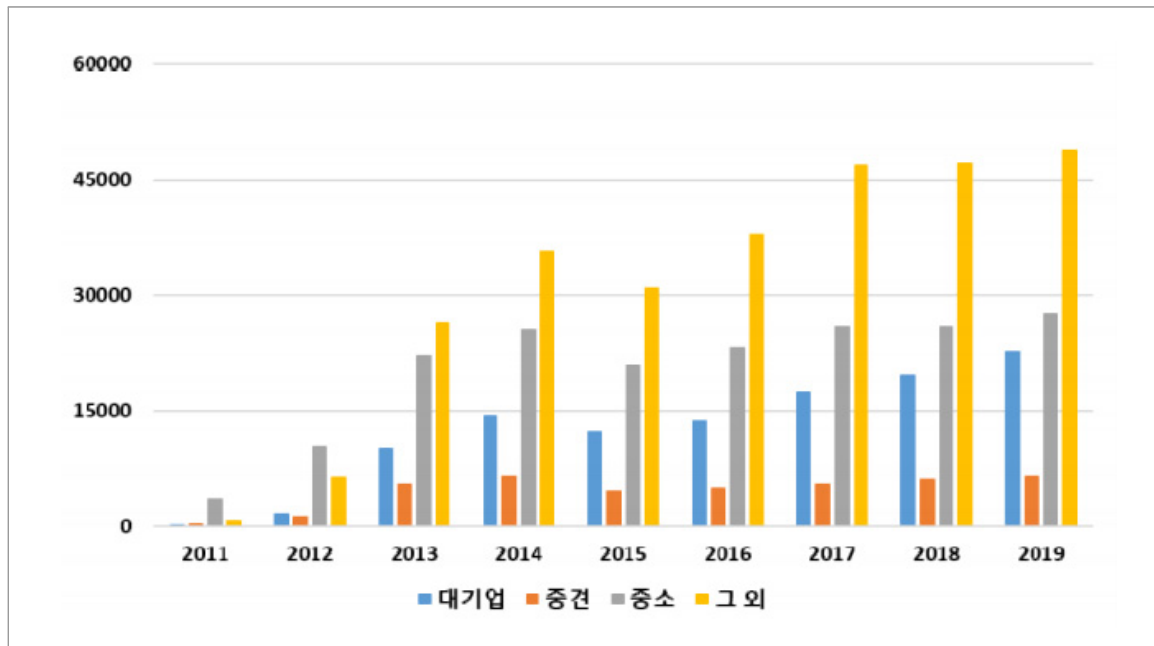
다음 <표 29>와 <그림 13>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특허등록 건수를 보여준다. 특허 등록 건수의 경우 그래프를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는데 2014년 갑자기 높아진 경우를 제외하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해왔다. 그 증가율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면 그 이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특허 등록 건수는 약 6.9만 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보자면 역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29.8%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특허등록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1%로 나타났다.

▼ 표 29 |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등록 건수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대기업	194	1,681	10,194	14,536	12,443	13,799	17,486	19,680	22,758
중견기업	315	1,395	5,542	6,576	4,755	5,082	5,567	6,233	6,592
중소기업	3,533	10,417	22,164	25,672	21,028	23,176	26,104	26,050	27,640
그 외	819	6,402	26,625	35,909	31,006	37,947	47,092	47,303	49,063
합계	4,861	19,895	64,525	82,693	69,232	79,984	96,249	99,266	106,053

자료: 특허청

▼ 그림 13 | 기업유형별 국내 특허등록 건수 현황



II 해외 특허 현황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활동을 파악함에 있어 해외 특허출원 기업 수 현황과 해외 특허출원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다음표는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기업수에 대한 자료이다. 해외에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 시기의 국내 출원 건수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었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평균 중소기업이 약 4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30 |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기업 현황

(단위: 기업 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163	158	147	164	153
중견기업	301	303	324	331	323
중소기업	1,619	1,789	1,900	2,198	2,413
그 외	1,653	1,650	1,670	1,808	1,844
합계	3,736	3,900	4,041	4,501	4,733

자료: 특허청

다음 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건수를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기업 수별 특허출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단순히 특허 건수를 보면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5년간 평균 70%를 나타내고 있어 대기업이 얼마나 해외 특허출원에 대해 중요시 여기고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특허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건수 기준으로는 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특허활동에 대한 예산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에서의 특허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표 31 |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해외 특허출원 건수

(단위: 건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기업	26,573	30,840	33,392	34,814	34,301
중견기업	3,283	3,513	3,557	3,781	4,211
중소기업	3,971	3,935	4,571	4,927	5,068
그 외	5,248	5,555	5,961	5,617	5,325
합계	39,075	43,843	47,481	49,139	48,905

자료: 특허청

제3절

해외 주요국의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 현황

I 미국

미국의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먼저 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연구개발비용(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 R&E)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R&D 비용의 세액공제제도와 연계하여 특허의 출원 및 등록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R&D 활동을 보면 4가지 사항을 모두 부합해야 한다. 첫째, IRC §17478)에서 규정된 실험적 R&D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 물리학, 생물학, 엔지니어링 혹은 컴퓨터 과학에 해당하는 기술적 특성에 해당해야 한다. 셋째, 실험 과정(process of experimentation)이 있어야 한다. 넷째, 새롭거나 개선된 기능, 성과, 신뢰성 혹은 품질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수행 등의 기능적 생산 요소(functional product elements)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언급한 4가지의 사항이 부합한다고 하여 모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R&D 활동에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 ① 상업적 생산이 이미 시작된 이후의 연구비용
- ② 특별한 고객의 요구로 이미 사업화가 진행된 것에 수정을 필요로 하는 연구비용
- ③ 기존 사업요소에 있어서 재생산과 관련된 연구비용
- ④ 품질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시험 혹은 점검비용
- ⑤ 효율성 조사, 경영 연구, 소비자 조사 등 시장조사 비용
- ⑥ 광고 및 판촉활동비용
- ⑦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 모형, 제작 혹은 공정과정
- ⑧ R&D 활동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비용
- ⑨ 미국 이외 국가에서 수행된 연구
- ⑩ 문학, 역사 등 사회과학분야와 예술분야 연구비용
- ⑪ 위탁받은 연구

78) IRC §174에서 정의하는 R&D 비용이란, 납세자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실험 혹은 연구와 관련된 R&D 비용.

일반적인 관점으로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한마디로 언급한다면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상품(product)의 개발 및 개선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서 상품이란 견본품(pilot model), 공정과정(process), 공식(formula), 기법(technique), 발명품(invention), 특허(patent) 혹은 이와 유사한 자산(similar property) 및 납세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판매·임대·라이선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R&D 비용의 세액공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특허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살펴보면, 특허의 개발 및 개선에 발생하는 비용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비용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지출되는 변리사 및 변호사 비용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를 획득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특허의 신청 및 완성을 위한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법률지원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을 보면 기준금액 초과하는 적격 R&D 비용의 20%로 적용(1984년~1988년의 R&D 비용), 최근 3년 평균 R&D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초과액에 대해 15% 적용, 과거의 연구개발비가 없을 경우 연구비의 6%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미국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 특허의 개발 및 개선에 발생하는 비용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 특허의 신청 및 완성을 위한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법률지원 비용 등을 모두 포함(단,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특허비용은 불포함)

II 프랑스

프랑스는 국가적 차원에서 R&D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중소기업 이노베이션 세액공제(CII)제도로 불리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는 혁신적인 R&D 지원정책으로서 현재 세법 244조 quarter B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허획득과 관련된 세액공제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는 특허 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비용, 관련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고, 둘째는 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구매된 특허와 관련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여기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해서는 이를 시행하는

국가와 함께 이후에 설명하고, 특허의 창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자.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비용과 관련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적격 R&D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내부 R&D,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활동에 사용된 인력과 장비, 기술적 검사, 그리고 특허 신청 및 보호비용을 포함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R&D 활동에서 세액공제 대상 비용

- ① R&D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및 건물의 감가상각과 분할상환액
- ② R&D에 종사하는 연구·기술자 직원들의 인건비
- ③ R&D 개발을 위한 운영비용
- ④ 공공기관 혹은 개인기업·연구전문가에 의해 수행된 R&D 관련 비용
- ⑤ 특허 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 및 보호비용, 특허 보험료 등 특허 관련 비용
- ⑥ R&D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특허의 감가상각 및 분할상환액
- ⑦ 기업 제품과 관련된 표준화 비용
- ⑧ R&D에 따른 기술혁신 위험비용(1년에 6만 유로 한도)
- ⑨ 섬유, 의류, 가죽 산업에 의한 신상품 개발과 관련된 비용(1년에 6만 유로 한도)

위의 내용에 나와 있는 프랑스의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 중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⑤번의 ‘특허 생산 및 유지비용, 방어 및 보호비용, 특허 보험료 등 특허 관련 비용’과 ⑥번의 ‘R&D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특허의 감가상각 및 분할상환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허 관련 비용이란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특허생산비용, 둘째, 특허 유지비용, 셋째, 특허 방어비용, 넷째, 보험료이다. 우선 첫째, 특허생산비용을 살펴보면 일단 미국과 같이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출된 변리사 및 변호사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때 특허출원 신청 시 변리사 및 변호사에 지불되는 비용 이외에도 프랑스 특허청에 지불되는 출원비용, 승인비용, 서류 관련 지출비용 등도 포함이 된다. 미국과는 다르게 프랑스에 신청된 특허를 해외로 직접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담당 직원에게 지불되는 비용과 만약 이를 위해 번역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발생된 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 외에 해외국가 또는 국제기관에서 발명 보호를 받기 위한 권한 및 혜택을 위해 프랑스특허청에 지불하는 다양한 비용 등도 포괄적으로 입증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특허 유지비용이란 특허등록 이후 발생하는 특허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특허권 보장을 위해 연간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산입하여 세액공제를 받

을 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프랑스 및 해외의 특허감시위원회와 관련 담당자의 보수 또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특허 방어비용은 특허권 등의 피침해 및 침해 등 소송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변호사, 법률 전문가에게 한번에 지급된 비용뿐만 아니라 급여식으로 지급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의 고용된 직원이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이 직원의 임금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위조 등 침해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넷째, 특허와 관련하여 지불된 보험계약에 대한 지출비용이다. 이는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상한이 있어서 1년에 최대 6만 유로까지 가능하다. 보험료의 성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의 승인 및 특허 소송과 관련된 법률비용(법률 전문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업이 특허에 대한 위조나 침해 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험료(손해비용, 벌금) 등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연간 1억 유로 이내의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 중소기업 및 개인에게 집중된 특허활동에 대해 국가적인 정책(Aide au Premier Projet d'Innovation, APPI)을 통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우선 지원대상을 보면 50인 이하 및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 이하인 중소기업 및 독립회사가 대상이며 기업군의 자회사는 제외된다. 그 내용을 보면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해 지불되었던 시장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모형 설정 및 첫 특허에 대한 비용 등 총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장조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다고 명시한 미국과는 대조적인 내용이다.

프랑스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 프랑스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특허의 생산, 유지, 방어 및 보호 등의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한 것과 R&D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특허의 감가상각 및 분할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나뉜다
- ☞ 특허 관련 비용은 특허생산비용, 특허 유지비용, 특허 방어비용, 보험료를 의미함

III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들이 특허출원 및 등록에 관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R&D 활동 비용과 연계하여 지원에 비중을 두는 것과는 달리 특허취득활동에 대한 투자공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벨기에는 특허비용에 대하여 R&D 비용과 동일하게 3.99%의 세액공제를 하거나, 특허거래를 통한 특허취득비용에 대해 13.5%의 투자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벨기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벨기에 지점은 R&D와 특허에 대한 투자소득공제(Investment deduction for R&D and patents)가 적용가능하다. 투자소득공제는 취득 시에 1회성으로 13.5%를 하거나 또는 감가상각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20.5%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소득공제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R&D에 사용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데, 특허는 1회성만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에 음료 및 공산품 포장 물질의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투자에 대해 3% 공제혜택이 적용되고 항양선⁷⁹⁾(Ocean-Going vessels) 투자에 대해서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특허획득 활동을 포함한 투자공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을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일반 감가상각에 추가로 투자한 특정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터키는 특허 원가의 40%만큼 투자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이 국가들에 대한 투자공제의 효과를 살펴보면 기업체의 과세소득으로부터 투자공제를 제공해 특허의 구매가격을 경감시켜 주어 특허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며 또한 특허거래시장의 활성화는 결국 상업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특허출원 및 등록의 증가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벨기에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R&D 비용의 세액공제에 비중을 두기보다 특허취득활동에 발생된 비용에 대한 공제인 투자공제 비중을 두는 정책 실시

- 특허 투자공제의 효과
 - 특허의 구매가격을 경감시켜 주어 특허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발
 - 특허거래시장 활성화 → 상업화 용이 → 특허출원 및 등록 증가

79) 해양 항해에 견딜 수 있는 선박으로서 국제항운에 종사하는 외항선 또는 본선을 말한다. 통상 3,000톤 이상의 대형선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보면 특허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액공제가 특허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다. 특허의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인 소득공제 지원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허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액공제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등의 활동을 통해 자체개발한 특허와 특허거래를 통해 습득한 특허는 일반적으로 모든 OECD 국가에서 감가상각 대상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이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보면 자체개발특허나 특허거래를 통한 특허나 지출발생 당해에는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은 보통 특허로 인해 기업에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반영될 수 있다. 감가상각률은 전형적으로 특허의 내용연한 혹은 경제수명으로 적용된다. 조세상 감가상각의 소득공제의 가치측정은 구매를 통해 습득한 특허는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취득원가를 기반으로 설정되는 반면, 자체개발한 특허는 경제적·시장 가치가 아닌, 특허의 신청 및 보호 비용으로 설정된다.

특허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출원 및 등록을 한 경우,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특허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출원 및 등록에 들어간 비용, 신청 및 승인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계속해서 발생하는 특허의 유지비용은 전형적으로 지출로 취급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특허비용의 감가상각을 소득공제로 허용한다면, 특허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특허의 감가상각에 대한 지속적인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해 언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인가? 특허의 발명 보호 기간은 20년이므로 내용연한을 20년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많은 발명의 경제적 내용연한은 상당히 더 짧을 수 있다. 많은 정부들이 감가상각 기간에 대해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제공하며, 보통 규정 안에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나 발명가가 감가상각 기간을 정하고 있다. 혹은, 특허의 감가상각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내용연한'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해, 기대 경제수명에 따라 특허 소유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IV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세액공제제도를 보면 특허활동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한 R&D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격 비용의 32.5%가 기본 공제액으로 적용되고 있다. 추가로는, 과거 2년 평균 R&D 비용을 초과하는 적격 비용(증가분)에 대해 150만 유로 한도 내에서 50%의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 2년간 평균보다 증가한 연구개발비의 50% 추가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은 기본 공제율 32.5%에 15%를 가산한 47.5%를 적용받는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에 대해서는 이후 8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포르투갈의 R&D 활동에서 세액공제 대상 비용

- ① 영구적이며, 독자적으로 R&D 활동에 사용된 새로운 고정자산의 취득 비용
(단, 토지 및 건물 제외)
- ② R&D 활동에 전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 발생한 비용(급여포함)
- ③ R&D 활동의 관리에 참여한 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해 발생한 비용
- ④ 공공기관 및 공신력 있는 연구단체로부터 R&D 서비스를 받는 데 발생한 비용
- ⑤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단, 중소기업에만 지원)
- ⑥ R&D에 할당된 특허취득에 발생하는 비용
- ⑦ R&D와 관련된 감사(audit)에 발생하는 비용

여기서,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액공제의 대상은 ⑤번의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 및 ⑥번의 ‘R&D에 할당된 특허취득에 발생하는 비용’을 들 수 있다. ⑤번의 경우는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특허등록 및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의 지원과 상이하고 프랑스의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특허의 유지비용에도 세액공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 지원은 중소기업에 한정된다. ⑥번의 경우는 특허를 취득함에 있어 R&D에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취득된 특허와 R&D 비용이 관련이 있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관성을 증명해야 한다.

포르투갈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 특허의 등록 및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
 -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특허등록 및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단, 중소기업 한정)
- ☞ R&D에 할당된 특허취득에 발생하는 비용
 - 특허취득과 R&D 비용과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함

V

스페인

스페인의 경우 특허활동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전 2년의 평균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치까지는 25%가 적용되고,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된다. 여기에 추가로, 관련된 R&D 활동을 위해 지급된 직원의 임금과 관련된 비용은 17%가 적용되고, 유형 및 무형 자산에의 투자와 관련된 비용에는 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명시하기를 기존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술적 혁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의 형태의 기술 획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백만 유로의 한도가 존재한다.

스페인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 특허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 기존 상품이라도 기술적 혁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활동에 비용이 지불되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의 형태의 특허 획득이 포함

VI 노르웨이

일반 기업에 대해 18%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혜택을 주어 20%까지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단, 한화로 30억 7천만 원(2천5백만 크로네(Krone))의 한도가 존재한다. 특허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하여서만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다른 연구개발비와 연계하여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특허비용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R&D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새로운 발명이거나, 이전보다 개선된 자산이나 서비스 또는 생산 공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R&D 프로젝트를 위한 지출에 대하여 적용된다. 관련되어 혜택을 주는 업종에 제한은 없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특이한 사항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연구위원회(The Research Council of Norwa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르웨이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 특허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일반 18%, 중소기업은 추가공제로 20%까지이고 특허취득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만 지원
- ☞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르웨이 연구위원회의 승인 필요

VII 칠레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R&D 비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등록된 연구기관과 공인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구개발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거나, 국가에서 승인된 R&D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세액공제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시된 연구개발비가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연구개발비의 35%는 연간 1만 5천 UTM을 한도로 세액공제 되고 나머지 65%는 비용(손금)으로 처리된다.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지출이 100%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었으나, 칠레는 세액공제 되는 35%를 제외한 65%만 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를 100% 비용처리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을 계산하면 26.25%가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가의 승인이 되어야 연구개발비에 대한 100%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승인이 되지 않은 R&D 프로젝트는 65%의 비용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후에 R&D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나머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지식재산의 특허활동 측면에서 세액공제 내용을 보면 특허의 출원·등록·유지는 특허활동비용도 연구개발비의 일부로 인정이 되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칠레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특징

- ☞ 특허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 ☞ 기업이 등록된 연구기관과 공인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구개발비 또는 승인된 R&D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개발비에 대해 지원

▼ 표 32 | 해외 주요국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입법례

국 가	특허비용 세액공제 대상	공제내역 및 공제율	특허취득비용 범위
미국	대기업, 중소기업	기준금액 초과액의 20%, 최근 3년 평균 50% 초과액의 14%, 당기분의 6% 중에서 공제적용	• R&D 활동과 관련된 특허비용만 허용
프랑스	대기업, 중소기업	30%(1억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5%)	• 특허비용과 관련된 모든 비용 • R&D를 위해 구입한 특허의 감가상각비 공제적용
벨기에	대기업, 중소기업	특허비용은 3.99% 투자소득공제는 13.5%	• 특허투자공제에 더 비중을 둠
포르투갈	중소기업 (특허활동비용에 대해)	당기분의 32.5%와 증가분 50%, 또는 중소기업에 대해 32.5%에 15%를 추가한 47.5%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특허취득비용의 경우 R&D 비용과의 연관성을 증명해야 함

국 가	특허비용 세액공제 대상	공제내역 및 공제율	특허취득비용 범위
스페인	대기업, 중소기업	당기분의 25% (평균비용초과 이전까지 25%, 초과비용은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관련 임금비용 17% • 혁신활동 8%
노르웨이	중소기업 (특허활동비용에 대해)	일반 18%, 중소기업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연구위원회 승인필요
칠레	대기업, 중소기업	35%(비용처리기준으로 하면 2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비용을 포함한 R&D 비용 - 공인된 계약 및 승인된 프로젝트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지원

출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중소기업의 특허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VIII 소결

본 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해외주요국들은 국가의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신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혜택을 제도화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허획득에 필요한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과 특허에 대한 조사·분석비용을 R&D 비용의 범주안에 포함시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신기술개발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 목적성은 같으나 세부적인 지원정책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었다. 이를 다시 검토해 보면, 미국은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의 세액공제는 적격연구개발비용(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 R&E)과 연계되어 발생된 비용에 대해 적용된다. 또한 이는 IRC §174에서 규정된 실험적 R&D 활동이어야 한다. 주로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법률지원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프랑스는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지원정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특허 생산·유지비용, 방어비용, 보험료 등에 대한세액공제이고 둘째는 구매된 특허와 관련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프랑스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연간 1억 유로 이내의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벨기에는 특허투자공제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데, 특허취득 시에 1회성으로 13.5%를 하거나 또는 감가상각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20.5%를 선택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일반 감가상각에 추가로 투자한 특정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터키는 특허 원가의 40%만큼 투자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 투자공제의 긍정적 요인은 기업의 특허의 구매가격을 경감시켜 주면 특허거래시장의 활성화

될 것이고 이렇게 상업화가 용이해지면 결국 특허를 창출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부차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를 창출하는 동기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다.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소개된 국가들과 달리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특허활동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한 R&D 관련 비용에 대해 적격 비용의 32.5%로서 기본 공제로 적용하고, 추가로 과거 2년 평균 R&D 비용을 초과하는 적격 비용(증가분)에 대해 150만 유로 한도 내에서 50%의 공제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기본 공제율 32.5%에 15%를 가산한 47.5%를 적용해 준다. 노르웨이는 일반 기업에 대해 18%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혜택으로 20%까지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스페인도 특허활동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⁸⁰⁾하고, 추가로 관련된 임금에 대해서는 17%의 혜택을 적용한다. 칠레는 기업이 등록된 연구기관과 공인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구개발비 또는 승인된 R&D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개발비 대해 지원하는데,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35%는 연간 1만 5천 UTM을 한도로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65%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상 주요국들의 특허획득을 위해 투자되어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R&D 비용이라는 계정에 포함시켜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물론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처럼 특허를 구입하는 등의 투자공제에 더욱 그 비중을 두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이 특허의 출원·등록·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시키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저성장기조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동력원 중에 하나를 신기술에 대한 확보를 의미하는 특허에 대한 확보에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주요 IP5 국가의 일원으로서 특허취득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국가로 지표상에는 보여질 수는 있으나 현재의 상태 이상의 지식재산선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은 주요국들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맞추어 다음 절은 우리나라 특허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세제 법률현황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80) 이전 2년의 평균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치까지는 25%가 적용되고,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42%가 적용.

제4절

●●
국내 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법률(안)

I

중소기업 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도

1.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1조를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이 특허를 국내외에 출원하기 위해 지출된 변호사 비용 등의 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출원 이후 특허를 등록하고, 유지하는 데 지출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본 조세특례 제도를 살펴보면 언급한 특허의 출원·등록·유지에 사용된 비용 이외에도, 특허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들어가는 조사·분석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같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특허에 대한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특허비용으로 정의한다.

제도 도입을 주관하고 있는 특허청은 조세특례제도의 도입배경으로 세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 특허의 창출 및 보호에 대한 세제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중소기업이 비용 등의 문제로 특허 없이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출시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으며, 셋째, 중소기업이 특허출원을 위해 수행해야 할 조사·분석의 과정이 역시 비용 등의 사유로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특허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의 지원을 통해 특허조사·분석시장 활성화, 특허출원 및 등록 활동 증가 등을 유도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활동에 있어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도의 기대효과

특허청이 제시하는 제도의 예상 기대효과

-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특허활동이 증가하면 기업 매출액 증대로 국가 경쟁력강화에 기여(주요 효과)
 - 산업재산권이 1건 증가할 때, 평균 약 1,700만 원 매출 증가
 - 스타트업의 최초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 거절된 경우에 비해 5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4배, 매출증가율이 3배 높음.
 -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받은 과제가 평균적으로 과제당 0.663개~0.729개의 특허를 더 출원하고, 0.171개~0.206개의 특허를 더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 성장률이 1%p 증가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이 0.65% 증가
 - 58개국의 1980~2003 데이터 분석 결과 고품질 특허활동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구
 - 지식재산권을 많이 보유한 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크고, 고용비중 높음.
 - IP 집중 산업군이 타산업군에 비해 임금수준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므로 지원 필요성이 큼.
- 부가가치가 높지만 영세한 지식재산(IP)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기여(부대효과)
 - IP서비스산업은 R&D 단계부터 IP 창출·보호·활용 단계까지 발생하는 중간 서비스 수요를 지원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효과가 큼.
 - IP서비스전문기업의 대다수가 영세(매출액 10억 미만(65.5%))하고 중소기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이 37.5%로 가장 커서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이 증가하면 IP서비스산업 활성화 큰 기여 가능

자료: 특허청,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유지·등록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 2020. 1.

특허청은 제시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식재산 산업에서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첫째, 조세특례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은 특허활동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기업이 최종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매출액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기업들의 매출증대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둘째는, 조사·분석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식재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인 변리사 및 변호사들에 대한 수요를 높일 것이고 이는 곧 지식재산(IP)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며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II 조세특례제도 주요 내용

1. 조세특례 대상 및 지원 내용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에 들어가는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등의 비용 및 특허의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도는 우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모든 중소기업에게 투자한 특허활동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이다.

2. 조세특례제도 시행 방법

제도를 추진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특허청은 본 조세특례의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중소기업의 특허 등 비용 세액공제)의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1조의 신·구 조문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33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중소기업의 특허 등 비용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하 '특허비용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 등'에는 대리인·법률·행정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 예상 감면액 및 파급효과

특허청에서 유추한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에 따른 예상 조세감면규모 및 경제파급 효과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도출된 금액은 세액공제율 25%와 중소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하면서 당기순이익을 내는 기업의 비중을 70%로 가정하였다.

총 제시된 시행 3년간의 세액공제에 대해 예상 산출된 규모를 보면, 제도 시행 첫 해인 2021년에는 192.8억 원 국내 특허출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예상하였고, 2년차인 다음 해 2022년에는 202.4억 원 규모를 예상하였으며, 시행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212.6억 원의 세액공제 규모를 예상하여, 3년간 연평균 202.6억 원의 세액공제액을 제시하였다. 해외 특허출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로는 2021년에 94억 원, 2022년에 98.7억 원, 2023년에 103.6억 원의 규모를 예상하였다.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산출은 2022년 이후 조세지출액이 연평균 5%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에는 73.29억 원, 2022년에는 76.96억 원, 2023년에는 80.80억 원, 2024년에는 84.84억 원 규모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 산출되었다.

▼ 표 34 | 조세특례제도 적용에 따른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

(단위: 건, 억 원)

연도	시행 1년(2021년)	시행 2년(2022년)	시행 3년(2023년)	평균
국내 특허출원 수	54,014	56,714	59,550	56,759
국내특허 세액공제	192.8	202.4	212.6	202.6
해외 특허출원 수	4,385	4,605	4,835	4,608
해외 특허 세액공제	94	98.7	103.6	98.76

주: 국내 특허출원 수: '19년, '20년 출원 건수는 '14~'18년 연평균 증가율(3.58%), '21년 이후 특허출원 증가율은 5%로 추산
 해외 특허출원 수: '13~'15년 해외 특허출원 수의 연평균증가율(1.3%)을 적용하여 '16~'20년 해외 특허출원 수를 추계하고, '21년 이후는 제도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감안하여 증가율 5%로 계산
 자료: 특허청,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요구서, 2020. 1.

III 조세특례제도의 연혁 및 추진 경위

1.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연혁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R&D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이에 대한 지원제도는 크게 R&D, 자산취득, 기술사업화, 인력활용 관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첫째, R&D 비용의 관점에서는 비용지출과 비용확보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비용지출에 대한 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1981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설하였고, 2001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으며, 2008년 조특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항구화하였다. 2010년에는 하위규정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에 대한 지

원을 신설하였다.

둘째, 자산취득 관점에서 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지원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대표적이고, 특허 등의 무형자산의 측면에서는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셋째,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를 감면시켜주었다.

넷째, 인력활용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또는 중소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과세 감면 등을 포함한다.

▼ 표 35 | 우리나라 R&D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연혁

구분	제도명	근거법령	최초 시행	일몰 기한
연구 개발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조특법 제9조	1975 (2009)	201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조특법 제10조	1982	없음
	R&D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	조특법 제10조의2	2007	20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조특법 제10조	2010	2015
자산 취득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11조	1975	2015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관세법 제90조	1982	없음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지특법 제46조	1995	2016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	2001	2015
기술 사업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12조	1982 (2014)	2015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조 2	2007	2015
인력 활용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8조	1982	2018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004	없음

주: ()는 제도가 일몰기한 도래 등으로 폐지되었다가 다시 도입된 시점

출처: 노민선, 이상열,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2014. 12.

2. 특허비용 조세특례제도 연혁

이번에 추진되는 조세특례제도는 이전에도 추진하였던 경험이 있다. 2016년 12월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도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시행한 이력이 있었다. 당시의 예비타당성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책성과 경제성, 형평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를 AHP를 이용하여 종합평가점수를 도출하였는데 도출된 결과의 평점은 0.42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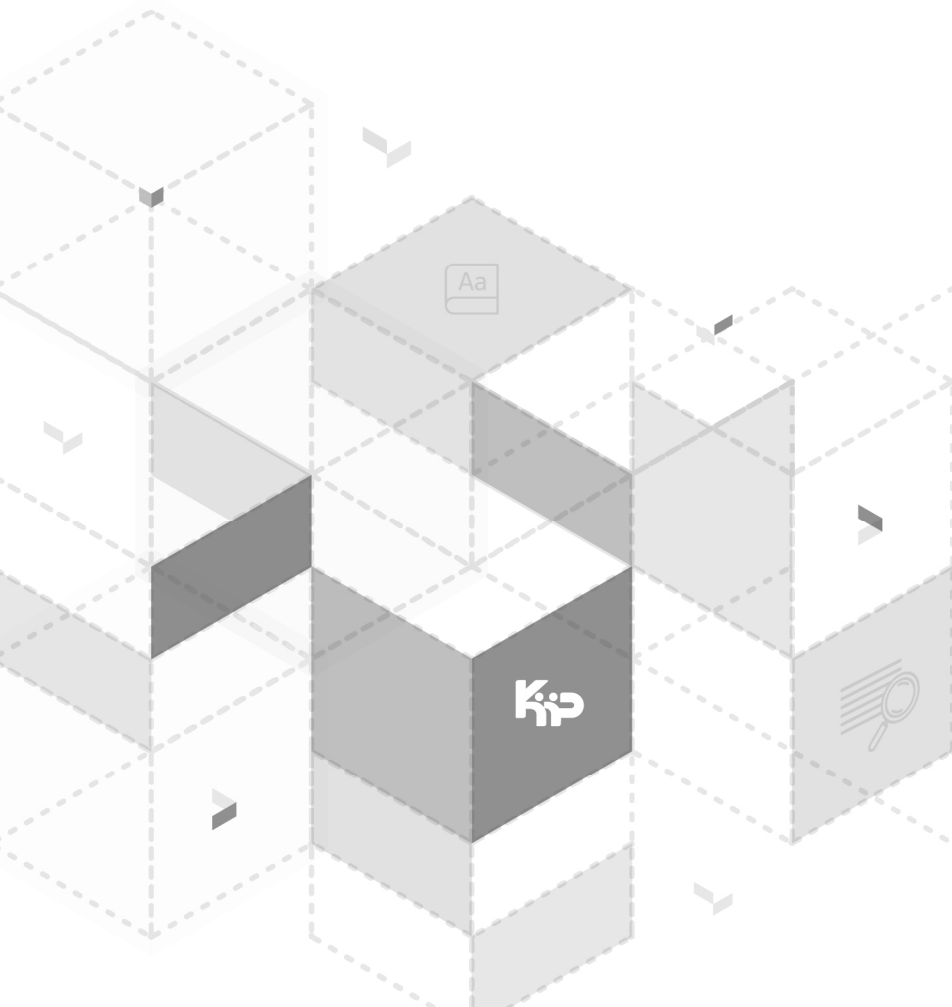
도입하지 않는 것이 도입하는 것보다 정책성, 경제성 및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더 낫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제안은 되었으나 도입은 되지 않았다.

2017년에도 특허활동에 대한 조세특례제도가 제안되었는데,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 대상으로 연평균 조세감면 규모를 826억 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국내외 특허권만을 대상으로 제도가 변경되면서 세액감면범위가 축소되었다. 2017년 제안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보면, 정책성 결과에 있어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이 높지 않게 나타났고, 신규 제도의 적시성 및 효과성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또한 제도설계 적정성에 있어서 정책대상의 설정이나 지원수단 등에 대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재산권 측면에서 조세특례제도의 세액공제효과는 기업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신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이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을 부가시켜 새로운 특허를 획득하는 추가 보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형평성 분석 결과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형평성은 개선되는 점이 있으나, 오히려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형평성은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표 36 | 2017년과 2020년 조세특례제도 제안 내용 비교

2017년 제안	2020년 제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2(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중소기업의 특허 등 비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이하 '특허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이란 대리인·법률·행정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하 '특허비용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출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 등'에는 대리인·법률·행정 비용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비용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결론 및 향후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계 기술 강국들이 항구적인 기술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자국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및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도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고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의 틈새를 파고들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해외자본투자와 기술투자를 이끌어 내려고 애쓰고 있다. R&D를 통한 기술경쟁의 승자가 세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기 때문에 오늘의 강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시대이다.

또한 기술을 창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거나 영업비밀 등으로 기술보호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수익을 실현해야 궁극적인 R&D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선별하고, 국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국내의 R&D 조세지원제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술사업화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특허박스제도를 검토하고, 해외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 적용 사례와 주요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적용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허박스제도에 대한 중간평가를 담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주요 비판적 견해는 특허박스를 운영하는 낮은 법인세율 적용 국가로의 기업 이전 등이 조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특허기술의 사업화 등 본연의 목적달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박스제도가 발명자나 출원인, 기업들에게 유용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OECD의 BEPS 논의에서도 특허박스 자체를 유해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잠재적으로 유해한 특혜체제 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현재 특허박스제도를 운영 중인 모든 유럽 국가들이 OECD 넥서스 접근법에 일치되도록 특허박스제도를 일부 수정하여 여전히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의 전 단계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두고 있으나, 중소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우리나라의 기술거래에 한정된 세제혜택을 특허기술 사업화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R&D 활동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입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기술사업화에 대한 세제지원은 산출적 성격을 지니므로 각기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국가 간 조세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으로 통용되는 OECD BEPS Project Action 5의 넥서스 접근법(Nexus Approach)을 특허박스제도 도입시에 사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박스제도 자체가 Action 5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유해한 특혜체제'로 간주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박스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여러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그 지원 혜택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편향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특허박스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판단의 결과 혹은 제도 선택의 문제이다. 만일 이것이 해소하는 것이 제도 추진의 대전제라고 한다면 특허박스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충분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에 있어 발목을 잡아왔던 논쟁점 중에 두 번째는 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설계상의 문제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상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발의들은 그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일부개정을 위한 관련 조항은 동 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동일했으며, 제안사유는 대체로 ‘기술거래에 한정한 세제혜택을 사업화 영역으로 확대하여 R&D 성과물 활용 촉진’으로 보았다. 주된 내용은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과 내국인 간 기술거래(이전·대여 등)한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것(대통령령))을 판매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자 한계는 세 건 모두 기술거래나 사업화와 관련해서 공제율에 중점을 두고 고려한 반면 그동안 지적되어 온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안된 특허박스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부처의 기존 반대논리를 극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물론 이번 연구가 이런 예산부처의 시각을 대응하기 위한 제도운영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 점을 고려하고 제도 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바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안처럼 예산부처에 대한 설득근거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지 이번 연구는 기존과 같은 제도의 틀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 기존의 논리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시사점은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성 분석에서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한 추가적인 비용만을 감안하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특허박스제도의 편익을 분석함에 있어 제도의 성과를 제품화와 사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나 매출의 증가 등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대단히 많은 R&D 비용을 기술개발과 지식생산에 쓰고 있다는 점이고, 이 기존 비용의 성과를 제고하는 효과를 특허박스제도의 비용과 편익 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 맞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서 설명한 특허박스제도의 경제적 타당성의 논리를 실증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특허박스제도의 적용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효과의 방향성과 크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제까지 특허박스제도의

‘R&D-지식재산창출-사업화활성화’를 잇는 ‘명백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부처가 특허박스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효과를 내세워 제도 도입의 반대논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대안의 관점으로 실증분석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해 본다면 명분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실증적 타당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문헌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기업이 기술적으로 불필요한 특허를 이전 받거나,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특허는 없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혜택이 안가고 세제 혜택을 노리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등 여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문제점들이 충분히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통제가능하고, 사후적으로도 벌칙제도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유럽의 주요국들이 이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를 선형적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특허박스제도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실상 이 제도의 비용과 혜택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주제에 관한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특허박스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함에서 있어 어느 칼럼의 구절을 되새겨 본다.

어느 제도든 시행 전에 그 효과와 한계를 가능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기술개발과 연계된 혁신지원제도의 경우 불확실성은 더욱 클 수밖에 없고, 그 만큼 판단은 쉽지 않다. 단지 모든 가능성을 짚어 완벽하게 기획한 후 전면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 대신 다른 방법도 있다. 다시 말해, ‘시범적용-보완-재적용’이라는 방식도 정책 추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24조 원 규모의 정부 R&D 예산 투입을 앞두고 있고, 소재부품장비를 놓고 벌인 한·일간의 갈등 속에 우리의 산업혁신역량이 부족함을 확인했고, 거기다 전략적이고 한시적 적용을 염두에 둔다면 특허박스제도는 분명 장점이 있어 보인다.⁸¹⁾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휘말리거나 힘들여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특허조사·분석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 주요국의 IP-R&D 비용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21년 IP-R&D 비용 세액공제에 대한 제도개선안에 참고될 수 있도록 조사하였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 중 하나로, 국내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이다. 해외 특허출원·등록비용 조세제도 개발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선 해외 주요국에서의 특허출원·등록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였다.

해외 주요국은 기업의 R&D 투자 견인을 위해 ‘적격 R&D’ 활동범위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 연구비’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추세이다. 특히 강한 특허창출을 위해 특허정보

81) “ET교수포럼의 정책 시사비비”, 전자신문, '19. 9. 26.

를 활용한 R&D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의 경우, 생기신약(生技新藥)산업발전 조례를 근거로 연구에 필요한 특허기술 전문지식 또는 저작권 취득 또는 사용에 관련된 비용을 적격 R&D 비용으로 보고 35%에 대해 공제해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연구개발비 추가공제(RDA)프로그램을 통해 산업기술에 대한 과학적 연구(예: 신기술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연구)를 적격 R&D 활동으로 보고 공제기초금액의 160%에 대해 추가 공제해주고 있다. 영국은 구체적인 R&D 활동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간접적인 R&D 활동으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은 R&D 비용의 125%를, 대기업은 130%를 공제해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조사·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조사·분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인건비 중심의 대상 비용 범위를 R&D 관련 지식확보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을 R&D 비용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특허조사·분석 비용의 부담을 세액혜택을 통해 덜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주요 이슈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신기술에 대한 조속한 권리확보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진출 기업들은 진출국에 특허출원이 필요로 하나 특허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예산부족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해외출원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 기업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47.4%의 비중을 보이는데 비해, 특허출원 건수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평균 70%를 나타내 기업 규모별 특허출원 차이를 보여준다. 정책입안자들은 중소기업의 특허취득 및 보호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의 특허활동에 대한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는 특허출원 및 등록비용의 세액공제는 적격연구개발비용(Research and experimental expenditure, R&E)과 연계되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고 IRC §174에서 규정된 실험적 R&D 활동이어야 한다. 주로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및 법률지원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세액공제율을 보면 기준금액 초과하는 적격 R&D 비용의 20%(1984년~1988년의 R&D 비용), 최근 3년 평균 R&D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초과액에 대해 15%, 과거의 연구개발비가 없을 경우 연구비의 6%를 적용하는 방법 중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세법 244조 quarter B에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활동비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특허 생산·유지비용, 방어비용,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구매된 특허와 관련된 감가상각충당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크게 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프랑스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는 연간 1억 유로 이내의 적격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는 특허투자공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나라들이다. 벨기에는 특허비용에 대하여 R&D 비용과 동일하게 3.99%의 세액공제를 하나, 특허거래를 통한 특허취득비용에 대해 13.5%의 투자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소득공제는 특허취득 시에 1회성으로 13.5%를 하거나 또는 감가상각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의 20.5%를 선택할 수 있다. 네덜란드는 일반 감가상각에 추가로 투자한 특정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에 따른 구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대 28%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터키는 특허 원가의 40%만큼 투자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특허 투자공제의 효과를 보면 특허의 구매가격을 경감시켜 주어 특허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유발하면 상업화가 용이해지고 결국 기업의 이익창출을 증가시켜 특허출원 및 등록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포르투갈은 특허활동 관련 세액공제를 포함한 R&D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격 비용의 32.5%로서 기본 공제액으로 적용하고, 추가로 과거 2년 평균 R&D 비용을 초과하는 적격 비용(증가분)에 대해 150만 유로 한도 내에서 50%의 공제 가능한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은 기본 공제율 32.5%에 15%를 가산한 47.5%를 적용해 준다. 노르웨이는 일반 기업에 대해 18%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혜택으로 20%까지 R&D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나 특허취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스페인도 특허활동을 포함한 R&D 비용에 대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의 25%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이전 2년의 평균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치까지는 25%가 적용되고, 초과비용에 대해서는 42%가 적용된다. 추가로 관련된 임금에 대해서는 17%의 혜택을 적용하고 기존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술적 혁신의 결과인 특허, 라이선스, 노하우, 디자인의 형태 등의 활동비용에 대해서 1백만 유로의 한도로 8%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칠레는 기업이 등록된 연구기관과 공인된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R&D 비용 또는 승인된 R&D 프로젝트와 관련된 R&D 비용에 대해 지원하는데, R&D 비용에 대해서 35%는 연간 1만 5천 UTM을 한도로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65%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한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국들은 특허창출이 곧 국가혁신과 발전의 주요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특허출원 및 등록 등의 특허활동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크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lstadsæter, A., Barrios, S., Nicodeme, G., Skonieczna, A. M. and Vezzani, A. (2015), "Patent Boxes Design, Patents Location and Local R&D",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Papers, N. 57, June 2015.
- Andrew Hwang(2018), Thinking Outside the (Patent) Box: An Intellectual Property Approach to Combating International Tax Avoidance, p.28.
- Bas Straathof, Elina G.L., Henk K., Remco M., "A Study on R&D Tax Incentives Annex: Good practice cases", European Commission, 2014
- BEPS Action 5(2014), Deliverable, p. 29.
- Bloom, N., R. Griffith and J. V. Reenen(2002), "Do R&D tax credits work? Evidence from an international panel of countries 1979-97,"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 2002. pp.1-31.
- Bob Stembridge, Thomson Reuters(2015), Patent Box Incentives show positive signs, 2015
- Boehm, Tobias, Tom Karkinsky, Bodo Knoll, and Nadine Riedel(2015). The Impact of Corporate Taxes on R&D and Patent Holdings. University of Hohenheim: Working Paper.
- Bösenberg, Simon, and Peter Egger(2017). R&D tax incentives and the emergence and trade of ideas. Economic Policy 32 (89): 39-80.
- Bradley, Dauchy & Robinson(2015), note 15
- Bradley, S. E. Dauchy & L. Robinson(2015),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Preliminary Effects of Patent Box Regimes on Patent Activity and Ownership, Tuck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No. 2681433, 2015, note 15, p. 6.
- British Corporate Tax Act 2010, Section 357BD, as amended by the 2016 Finance Act.
- Brown, J. M.(2012), 'Patent Box Taxation: A Comparison of Four Recent European Patent Box Tax Regimes and an Analytical Consideration of If and How the United States Should Implement Its Own Patent Box', in The International Lawyer, 2012-46, note 5, p. 914
- Christof Ernst and Christoph Spengel., "Taxation, R&D Tax Incentives and Patent Application in Europe", Discussion Paper No. 11-024, ZEW,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 Dachs and Zanker(2015), "Backshoring of Production Activities in European Manufacturing", MPRA.
- Daniele Fabris(2019), TO OPEN THE BOX OR TO CLOSE THE BOX? "PATENT BOX" REGIMES IN THE EU BETWEEN R&D INCENTIVES AND HARMFUL TAX PRACTICES, Amsterdam Law Forum, p.44

- Deloitte BEPS Actions Implementation Luxembourg(2017), p. 3.
- Ernst & Young(2017), Worldwide R&D Incentives Reference Guide“, EYG Limited, 2017, p.25.
- Ernst, C., K. Richter and N. Riedel(2014), “Corporate taxation and the qualit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 21, 2014.
- Esmé Berkhout(2016), Tax Battles: The Dangerous Global Race to the Bottom on Corporate Tax (December 2016), p.19
- EU, Innovation Union Scordboard 2016, 2016
- European Commission(2014), “A Study on R&D Tax Incentives”, November 2014.
- Fabian Gaessler, Bronwyn H Hall and Dietmar Harhoff(2019), SHOULD THERE BE LOWER TAXES ON PATENT INCOME?, NBER Working Paper Series 24843, 2019,
- Fatih Guvenen and others(2017), Offshore Profit Shifting and Domestic Productivity Measurement, 2017
- Financial Times, 12 March 2014; GSK renforce le role de la Belgique comme QG Mondiale, L’echo, 7 April 2015; GSK renforce sa filiale belge specialises dans les vaccins, RTBF, 19 March 2015.
- Griffith, C. A., Lloyd, J. W., Lane, K. L., and Tankersley, M.(2010), “Grade retention of students during grades K-8 predicts reading achievement and progress during secondary schooling”,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Vol. 26, 2010.
- Guellec, D. and van Pottelsberghe, B.(2000), “The impact on public R&D expenditure on business R&D”, STI Working papers 2000(4)
- Guenther, Patent Boxes: A Primer, 19.
- Hall, Bronwyn H.(1992), R&D Tax Policy During The Eighties: Success or Failure?, NBER Working Papers No.4240, 1992.
- Karkinsky, T. and N. Riedel(2012), “Corporate Taxation and the Location of Patents within Multinational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88, No. 1, 2012.
- Koga, T.(2003), “Firm size and R&D tax incentives”, Technovation 23(7), 2003, p.643-648.
- KPMG, “EMEA R&D incentives guide”, 2017, KPMG international
- Lisa Evers, Helen Miller, and Christoph Spengel(2013),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Intellectual Property Box Regimes: Effective Tax Rates and Tax Policy Considerations, 39.
- Mansfield, Edwin(1986), Patents and Innovation: An Empirical Study, Management Science, vol. 32, issue 2, 1986, 173-181.
- NARS 현안분석 vol.17, 2018.
- OECD, Frascati Manual: Proposed Standard Practice for Surveys on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ECD, 2002
- OECD, R&D Tax Incentives and Government Forgone Tax Revenue: A Cross-Country

- Comparison, OECD, 2010.
- OECD, R&D Tax Incentives: Rationale, Design, Measurement and Evaluation, OECD, 2011.
-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17/2.
- OECD(2016), FDI flows(indicator). doi: 10.1787/99f6e393-en(Accessed on 14 December 2016)
- OECD(2018), OECD Time-Series Estimates of Government Tax Relief for Business R&D, p.10, Figure 1, Panel 1a.
- Patrick Schrievers, Mats Emonts(2016), “Amendments and Developments Involving Netherlands Tax Incentives Promoting R&D Activities”, EUROPEAN TAXATION (August 2016), p.367.
- PWC(2012), 『Tax Notes』, 2012, p.1667.
- PWC, “Global Tax Accounting Services Patent box and technology incentives: Tax and financial reporting considerations”, Feb 2014.
- PWC(2017),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April 2017)”, PWC.com, 2017, p.13.
- Simone Vos(2018), Fiscal treatment of IP in a post-BEPS world -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reports on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EU, EEA and Switzerland, Tilburg University, 2018, p.34-48.
- Wallyn. T.(2017), Unimaas Mastering the IP Life Cycle: The International Tax Perspective, PWC, 2017. 6. 2.
- WC(2016), Global Research & Development Incentives Group(2016. 2.).
- G20(http://www.g20.org/English/image/201603/t20160301_2173.html)
- www.ntis.go.kr
- www.taxjustice.net/2014/11/17/patent-boxes-progress-racing-bottom
- www.wipo.int
- 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beps-actions-implementation-luxembourg.pdf
- 강경남·김미옥·김범태·하홍준·정찬식·최서희·조혜리(2014),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국가별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차이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Patent Box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8), “주요국 리쇼어링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NRC Research Brief 004.
- 국세청(각연도),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2018), 「나라살림-예산개요 참고자료-」, 2018.
- 김태호(2014), 주OECD 대표부 정책브리핑 자료, 14. 5. 30.
- 김태호(2015), “BEPS 액션플랜 현황 및 쟁점 정리”, 주OECD 대표부 정책브리핑 자료, 2015.
- 김학수(2018),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재정포럼」 제270호, pp. 30-59
- 김학수(2014),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연구보고서」 14-03, 2014.
- 대한민국 정부(2017),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류태규·박성화(2016), “R&D 조세지원 효율화 방안: Patent Box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6.
- 문은희(2018), “특허박스제도 도입 관련 입법과제”, 2018.
- 박진석(2018), “유럽지재권 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감면제도”, 과학기술정책, 2014.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손원익(2006),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타당성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손원익, 홍승현, “지식재산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연구”, 특허청·한국조세연구원, 2011.
- 안숙찬(2011), “중소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 Vol. 22, No. 1, 2011, pp. 35~50.
- 양금승(2017),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U턴 촉진방안”.
- 유경진(2017), “주요국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 효과와 시사점”, 「KERI Brief」 17-04, 2017.
- 이경배, 김수진, 정규언, 윤재형,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등록·유지 및 특허정보 조사·분석 비용 세액공제”,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이동규, 송호신, 김승래, “2017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I): 중소기업이 지출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혜운, “급구! 실리콘밸리 천재들”, 조선비즈, 2014. 8. 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5/2014080503907.html>, 2020. 1. 6. 최종방문.
- “ET교수포럼의 정책 시시비비”, 전자신문, 19. 9. 26.
- 최대승·조윤주(2013), “R&D 조세지원의 기업 R&D 투자 견인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기업별 조세 감면 자료와 2008 금융위기를 고려하여”,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13.
- 한국경제연구원(2017), “U턴기업 실태조사”, 2017. 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각 연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제도 현황”, 2013,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3-44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요국 연구개발 세제지원제도 현황”, 2015,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2015-13호
- 한국은행 경기본부(2014), “특허박스제도의 현황 및 국내 도입방향”, 2014. 4.
- 한용용·김주일(2017),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KISTEP, 2017.
- 하홍준, 조상규, 박성화, “기술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
- 平成25年度税制改正に関する提言, 日本経済団体連合会, 2012
- 平成27年度内外一体の経済成長戦略構築に係る国際経済調査事業 (対内直接投資促進体制整備等調査 (BEPS を踏まえた 我が国の CFC 税制等の在り方に関する調査))

법·제도 분석 - 법제분석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행인 권택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3, 9층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화 02-2189-2600
홈페이지 www.kiip.re.kr
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법·제도분석

법제분석 ...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조세제도 현황 조사



대전 서구 청사로 189
Tel : 1544-8080 Fax : 042)489-0194
<http://www.kipo.g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Tel : 02)2189-2600 Fax : 02)2189-2694
<http://www.kiip.re.kr>

ISBN : 979-11-91116-27-4
DOI : 10.8080/P9791191116274